



김수암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북한의 인식과 대응

www.kinu.or.kr



김수암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북한의 인식과 대응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북한의 인식과 대응

인 쇄 2007년 12월 일

발 행 2007년 12월 일

발 행 처 통일연구원

발 행 인 통일연구원장

편 집 인 북한인권연구센터

등 록 제2-2361호 (97.4.23)

주 소 (142-728) 서울 강북구 4·19길 275 통일연구원

전 화 대표 02)900-4300

직통 02)901-2606

팩시밀리 02)901-2546

홈페이지 <http://www.kinu.or.kr>

기획 디자인 도서출판 늘품 02)2275-5326

인 쇄 처 천 세 02)2272-2727

가 격 ₩6,000

© 통일연구원, 2007

통일연구원에서 발간한 간행물은 전국 대형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구입문의) 정부간행물판매센터:

·매장: 734-6818 ·사무실: 394-0337

국립중앙도서관 출판시도서목록(CIP)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북한의 인식과 대응 / 김수암. -- 서울 : 통일연구원, 2007
p. ; cm. -- (연구총서 ; 07-02)

참고문헌수록
ISBN 978-89-8479-412-2 93340 : ₩6,000

340.911-KDC4
3209519-DDC21

CIP2007003674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북한의 인식과 대응

○본 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당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목차

I. 서론	1
II. 민주주의에 대한 북한의 인식	7
1. 민주주의 발전단계에 대한 인식	9
2. 사회주의적 민주주의의 주요 내용	15
3.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인식	21
III. 인권에 대한 북한의 인식	33
1. 우리식 인권개념의 정립	35
2. 자유민주주의 인권개념에 대한 인식	47
3. 인권과 민주주의의 상관성에 대한 인식	52
IV. 인권과 민주주의 확산에 대한 인식	67
1. 국제사회의 인권 공문화에 대한 인식	69
2. 민주주의 확산에 대한 인식	85

V. 북한의 대응과 대북인권정책 추진방향	99
1. 북한의 대응	101
2. 대북인권정책 추진방향	107
VI. 결론	113
참고문헌	118
최근 발간자료 안내	123

표목차

<표 V-1> 국제인권규약에 따른 국가보고서 제출 및 심의 현황	105
<표 V-2> 북한 인권관련 법제 제·개정 현황	106

I

서론



사회주의 국가인 북한은 다른 사회주의 국가와 마찬가지로 인권유린 국의 범주에 포함되고 있다. 그렇지만 냉전 시기 안보 중심의 세계적 인식으로 인해 북한의 인권상황은 크게 주목받지 못하였다. 그런데 냉전의 종식이라는 세계적 질서의 변화와 더불어 북한의 식량난으로 대량의 아사자가 발생하여 탈북 행렬이 이어지면서 이들을 통해 북한인권 실상이 구체적으로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국제사면위원회 등 저명한 국제인권 NGO들이 정치범수용소 등의 북한인권보고서를 발간하면서 북한인권은 국제적 관심사로 부상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다양한 주체들이 북한인권 개선활동을 전개하기 시작하였다.

유엔인권위원회, 유엔총회 북한인권 결의안 채택, 미국과 일본의 북한인권법 채택 등 국제사회는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 민주주의와 자유의 확산을 주요 외교정책 목표로 설정하고 있는 미국을 중심으로 국제사회는 북한에 민주주의와 인권을 확산하려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사회의 공개적 방식의 개선 요구전략에 대해 북한은 북한 사회주의 체제를 붕괴하려는 정치적 음모라고 규정하고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국제사회의 인권개선 요구에 대해 북한은 문화상대주의적 시각에서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해 이분법적 인식으로 접근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다른 사회주의국가와 마찬가지로 ‘정치’에 대해 우리가 흔히 인식하고 있는 정치학과 다른 개념과 인식을 갖고 있다. 이로 인해 흔히 우리가 이해하는 민주주의와 다른 개념과 인식을 보이고 있다.

마찬가지로 인권의 숭고한 가치에 대해서는 수용하면서도 상이한 인권개념과 인식을 보이고 있다. 특히 서구에서 태동한 인권을 ‘서방식’으로 비판하면서 ‘우리식’ 인권론이라는 다른 사회주의 국가보다 더욱 강한 배타적 개념을 표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체제 유지

I
II
III
IV
V
VI

의 틀 내에서 경제난 이후 변화된 사회현실을 반영하는 동시에 국제적 고립을 탈피하기 위해 인권 분야에서 일정 부분 국제사회의 요구를 반영하여 정책을 점진적으로 조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이분법적이고 배타적인 대응논리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의 공론화에 대응하여 북한당국은 일부 정책을 조정하고 있다.

북한체제의 폐쇄적인 성격을 감안할 때 현 단계에서 아래로부터 인권 인식이 확산되거나 시민사회의 맹아적 형성조차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중장기적으로 인권이 실질적으로 개선되기 위해서는 위로부터의 인식과 정책의 조정, 아래로부터의 인권인식 확산 및 시민사회 형성이 병행되어야 한다. 위로부터의 인권에 대한 인식과 정책은 인권대화, 기술협력, 압박 등 국제사회와의 관계를 통하여 조정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아래로부터의 인권인식의 관건은 북한의 개방여부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의 유일지배체제 성격으로 인해 민주주의는 사실상 사문화되고 있고 인권이 극히 열악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이러한 현실로 인해 북한은 인권해결의 관점이 아닌 체제 안보의 관점에서 국제사회의 요구에 대해 자신의 체제를 정당화하는 논리로 민주주의와 인권에 접근하고 있다. 이와 같이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북한의 인식은 국제사회의 문제제기에 대한 대응의 관점에서 정립되고 있기 때문에 외부로부터의 '위협'으로 포장하면서 대내 통제와 체제정당화를 위해 활용되는 측면이 강하다. 따라서 대북인권정책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북한 내에서 인권이 유린되는 요소를 분석하고 이를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북한당국은 인권을 유린하는 주체인 동시에 인권개선을 위한 구체적 정책을 추진하는 주체라는 점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북한인권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 특히 시민사회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폐쇄적인 북한체제의 속성을 감안할 때 북한당국의 인권과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은 인권개선정책을 수립하는 데 핵심요소로 설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국제사회가 추구하는 인권개선을 위한 정책 수단들이 북한주민의 인권개선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북한당국의 인식과 정책에 대한 분석이 전제되어야 한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인권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그런데 미국의 민주주의 확산전략에서 보듯이 민주주의와 인권은 상호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인권에 대한 북한의 인식과 더불어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도 동시에 분석하고자 한다. 먼저, 북한이 구현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사회주의적 민주주의’와 ‘우리식 인권론’의 내용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그리고 민주주의와 인권의 상호 관계에 대한 북한의 인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이러한 인식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의 인권개선 요구에 직면하여 북한이 어떻게 정책을 조정해나가고 있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논문의 구성과 관련하여 북한 자신의 인식, 자본주의 사회에 대한 비판을 중심으로 2장에서는 인권에 대한 북한의 인식, 3장에서는 민주주의에 대한 북한의 인식을 분석하고자 한다. 그리고 제4장에서는 국제사회의 인권개선 요구와 민주주의 확산전략에 대한 북한의 인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끝으로 5장에서는 북한의 대응을 분석하고 대북인권추진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I
II
III
IV
V
VI

II

민주주의에 대한 북한의 인식



정치체제로서의 민주주의는 서구에서 형성되고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었다. 그런데 소련에서 사회주의 혁명이 성공하면서 민주주의는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정당화하는 정치이념으로 정립되었다. 북한의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도 기본적으로 프롤레타리아독재라는 사회주의체제를 정당화하는 데서 출발하고 있다. 나아가 주체사상, 유일지배체제라는 북한의 정치체제를 미화하는 논리로 연결되고 있다. 또한 자유민주주의의 확산에 대한 대응논리로서 정립되고 있다. 따라서 민주주의에 대한 북한의 인식은 프롤레타리아 일당독재에 대한 정당화,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대응논리라는 2가지 측면을 지니고 있다. 또한 절대적인 일인지배체제로서 획일화된 전체주의체제라는 정치현실과 괴리된 체제정당화의 논리라는 성격을 지니고 있다.

1. 민주주의 발전단계에 대한 인식

민주주의에 대한 북한의 인식은 다른 사회주의국가들과 공통적인 내용을 갖고 있으면서 시기와 환경에 따라 그 강조점이 변하여 왔다. 시장경제와 다원주의를 기초로 하는 자유민주주의에 대응하여 사회주의 혁명을 통하여 프롤레타리아 일당독재를 민주주의로 개념화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주의 일반과 마찬가지로 프롤레타리아 일당독재를 구축하는 사회주의 혁명의 시각에서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이 정립되고 있다. 사회주의 혁명은 반제반봉건 단계를 거쳐 사회주의 혁명으로 진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혁명 단계에 맞게 민주주의도 발전단계를 거치게 된다는 것이 민주주의에 대한 북한의 기본 인식이다.

I

II

III

IV

V

VI

가. 반제반봉건 단계: 진보적 민주주의

북한에서는 선거제도 등 절차적 민주주의라는 제도적 측면보다는 민주주의에 대해 사회의 발전과 함께 변화하는 것으로 정치이념에 중점을 두고 발전단계를 설정하고 있다. 북한에서는 후술하듯이 궁극적으로 ‘사회주의적 민주주의’가 사회주의가 지향하는 진정한 민주주의이지만 북한이 처한 역사발전 현실에 따라 ‘진보적 민주주의’라는 중간단계를 거치게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자본주의사회에서 사회주의 혁명을 하는 국가에서는 사회주의정권을 세우고 직접 사회주의적 민주주의를 실시할 수 있다. 그런데 북한과 같이 식민 지배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반제반봉건민주주의 혁명을 완수하고 사회주의 혁명을 수행하는 국가에서는 진보적 민주주의를 거쳐 사회주의적 민주주의를 실시하는 단계로 발전하게 된다는 것이다.

“오늘날 우리들의 투쟁은 자본주의국가의 낡은 국회식민주주의가 아니라 새 조선의 진정한 민주주의, 광범한 인민대중의 민주주의, 진보적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입니다.”¹

식민지, 반식민지 상태에 있던 국가에서는 사회주의적 민주주의로 곧바로 진전되지 않고 ‘반제반봉건민주주의 혁명단계’에서 ‘진보적 민주주의’를 실시한다는 김일성의 논지는 2가지 핵심 인식을 담고 있다.

첫째, 국회라는 절차적 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대응 논리가 강조되고 있다. 이는 사회주의 체제와 상관성이 있고 두 번째 인식으로 연결되고 있다. 둘째, 계급주권의 관점에서 사회주의 혁명을 완수하기 위한 계급

¹ 김일성, “근로대중의 통일적당의 창건을 위하여,” 『김일성저작집 2』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79), p. 376.

투쟁으로 민주주의를 인식하고 있다.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 단계에서는 제국주의와 봉건을 반대하며 민족적 독립과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모든 계급과 계층들이 참가하게 된다. 다시 말해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 지식인, 소자산계급은 물론 민족자본가와 양심적인 종교인까지도 포함한 각계각층의 애국적 민주역량이 혁명에 절실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반제반봉건투쟁에 적극 나서게 된다는 것이다.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 단계에서 진보적 민주주의는 인민민주주의적 형태를 띠게 된다. 이와 같이 해방 이후 북한의 민주주의론은 제국주의에서 사회주의로 전환하는 과도적 성격으로 규정하고 있다. 계급적 시각에서 볼 때 인민민주주의정권은 노동계급이 영도하는 노농동맹에 기초하여 각계각층 애국적 민주역량이 통일전선을 형성하는 연합정권의 성격을 갖고 있다. 이 단계에서 지주, 예속자본가, 민족반역자, 반동관료배들에 대해서는 독재를 실시하지만 노동자, 농민, 수공업자, 애국적인 민족자본가 등 광범한 인민대중에 대해서는 민주주의를 실시하게 된다는 것이다.²

북한의 민주주의론은 계급주권의 관점에 있으며 이러한 계급적 시각에 따라 진보적 민주주의와 사회주의적 민주주의에 대한 차이를 설명하고 있는데 이는 두가지 점에서 일치한다. 첫째, 노동계급이 영도하는 정권에 의해 민주주의를 실시한다. 둘째, 자본주의 사회의 자유민주주의와 달리 진보적 민주주의에서도 인민대중에게 자유와 평등을 보장하고 있다. 그렇지만 반제반봉건 단계에서 사회주의 혁명을 수행하기 위해 연합전선을 형성한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차이가 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회주의 혁명으로 진전되기 위해 사회주의적 민주주의 단계에서 배제되어야 할 대상과 연합전선을 형성하기 위한 논리로서 민주주의론

² 리기섭, 『사회주의적 민주주의』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7), pp. 20~23.

I
II
III
IV
V
VI

이 정립되고 있다. 이로 인해 진보적 민주주의의 아래 연합전선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근로인민대중이 모든 착취와 억압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사회주의적 민주주의와 차이점이 있다. 식민지 예속에서 벗어나기 위해 사회주의적 민주주의 단계에서 배제해야 할 대상이 포함되는 연합전선을 형성할 수밖에 없다. 통일전선적 연합 성격을 갖고 있는 진보적 민주주의 아래에서 민족 자본가들과 부농들에 의한 착취가 남아 있고 정치, 경제, 문화 등 사회생활의 여러 분야에 낡은 사회의 유물들이 적지 않게 남아 있게 된다는 것이다.³

북한의 진보적 민주주의론은 사회주의 혁명으로 진전하기 위한 계급투쟁의 시각에서 정립되고 있기 때문에 혁명의 하위 수단의 위치를 점하는 문제를 지니고 있다. 이로 인해 절차적 민주주의로서 정치체제에 대한 설명은 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한계를 안고 있다. 진보적 민주주의론 아래 계급 주권의 시각에서 연합전선을 형성하여 일정 세력을 정치적으로 활용하지만 궁극적으로 제거함으로써 천부인권을 무시하고 인권을 유린하는 요소가 내재되어 있다. 계급투쟁의 관점에서 타도해야 할 계급에 대해서는 ‘독재’, 인민대중에게는 민주주의를 실시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보듯이 북한의 민주주의론은 정치체도를 설명하는 논리라기보다는 계급투쟁을 설명하는 논리로 활용되는 측면이 강하다.

나. 사회주의혁명 단계: 사회주의적 민주주의

북한에서도 진보적 민주주의 단계를 거쳐 사회주의국가 일반과 마찬가지로

³ 리기섭, 『사회주의적 민주주의』, pp. 25~30.

가지로 ‘사회주의적 민주주의’로 발전한다고 상정하고 있다. 사회주의적 민주주의에 대한 북한의 개념은 다음의 김일성의 교시에 집약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민주주의란 한마디로 말하여 근로인민대중의 의사를 집대성한 정치입니다. 다시 말하면 국가가 노동자, 농민을 비롯한 광범한 근로인민들의 의사에 따라 정책을 세우고 인민대중의 리익에 맞게 그것을 관철하며 근로인민대중에게 참다운 자유와 권리 행복한 생활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여 주는 것이 바로 민주주의입니다...근로인민대중은 사회발전에서 결정적 역할을 할 뿐 아니라 어떤 사회에서나 인구의 절대다수를 차지합니다. 그러므로 근로인민대중의 의사가 곧 국가의 정책으로 되고 근로인민대중의 리익을 위하여 모든 것을 복종시키는 정치만이 참다운 민주주의로 됩니다.”⁴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사회주의 혁명단계에서는 연합전선을 형성하였던 일부 계급을 배제하고 ‘근로인민대중’만으로 계급주권을 형성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계급주권에 따라 다음과 같은 요소를 갖고 있어 사회주의적 ‘민주주의’라고 선전하고 있다. 첫째, 근로인민대중의 ‘의사’에 따라 정책을 입안한다는 것이다. 둘째, 근로인민대중의 ‘이익’을 실현한다는 것이다. 셋째, 근로인민대중의 자유와 권리, 행복한 생활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여 주는 국가 활동방식이라는 것이다.

사회주의 혁명단계에서 수립되는 사회주의적 민주주의는 사회주의 사회의 일반적인 민주주의론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첫째, 계급적 시각

⁴ 김일성, “인민정권을 더욱 강화하자,” 『김일성저작집 32』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6), p. 532.

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둘째, 집단주의원칙을 바탕으로 하고 있고 그 정책적 반영으로서 중앙집권적 정책운영이다. 나아가 북한에서는 사회주의적 민주주의 하에서 사회경제적 처지의 공통성, 목적과 이해관계의 공통성으로 인해 근로자 사이의 동지적 협조관계가 크게 발휘될 수 있다고 선전하고 있다. 셋째, 자유민주주의 아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비판하면서 사회적 평등을 강조하고 있다.⁵

그런데 다른 사회주의국가와 달리 북한의 특수성을 반영한 차이점도 발견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주체사상과 결합된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다. 민주주의는 사회적 인간의 본성적 요구를 실현하기 위한 사회·정치적 이념으로서 민주주의의 궁극적 목적은 인민대중이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삶을 누리게 하는데 있다고 선전하고 있다. 이와 같이 주체사상을 철학적 토대로 유일사상체계 확립운동이 전개되면서 북한의 민주주의론은 유일사상체계의 하위개념 혹은 그 반영물로 전락하게 된다. 북한의 민주주의론은 ‘우리식 사회주의적 민주주의’로 변하게 된다. 1974년 ‘유일사상 10대원칙’ 발표에서 보듯이 당의 영도를 넘어 수령중심의 유일지배체제를 정당화하는 개념으로 변질된다. 이로 인해 절차적 민주주의는 사실상 사문화되고 획일화된 집단주의가 지배하는 민주주의론으로 변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북한이 주장하는 민주주의는 유일사상에 근거하여 대내적으로 수령·당·대중 사이의 일체감, 대외적으로 반제자주노선을 요체로 하고 있다.⁶

⁵ 리기섭, 『사회주의적 민주주의』, pp. 87~88.

⁶ “미국식<민주주의>를 단호히 반대배격하자,” 『로동신문』 편집국 논설, 2006년 12월 13일; 서보혁, 『북한인권: 이론·실제·정책』 (서울: 한울아카데미, 2007), pp. 151~152.

2. 사회주의적 민주주의의 주요 내용

가. 당의 영도와 정책결정과정

북한에서는 계급적 시각에서 국가, 국가의 활동방식이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민주주의론을 전개하고 있다. 국가는 사회의 가장 포괄적인 정치권력조직으로서 일정한 주권적, 행정·경제적 기구와 통제수단들을 가지고 사회구성원들을 관리함으로써 사회에 대한 정치적 지배를 실현한다. 이와 같이 국가와 사회관계에서 지배방식으로 정치를 규정하고 있는데, 사회에 대한 지배 방식은 국가의 계급적 성격과 사명에 의하여 규정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회주의 국가는 근로인민대중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보장하여 주는 정치조직으로 민주주의를 활동의 기본방식으로 삼고 있다고 선전하고 있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북한의 민주주의론은 주체사상과 결합되고 있다.

“민주주의는 근로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국가 활동의 기본방식입니다.”⁷

첫째, 국가 활동의 기본방식은 정권의 성격에 의하여 규정되는데, 사회주의국가의 정권은 노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인민대중의 ‘이익’을 대표하는 정권이다. 이러한 이익을 대표하는 방식으로 지방주권기관으로부터 최고주권기관에 이르기까지의 각급 주권기관은 인민들이 직접 선출한 근로인민의 대표들로 구성되며 인민들은 자기들이 선거한 대표기관을 통하여 자기의 주권을 행사한다는 것이다.

둘째, 사회주의국가정권은 근로인민대중의 의사와 요구에 부합하는

⁷ 김일성, 『김일성저작집 32』, p. 532.

‘정책’을 입안하여 집행한다는 것이다. 근로인민대중의 의사와 요구가 사회주의 국가정권의 모든 활동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자기 활동의 기본방식으로 삼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민주주의는 근로인민대중의 의사와 요구를 전면적으로 실현할 수 있게 하는 가장 우월한 정치실현의 방식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가 관리는 주권을 보유한 계급의 의사와 요구가 사회에 직접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조직집행활동이다. 국가의 노선과 정책, 법령과 결정, 지시들은 국가관리 기관의 조직집행활동을 통하여 실생활에 구현된다. 그런데 사회주의적 민주주의는 근로인민대중에게 국가 관리에 참가할 수 있는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여 주고 있다고 선전하고 있다.

셋째, 주권과 생산수단을 보유한 근로인민대중이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 지위를 갖게 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반인민적, 반사회주의적 요소에 대한 독재를 사회주의국가의 정치를 실현하는 중요한 활동방식의 하나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회주의사회에도 여전히 적대분자들이 존재하고 근로자들의 머릿속에 낡은 사상 잔재가 남아있으므로 계급투쟁이 지속되어야 한다. 따라서 소수 적대분자들에 대해 독재를 실시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사회주의 사회에서 민주주의와 독재는 상호 결합하여 병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인민대중에게는 민주주의를 실시하되, 소수 적대분자에 대해서는 독재를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주의가 사회주의 국가의 기본활동방식이라는 사실을 직시하지 못하면 좌경적 편향을 범하게 되며 계급투쟁이 지속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독재를 포기하면 우경적 편향을 저지르게 된다는 것이다.⁸

⁸- 리기섭, 『사회주의적 민주주의』, pp. 14~19, 56~58.

사회주의 일반적인 민주주의론과 마찬가지로 북한에서도 인민주권과 더불어 당의 영도를 핵심 요체로 설정하고 있다. 노동계급의 이익을 대변하는 당의 영도가 진정한 민주주의 정치라는 것이 북한의 기본인식이다. 인민대중의 의사를 하나로 집대성하고 집대성된 의사를 인민대중의 의지로 전환시키는 것이 바로 민주주의 정치인데, 참다운 민주주의는 노동계급의 당의 영도 하에 국가의 중앙집권적지도가 실시되는 조건에서만 보장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동당의 영도를 핵심요체로 하고 있는 사회주의적 민주주의론에서 다당제는 수용될 수 없다. 첫째, 노동계급의 당이 영도하는 정치조직에서의 정치조직생활을 자유에 대한 ‘구속’이라는 비판은 부적절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둘째, 사회주의사회의 향도적 역량으로서의 노동계급의 당의 지위와 역할은 다른 어떤 정치조직도 대신할 수 없다. 셋째, 사회의 일정한 계층을 망라하는 대중 정치조직인 근로단체들은 성격 상 노동계급의 당을 대신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영도를 받아야 할 대상이다. 사회주의사회는 계급적 차이를 비롯한 여러 가지 차이가 남아있는 과도기적 사회로서 노동계급의 당과 함께 다른 정당들이 존재할 수는 있지만 일정한 정치세력과 계층만을 대표하는 당은 결코 노동계급의 당의 지위와 역할을 대신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결국 사회주의사회에서 다른 정당들은 노동계급의 당과 집권경쟁을 하는 정치조직이 아니라 온 사회에 대한 노동계급의 당의 영도를 보장하는 조건에서 협조하는 정치조직의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⁹

북한의 사회주의적 민주주의론에 따르면 정치적 측면에서 인민대중이 수령의 혁명사상과 그 구현인 당 정책을 바탕으로 당 조직과 당의

⁹ 김정일,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는 필승불패이다,” 『김정일선집 11』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7), p. 58.



영도를 받는 정치조직에 참여하고 있다. 이와 같이 다른 사회주의국가와 달리 당의 영도를 중시하면서도 유일사상을 바탕으로 하는 유일지배 체제로 인해 당을 중심으로 하는 절차적 민주주의는 유명무실한 상태로 전락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선군정치에서 보듯이 사회주의 국가들의 잇따른 체제전환 현상과 경제난으로 내외적 위기에 직면하여 체제유지 담론으로 변하게 된다. 선군정치라는 체제유지 담론으로 변질되면서 상명하복의 혁명적 군인정신으로 획일화된 집단주의는 보다 경직된 형태로 내재화되기 시작하고 있다.

나. 인민주권과 선거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북한의 민주주의론은 주체사상과 결합되는데, 사회적 존재로서 사람에게 있어서 정치적 자주성은 사회적 생명이므로 정치적 자주성은 정치적 자유와 권리를 보장받을 때 실현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근로인민대중이 ‘통치의 대상’이 아니라 국가와 사회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국가정치생활에 참가할 수 있는 자유와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국가정치생활에 참가할 수 있는 자유와 권리는 사람들의 정치적 자유와 권리 중 가장 중요한 권리라고 주장하고 있다. 절차적 민주주의 관점에서 정치적 자유와 권리가 보장되는지 여부를 평가할 수 있는데, 절차적 민주주의에서 핵심 요소는 선거제도이다.

자유민주주의에서는 주권재민의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그렇다면 절차적 민주주의 관점에서 북한은 사회주의적 민주주의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북한에서도 사회주의적 민주주의 아래 국가정치생활에 참여할 수 있는 정치적 자주성, 즉 국가주권을 실현하는 기본방식으로 선거를 규정하고 있다. 북한 사회주의 헌법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은 노동자, 농민, 근로인테리와 모든 근로인민에게 있다. 근로

인민은 자기의 대표기관인 최고인민회의와 지방 각급인민회의를 통하여 주권을 행사한다”(제4조)고 규정하고 있다.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통하여 주권기관의 구성원을 선출함으로써 국가주권을 실현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인민주권론에 따라 선거제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북한 사회주의 헌법에는 “17살 이상의 모든 공민은 성별, 민족별, 직업, 거주기간, 재산과 지식정도, 당별, 정견, 신앙에 관계없이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진다”(제66조)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북한의 문헌에서는 선거제도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북한에서는 선거제도에 대해 가장 중요한 국가 ‘법제도’의 하나로서 사람들에게 부여하는 ‘정치적 권리’와 ‘자유’를 집중적으로 반영하는 제도라고 정의하고 있다. 선거는 사회적 성격을 띠는 가장 포괄적인 정치행위로서 여러 가지 절차와 거쳐 진행되는 중대한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후보자 추천과 확정으로부터 시작하여 선거실행을 위한 선거구와 선거위원회의 조직, 선거에 참가하는 선거자의 명단 작성과 공시, 투표절차와 방법, 개표조직과 당선자 확정 등 선거제도는 방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북한의 선거제도는 주권기관을 인민대중의 대표들로 구성함으로써 인민대중이 국가주권의 진정한 주인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위해 북한의 선거제도에서는 선거자가 직접 후보자를 추천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후보자는 회의에 참가한 참가자의 반수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정식 후보자로 등록될 수 있다. 이와 같이 후보자 추천 절차와 확정의 전 과정이 철저하게 민주주의적 원칙에 의하여 진행되기 때문에 인민대중이 자신의 주권기관을 자신의 손으로 구성하는데 참여하게 된다는 것이다.¹⁰

¹⁰ 김희성, “공화국선거제도의 혁명적 본질,” 『김일성종합대학학보(역사·법학)』, 제47권 1호 (2001), pp. 45~47.

I
II
III
IV
V
VI

우리와 마찬가지로 “군인민회의로부터 최고인민회의에 이르기까지의 각급 주권기관은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 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선거한다”(제6조)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북한에서는 선거제도는 ‘국가 사회제도의 성격’과 정권을 장악한 ‘계급’의 정치적 입장을 반영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사회주의사회의 선거제도는 가장 민주주의적인 선거원칙을 구현함으로써 모든 근로자들이 국가주권의 실현에 참가할 수 있도록 확고하게 보장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첫째, 일반적 원칙이란 선거 연령에 도달한 모든 근로자들이 성별, 민족별, 직업, 재산과 지식정도, 당별, 정견, 신앙에 관계없이 모두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는 것이다. 둘째, 평등적 선거란 선거자 중에서 특권이 부여될 수 없으며 모든 근로자들이 동일한 조건으로 차별 없이 선거에 참가한다는 것이다. 셋째, 직접적 선거란 근로인민대중 자신이 주권기관 대원을 직접 선출하는 선출방식이다. 이러한 선거원칙에 의하여 선출되는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들은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봉사하는 대표라고 규정하고 있다.

북한에서는 절차적 민주주의 측면에서 사회주의적 민주주의가 우월하다는 점을 대의원 소환권을 들고 있다. 이러한 소환권은 사회주의 헌법에서 “7조 각급 주권기관의 대의원은 선거자들과 밀접한 련계를 가지며 자기 사업에 대하여 선거자들 앞에 책임진다. 선거자들은 자기가 선거한 대의원이 신임을 잃은 경우에 언제든지 소환할수 있다”(제7조)고 규정되어 있다. 북한에서 주권기관의 대의원들은 어떤 특권계급이나 계층이 아니라 인민대중 속에서 선출된 인민대중의 구성원이므로 대의원 책임제도는 대의원들이 인민대중을 위해 봉사할 책임과 역할을 보다 잘하도록 하기 위해 당연한 제도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사회주의적 민주주의의 아래에서 대의원 등 선거자의 의사와 요구를 국가주권 실현에

정확하게 반영하지 않을 때는 선거자가 대의원을 소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선거자와 대의원 사이의 관계에서도 민주주의원칙이 철저히 관철된다고 주장하고 있다.¹¹

인민주권과 선거를 통한 절차적 민주주의론은 현실과 근본적인 괴리가 발생하고 있다. 계급주권을 바탕으로 통치의 대상이 아니라 국가의 주인이라는 사회주의적 민주주의론은 사회정치적 생명체론, 특히 혁명적 수령관 등 신격화된 개인숭배로 인해 현실과 유리된 허구적 논리로 변질되고 있다. 절차적 민주주의가 인민주권을 실현하는 시스템으로 작동하기보다 수령 지배체제를 유지하는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는 것이다.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형식적인 절차로 전락하고 북한의 인민들은 김일성과 김정일의 교시에 따라야 하고 그 결과 수령과 당이 주는 시혜로 생존과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에 따라 사회주의적 민주주의론과 달리 인민들은 통치의 대상, 시혜의 대상으로 객체화되고 있다.

3.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인식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북한의 인식은 사회주의 혁명을 통한 사회주의적 민주주의를 정당화하기 위한 대응논리로 정립되고 있다. 특히 사회주의국가에서 체제전환을 목도하면서 체제유지를 위한 담론의 시각에서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극단적인 인식으로 표출되고 있다. 사회주의 일반과 마찬가지로 계급적 시각, 개인주의를 부정하는 집단주의 원칙, 금권정치를 기본 요소로 다당제, 대의제, 선거제도, 삼권분립 등 자유민주주의 자체를 부정하고 있다.

¹¹ 리기섭, 『사회주의적 민주주의』, pp. 51~56.

가. 소수 특권계층 대변 ‘가짜’ 민주주의론

북한은 자유민주주의에 대해 계급적 시각, 인민주권, 집단주의 원칙을 기본요소로 민주주의 자체를 부정하고 있다.

첫째, 북한은 계급적 시각에서 소수 특권계층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사회주의적 민주주의는 근로인민대중을 위한 진정한 민주주의인 반면, 자본주의 사회의 민주주의는 소수 특권계층을 위한 민주주의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러한 계급적 시각에 따라 김일성의 교시대로 인민대중이 아니라 소수 특권계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자유민주주의는 ‘가짜’ 민주주의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가짜’ 민주주의론을 통해 북한의 체제를 정당화하고 바깥으로부터의 정보유입에 따른 체제 이완을 방지하기 위한 체제 안보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

“제국주의자들이 떠드는 <민주주의>는 가짜민주주의이며 그들이 들고 나오는 <평등>이니, <자유>니 하는것들은 모두 근로인민대중을 기만하며 부르조아독재의 반동성과 자본주의제도의 반인민적본질을 가리우기 위한 위장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자본주의사회는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 사회입니다.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이른바 민주주의, 부르조아민주주의는 소수를 위한 민주주의이며 따라서 그것은 본래의 의미에서의 민주주의가 아닙니다.”¹²

자본주의사회제도를 전체 인민의 ‘안전’과 ‘복리’를 위한 ‘인민적 제도’로, 자본주의 사회의 민주주의를 인민의 의사를 대변한 ‘인민의 정치’

¹² 김일성, 『김일성저작집 32』, pp. 532~533.

로 묘사하고 있지만 계급사회에서 모든 계급과 계층에게 동일하게 자유와 권리를 부여하는 초계급적 민주주의가 존재할 수 없다고 비판하고 있다. 자본가계급이 강조하는 ‘인민적 자본주의’, ‘복지사회’, ‘여론과 설득에 의한 국민의 정치’는 초계급적 ‘민주주의’를 미화하기 위한 명분에 불과하다는 것이다.¹³

둘째, 인민이 아니라 유산가계급이 주권을 독점하고 있다는 점에서 인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다. 민주주의를 규정하는 국가주권의 기준에서 볼 때 자본주의 사회는 소수 지주와 자본가계급이 국가주권,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있다. 그러므로 자본주의 사회의 민주주의는 인민대중이 아닌 소수 특권계급의 의사를 반영하는 ‘반인민적’ 정치가 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착취사회에서 근로대중은 국가주권을 쥐지 못하고 생산수단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사회의 주인으로 되지 못하고 착취와 압박의 대상으로 되고 있으며 온갖 인격적인 모욕과 멸시를 받고 있습니다.”¹⁴

셋째, 집단주의 원칙에 따라 개인주의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를 비판하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서구의 자유민주주의는 실용주의를 사상적 기초로 삼고 있는데, 실용주의는 유산가계급의 이익을 옹호하기 위해 개인주의를 미화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용주의는 독점자본주의를 옹호하는 사상인데, “개인에게 유익한 것은 곧 진리,” 개인의 이익 추구를 위해 어떤 것에도 구애 받지 않고 행동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해주는 것이 민주주의 정치라고 선전하면서 개인주의, 자유

¹³ 리기섭, 『사회주의적 민주주의』, p. 103.

¹⁴ 김일성, “우리나라 사회주의제도를 더욱 강화하자,” 『김일성저작집 27』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4), p. 596.

주의에 기초한 미국사회를 미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개인주의는 계급적 성격에서 착취계급의 요구와 이익을 반영한 사상이며, 자유주의는 자본가계급의 무한한 이익실현을 위한 개인주의의 변형된 형태라고 비판하고 있다. 실용주의에서 지칭하는 개인은 극단적인 개인주의적 이익을 생리로 하는 유산계급이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미국의 유산계급은 실용주의가 표방하는 자유와 민주주의를 전체 ‘국민’을 위한 것처럼 왜곡하면서 실용주의의 논리에 따라 미국의 정치사상과 정치체제를 ‘자유민주주의’로 미화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¹⁵

나. 다원주의와 절차적 민주주의 비판

북한에서는 사회주의 일반과 마찬가지로 자유민주주의에 대해 ‘다원주의 사회’의 정치로 규정하면서 비판하고 있다. 즉, 다원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다당제, 대의제, 선거제도 등 자유민주주의가 우월하다고 자랑하는 절차적 민주주의에 대해 부정적 측면을 부각시키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다원주의>가 표방하는 사상에서의 <자유화>, 정치에서의 <다당제>, 소유에서의 <다양화>는 개인주의와 자유주의에 기초한 생존경쟁이 지배하는 자본주의사회의 정치방식입니다.”¹⁶

북한은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다당제가 노동당 일당독재를 위협하는 핵심적인 요소로 규정하면서 가장 경계하고 있다.

15. 로승일, “미국식 《민주주의》는 반인민적 《민주주의》,” 『김일성종합대학학보(철학·경제학)』, 52권 2호 (2006), pp. 22~23.

16. 김정일, “사회주의건설의 역사적교훈과 우리 당의 총로선,” 『김정일선집 12』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7), p. 283.

I
II
III
IV
V
VI

첫째, 계급적 시각에 따라 다당제란 계급적으로 분열·대립되어 있는 자본주의 사회관계를 반영한 정치제도로 규정하고 있다. 다당제란 서로 다른 사상과 정견을 가진 정당들 사이의 선거경쟁에서 이긴 정당 또는 정당의 인물이 정치를 하는 것을 기본내용으로 하는 자본주의 정치제도라고 개념을 정의하고 있다. 유산계급의 정당들의 ‘정쟁’을 통하여 정권을 장악하는 것을 ‘민주주의’의 명분으로 포장한 유산계급 정당제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다당제에 의한 정권의 ‘평화적인 교체’를 ‘민주정치의 표본’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상이한 유산계급 대표자들의 교체에 불과하다고 비판하고 있다. 즉, 양당제는 자본가 계급이 자신들의 계급적 지배를 유지하기 위하여 활용하는 하나의 수단으로서 실제로 자신들이 정권을 장악하기 위하여 노동계급을 비롯한 진보적 세력들의 정당조직과 활동을 제약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¹⁷

둘째, 이러한 다당제를 바탕으로 구성되는 대의제 역시 계급적 시각에 따라 민주주의적 정치방식이 아니라고 비판하고 있다. 선거를 통하여 국민의 대표로 구성되었다고 하지만 실제로 이를 조정하는 것은 유산계급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유산계급에서 대표가 선출되고 있기 때문에 노동자, 농민의 진정한 대표가 의회에 진출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의회’는 인민의 의사를 반영한 법을 채택하는 것이 아니라 유산계급의 이익을 대변하는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의회제란 유산계급 독재를 은폐하기 위하여 선거제도를 만들어 유산계급들이 의석의 다수를 차지하게 되어 있는 유산계급의 정치방식이라고 비판하고 있다.¹⁸ 국민대표기관을 통하여 인민의 의

17. 리기섭, 『사회주의적 민주주의』, pp. 110~112.

18. 김영수, “자본주의에 대한 환상은 사회주의를 좌절시키는 요인,” 『철학연구』, 1999년 제1호(루계 제76호) (1999), p. 33; 한하련, “자본주의에 대한 환상의 반동성과 그 해독성,” 『철학연구』, 2001년 제1호(루계 제84호) (2001), p. 44; 량봉선, “아프리카나들에서의 《다당자》의 도입과 그 후과,” 『김일성종합대학학보(역사·법학)』, 제50권 제1호 (2004), pp. 35~36.

사가 반영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국민의사는 실질적으로 인민의 의사로 포장한 착취계급의 의사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자본주의 사회는 사람의 가치를 자본의 규모에 따라 규정하는 ‘가치의 위계제’ 사회로서 자본가들의 무제한적인 이윤을 추구하는데 정책의 목적을 두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유산계급들은 자신들의 ‘자유문화’를 유포시켜 사람들을 타락시키는 한편 ‘민주주의 침해’, ‘위법행위’ 등을 구실로 통제메커니즘과 악법을 동원하여 자주성을 요구하는 근로대중의 투쟁을 무자비하게 탄압하고 있다는 것이다.¹⁹

셋째, 금권정치 시각에서 선거제도를 비판하고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민주주의는 소수 독점재벌의 돈에 의하여 좌우되는 황금만능주의적인 금권정치라고 규정하고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권력을 조직하는 핵심 방식은 선거이고 유산계급들은 선거제도를 통해 국가권력기구를 독점하게 되어 있다. 대통령, 장관, 국회의원, 주지사 등을 결정하기 위한 다양한 선거제가 국민들에게 자유와 평등을 보장하며 민주주의를 발양시키는 우월한 선거제도라고 선전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선거는 철저히 유산계급들의 돈에 의해 좌우된다고 비판하고 있다. 따라서 소수 착취계급이 국가권력과 사회적 재부를 독점하고 모든 정책을 좌우하는 자본주의사회에서 노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인민대중은 선거에서 특권계급과 같은 평등권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이다.²⁰

자본주의 사회에서 선거는 다당제와 연계되어 진행되는데, 국가권력 기구는 정당들의 ‘득표결과’에 따라 조직되고 있다. 선거제도와 정당제도의 유착으로 유산계급의 이익을 대변하는 거대정당들은 국가권력조

19. 리기섭, 『사회주의적 민주주의』, pp. 102~103.

20. 로승일, “미국식 《민주주의》는 반인민적 《민주주의》,” 『김일성종합대학학보 (철학·경제학)』, pp. 24~25; “미국식<민주주의>를 단호히 반대배격하자,” 『로동신문』 편집국 논설, 2006년 12월 13일.

I
II
III
IV
V
VI

직에서 특별한 지위를 차지하지만 다른 계급, 계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당들은 권력조직에 참가하지 못하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가권력 기관을 구성하는 선거에서 반대세력을 제거하고 선거를 ‘독점세력내부에서의 정권이양’을 위한 제도로서 유리한 조건을 조성하는데 선거제도를 악용한다는 것이다.

유산계급들은 자신들과 추종자들이 당선될 수 있도록 선거의 조직, 실시 절차와 방법을 입법을 통해 법적으로 규제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예를 들어 자금지출제도, 선거자금 규제제도 등을 국가법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독점자본가 정당에는 유리하지만 재정적 토대가 취약한 정당들에는 매우 불리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현실에서 진보정당이나 사회민주주의정당, 중소자본주의 정당은 독점자본가의 압력과 회유로 인하여 선거경쟁을 포기하거나 일부 선거전에 나서는 경우에도 국가권력구조에 관여할 수 없다고 비판하고 있다.²¹

넷째, 선거를 통해 선출되는 대표가 인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인민의 대표가 아니라 개별정당의 대변인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본주의 사회의 선거는 정당들 사이의 집권경쟁을 제도화하고 있어 선거권자가 특정 정당이나 정당에서 출마한 후보자에 대해 투표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정당 사이의 집권경쟁을 위해 각 정당이 출마시킨 후보자는 개별 정당의 대변자이지 인민의 대표는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자본주의 국가에서 인민대중은 자신의 대표가 아니라 특정 계급, 계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후보자를 선거하게 되며, 선거에 참가하는 경우에도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거수기로 동원된다는 것이다.²²

²¹ 박희철, “현대부르주아국가법의 반동적 특질,” 『김일성종합대학학보(역사·법학)』, 제50권 제1호 (2004), pp. 73~74.

²² 김희성, “공화국선거제도의 혁명적 본질,” 『김일성종합대학학보(역사·법학)』, p. 46.

다섯째, 자유민주주의에서 제시하고 있는 민주주의 선거 원칙도 다양한 제약으로 인해 보장되지 못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유산계급이 ‘평등’, ‘민주주의’를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인민대중을 완전히 배제하고 자본가 계급 내부에서 폐쇄적으로 선거를 진행할 수 없게 되어 선거권을 개방하지 않을 수 없는 환경이 조성되었다. 이에 따라 자본주의사회에서도 법률상으로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 선거원칙을 규정하게 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자유민주주의 아래 ‘보통선거제’를 명분으로 ‘국민주권’이 실현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각종 제한과 유보 조건들을 설정하여 실질적으로는 불평등한 제한선거가 실시된다고 비판하고 있다. ‘민주선거원칙’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유산계급은 국가권력 장악을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선거를 제한하고 있다는 것이다. 원칙이 제시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특히 자본주의 선거제도는 물질생활영역에서 빈부의 차이를 악용한 선거제한 원칙을 확립하여 근로인민대중을 선거에서 배제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시 말해 유산계급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대상을 돈과 재부, 권력의 소유정도에 따라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미국의 선거법에는 재산, 지식정도, 거주기간, 직업, 인종별, 민족별 등 60여 가지의 조건을 갖추어야 선거에 참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질 수 있다고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²³

여섯째, 사회주의적 민주주의에서 대의원 소환권을 보장하고 있는 것과 달리 자본주의 국가에서 국회의원과 선거자의 관계를 살펴보면 선거자로부터 ‘대의원독립원칙’이 실시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국회의원은 그가 선출된 선거구의 선거자를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국민’, ‘전국적 이익’을 대표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같이 자본주의 국가에

²³ 김희성, “공화국선거제도의 혁명적 본질,” 『김일성종합대학학보(역사·법학)』, pp. 47~50; “자본주의 선거제도의 기만성과 반인민성,” 『로동신문』, 2007년 7월 29일.

서 국회의원들이 자기를 선출한 선거자에게 책임지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인민대중으로부터 분리된 특권계층으로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어떤 자본주의 국가에서도 선거자에 의한 의원소환권이 인정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북한의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인식과 비판은 자본주의와의 대결구도 속에서 체제유지 관점에서 정립되고 있기 때문에 지나치게 논리적으로 비약되고 있다. 또한 지나친 단순화로 인해 현실을 왜곡하고 있다. 일부 부정적 측면을 자유민주주의 전체 문제로 환원함으로써 절차적 민주주의의 장점과 현실을 부정하는 이분법적 인식을 보이고 있다.

다. 삼권분립 비판

자유민주주의는 입법, 사법, 행정의 삼권분립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그렇다면 북한에서는 삼권분립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북한에서는 자유민주주의에 대해 ‘행정중심주의’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자본주의 사회에서 권력구조에 대해 삼권분립주의이라고 선전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행정중심주의’에 기초한 정치 권력구조라고 비판하고 있다. 특히 미국의 사례를 들어 삼권분립에 대해 비판적 인식을 표출하고 있다. 미국은 ‘삼권분립’이 ‘민주주의의 보편적 원리’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미국식 민주주의 아래 정치의 ‘기술화’, ‘전문화’, ‘신속화’라는 명분으로 대통령과 행정부에 권력이 집중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는 미국에서 통치 권력은 대통령과 행정부에 집중되어 있어 입법권과 사법권이 행정권에 종속되어 있기 때문에 삼권분립은 허구라고 비판하고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정부의 우위와 역할을 법률로 규정하여 놓음으로써 정부가 국가권력 실현의 중추적 위치를 점하고 있다는 점을 법률로

I
II
III
IV
V
VI

뒷받침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헌법을 비롯한 법률에 의하면 정부와 그 수반인 대통령 혹은 수상에게 국회해산권, 법안거부권, 비상권 등 막강한 권한을 부여하고 국회가 행정부에 복속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이다. 나아가 국회뿐만 아니라 재판기관도 권력실현의 중추적 기관인 정부에 복종하게 되어 있다. 정부수반에게 사법관 임명제청권, 사법관 임명권, 사법권 관할권까지 부여되어 있다. 또한 국회의 입법행위를 법적으로 제약하는 한편 정부에 ‘위임입법권’ 등을 부여하여 정부가 입법에 직접 관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정부에 ‘준사법권’을 부여하여 정부로 하여금 노동, 주민행정 그리고 여러 정치적 분쟁문제들에 대해 직접 판결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점에서 사법독립의 원칙이 실제로는 무시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행정중심주의는 행정권을 우위에 두기 때문에 입법권과 사법권이 종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으로 하는 삼권분립 권력구조는 명분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의 수평적 권력구조, 입법권 우위의 권력구조로는 유산계급의 이익을 실현할 수 없기 때문에 행정중심주의로 권력을 구조화하게 되었다는 것이다.²⁴

자본주의 국가의 ‘삼권분립’은 서로 다른 계급에 의한 권력의 분립이 아니라 자본가계급 내에서의 통치의 분립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삼권분립’은 모든 국가권력에 대한 자본가계급의 독점을 위장하는데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삼권분립설’은 유산계급 독재를 실현하는 소수 통치자들의 ‘행정만능’을 위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것이다.²⁵

24. 박희철, “현대부르조이국가법의 반동적 특징,” pp. 75~76; 로승일, “미국식 《민주주의》는 반인민적 《민주주의》,” 『김일성종합대학학보(철학·경제학)』, pp. 23~24.

25. 리기섭, 『사회주의적 민주주의』, p. 110.

미국식 민주주의 하에서 인권이 유린 침해당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사례가 영장 없는 도청에 대한 행정부의 태도라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소가 영장 없는 도청에 대해 불법이라고 판결을 내렸지만 부시 대통령은 완전히 잘못된 판결이므로 판결을 무시하겠다고 강변하고 있다. 입법, 사법, 행정의 삼권분립이 민주주의의 표본이라고 주창하던 자들이 재판소의 판결이 부당하다고 무시하고 있으므로 행정권 우위라는 점이 잘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다.²⁶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일부 측면을 가지고 삼권분립 자체를 부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삼권분립에 대해 비판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 경직된 수령 중심의 절대적인 전체주의적 권력구조를 성찰하지 못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²⁶ “짓밟히는 민주주의, 유린당하는 인권,” 『로동신문』, 2006년 9월 7일.

III

인권에 대한 북한의 인식



인권에 대한 북한의 기본인식은 역사발전단계, 북한의 정치체제와 통치이념, 세계질서의 변화라는 3가지 틀에 입각하여 살펴볼 수 있다. 특히 1990년대 탈냉전에 따른 사회주의권 붕괴, 2000년대 테러에 대한 전쟁 등 세계질서 변화로 인해 체제유지 담론 차원에서 북한의 인권 인식이 정립되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한의 경우 보편적 인권의 관점이 아니라 일인 유일지배체제를 정당화하고 외부로부터의 인권개선 요구에 대한 체제유지라는 정치적 관점에서 인권에 대한 인식이 정립되고 있다.

1. 우리식 인권개념의 정립

가. 서구인권개념 형성과정에 대한 인식

북한도 인권개념이 서구의 역사발전 과정에서 태동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인간의 권리인 인권문제는 근대 시민혁명 시기에 신흥 유산계급에 의해 태동될 수 있었다. 착취자인 동시에 권리를 향유하지 못하고 있던 유산계급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옹호하기 위한 봉건투쟁에서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근로대중을 자기편으로 끌어들이는 방편으로 ‘자유’, ‘박애’, ‘인도주의’ 구호를 내세우면서 인권개념이 태동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초창기 인권문서를 통하여 인권의 주체인 ‘인간’은 근로인민대중이 아니라 ‘참다운 인간’으로 이상화된 유산계급에 불과하다고 비판하고 있다.²⁷

다만, 낡은 중세적 사회질서, 신분적 예속을 정당화한 봉건적 윤리규범과 종교교리를 반대하며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다같이 ‘생존권’, ‘자유

²⁷ 정경섭, 『제국주의자들이 떠벌이는 <인권옹호>의 반동성』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pp. 7~11.

I
II
III
IV
V
VI

권,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는 인권개념을 태동시킴으로써 일정하게 사회적 진보를 낳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었다는 점은 인정한다. 그러나 인민대중을 자기편에 끌어들이며 정권을 장악하자 인민을 배반하고 부르조아독재를 세우면서 부르조아들의 계급적 지배를 확립하기 위한 정치사상적 수단으로 인권을 이용함으로써 인권문제의 본질이 왜곡될 수밖에 없었다고 비판하고 있다.²⁸ 이와 같이 계급적 시각에서 인권태동의 역사적 배경을 인식하고 있다. 즉, 인권의 역사가 계급투쟁의 성격을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우리식 인권 개념 정립 과정

북한에서 인권에 대한 정의는 시기별로 변화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북한의 사전을 중심으로 시기별 변화를 살펴보면 먼저, 1950년대 북한에서 인권은 ‘사람으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자유, 평등의 권리’라고 정의하고 있다.²⁹ 1970년대에 인권은 “인민이 옹당 가져야 할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및 사회적 제반권리”라고 정의하고 있다. 커다란 변화는 없지만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 통합된 형태로 개념이 규정되고 있다. 다만 사회주의 일반과 마찬가지로 “튼튼한 물질적 조건에 의하여 담보된다”고 발전권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계급적 원수들에게는 철저한 독재를 실시하는 것이 인권”이라고 계급적 속성을 분명히 하고 있다.”³⁰

그런데 1980년대가 되면 “사회적 존재로서의 사람이 옹당 가져야 할

²⁸ 김일성, “진보적민주주의에 대하여,” 『김일성저작집 1』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79), p. 282; 김창렬, “제국주의자들이 떠벌이고있는 <인권옹호>와 그 반동적본질,” 『근로자』, 2월호 (1990), pp. 92~93.

²⁹ 『대중정치용어사전』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59), p. 213.

³⁰ 『정치용어사전』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0), p. 718.

권리”라고 하여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이라고 인권의 주체를 집단주의적 관점에서 보다 구체화하고 있다. 그리고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누리기 위하여 가져야 할 권리”³¹라고 70년대와 비교하여 자주성과 창조성이 강조되기 시작한다. 즉, 사회주의적 인권의 성격과 북한식 주체사상이 결합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인권개념의 변화는 1990년대 김정일에 의하여 보다 확고하게 정립되고 있다.

“인권은 정치, 경제, 사상문화를 비롯한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인민들이 행사하여야 할 자주적 권리이다.”³²

북한 학자에 의하면 주체사상과 결합된 북한의 인권개념은 2가지 측면으로 구성되고 있다. 첫째, 인권은 사람이 세계와 자기운명의 주인으로서 자주적으로 살며 발전하려는 권리이다. 인권의 본질에 대한 주체적인 이해는 사람은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을 가진 사회적 존재라는 점에서 출발한다는 것이다. 자주성과 창조성이 사람의 본질적 속성이므로 참다운 인권이 보장되려면 사람이 자주적으로 살며 발전하려는 요구와 창조적으로 살며 발전하려는 요구가 실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인권은 자주적으로 살며 발전하려는 요구를 사회적으로 행사하며 보장받으려는 권리이다. 인권은 사회적 존재로서 세계에서 사람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에 따라 향유하는 권리이다. 인권은 모든 것의 주인으로서의 지위를 지키고 보장받으려는 권리와 모든 것의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려는 권리로 구성된다는 것이다. 즉 정치의 주인으로서 사

³¹ 『정치사전』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3), p. 920.

³² 김정일, “사회주의는 과학이다,” 『김정일선집 13』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8), p. 477. 조선말대사전에서도 인권은 ‘사람이 사람으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권리 곧 사람의 자주적 권리’라고 규정하고 있다; 『조선말대사전 2』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2), p.1696.

람들에게 사회적으로 주인의 지위를 보장해주고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도록 하면 인권이 보장된다는 논리이다. 사회적 존재로서의 자주적 권리라는 북한의 인권개념에는 사회적 존재로서의 ‘지위’라는 권리와 함께 ‘역할’이라는 의무개념이 동시에 내포되어 있다. 그리고 지위와 역할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인권의 내용과 수준은 고정불변이 아니라 사회발전에 따라 심화되고 발전된다고 주장하고 있다.³³

‘자주성’을 중심으로 하는 북한의 인권개념은 2000년대에도 이어지고 있다. 노동신문 등에서 “자주성을 생명으로 하는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의 삶의 권리가 인권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³⁴

북한의 경우 인권개념이 주체사상과 결합됨으로써 민주주의와 마찬가지로 유일사상체계의 하위개념이나 반영물로 전락하고 있다. 주체사상과 결합될 때 혁명적 수령관으로 인해 인권개념은 수령의 시혜로 정립되는 동시에 유일지배체제를 정당화하는 논리로 변질하게 된다. 수령에 대한 절대충성의 대가로 인권을 보장받게 되는 수령의 선물과 시혜로 전락하게 된다. 따라서 북한의 인권론에는 국제인권규약 등 국제적으로 공인된 기준에 따라 구체적으로 인권을 어떻게 보장해나갈 것인지에 대한 내용 자체가 담길 수 없는 본질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다. 유일사상 10대원칙에 따라 절대적으로 충성할 때 사회정치적 생명을 획득하고 인권을 누릴 수 있다는 체제 보호논리로 귀결하게 된다. 이로 인해 보편적 인권규범이 체제에 대한 한계설정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여지 자체 소멸되는 결과가 초래되고 있다.

³³ 조성근, “인권의 본질,” 『철학연구』, 3호 (1998), pp. 34~35.

³⁴ “공정한 인권기준이 보장되어야 한다,” 『로동신문』, 2007년 3월 25일; “제국주의의 <인권>공세를 단호히 짓부시자,” 『로동신문』 편집국논설, 2007년 8월 17일.

다. 계급적 시각과 집단주의 원칙

사회주의 일반과 마찬가지로 계급적 관점에서 인권을 이해하고 있다. 이러한 계급적 시각은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인권개념이 형성되는 역사적 이해에서부터 적용되고 있다. 이러한 계급적 시각은 『로동신문』의 논설에서 극명하게 표출되고 있다.

“우리는 자기의 당성을 숨기지 않은 것처럼 인권문제에서도 계급성을 숨기지 않는다. 사회주의 인권은 사회주의를 반대하는 적대분자들과 인민의 리익을 침해하는 불순분자들에게까지 자유와 권리를 주는 초계급적 인권이 아니다.”³⁵

이와 같이 계급적 시각에서 인권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천부적 인권론은 부정될 수밖에 없다. 근로인민대중에게는 인권을 보장하지만 사회주의를 반대하는 반혁명세력에게는 독재를 실시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모든 ‘개인’에게 인권을 보장한다는 인권의 보편성이 부정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것이다. 이러한 계급론적 인권개념은 북한 법에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먼저, 사회주의헌법에서 “국가는 계급 로선을 견지하며 인민민주주의 독재를 강화하여 내외 적대분자들의 파괴책동으로부터 인민주권과 사회주의 제도를 굳건히 보위”(제12조)해야 한다고 계급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계급원칙에 따라 북한의 형법에는 일반범죄와 정치범죄를 구분하고 있다. 2004년에 개정된 형법에서도 “국가는 범죄자의 처리에서 로동계급적 원칙을 확고히 견지”(제2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형사소송법에서는 “국가는 반국가 및 반민족범죄와의 투쟁에서 적아를 엄격히 가려내어 극소수의 주동분자를 진압”(제

³⁵ “참다운 인권을 옹호하여,” 『로동신문』, 1995년 6월 24일.

2조)해야 한다고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계급적 본질로부터 계급적 원수들에 대해서는 무자비하고 가혹하게 처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1998년 개정된 재판소구성법에서는 계급적 원칙을 견지한다는 조항이 삭제되고 있지만 사회주의헌법의 재판소 임무에서 “계급적 원수들과 온갖 범위반자들을 반대하여 투쟁”(제156조)해야 한다고 계급원칙이 견지되고 있다. 정치범수용소는 이러한 계급적 원칙에 따른 인권인식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계급적 원칙과 함께 북한에서는 사회주의 일반과 마찬가지로 집단주의 시각에서 인권을 이해하고 있다. 먼저 집단주의 원칙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공민의 권리와 의무는 《하나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 원칙에 기초한다”(제63조) 사회주의 헌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되고 있다. 이러한 집단주의에 입각한 인권 인식은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인권개념의 정의에서도 보다 강력하게 투영되고 있다. 사람은 단결과 협력을 생존방식으로 하는 사회적 존재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인권은 ‘사회적 존재’로서 사회적 인간의 권리라는 개념으로 정립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북한에서 ‘인민대중’이라는 용어 자체가 집단적 성격을 갖고 있고 인민대중은 수령과 당과 ‘일심동체’를 이루고 수령과 당의 지도를 따를 때 ‘자주적 권리’가 실현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³⁶ 이러한 집단주의 원칙에 따라 권리를 규정하는 동시에 집단주의적으로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의무의 측면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점은 공민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사회주의헌법에서 “공민은 조직과 집단을 귀중히 여기며 사회와 인민을 위하여 몸바쳐 일하는 기풍을 높이 발휘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데서 잘 나타나

³⁶ 서보혁, 『북한인권』, p. 144.

고 있다.

북한에서 집단주의 원칙에서 인권을 인식하는 이유는 ‘개인’을 중심으로 하는 인권개념을 수용할 경우 체제 유지에 부정적 영향을 주게 된다는 우려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주의사회는 모든 사회생활이 개인주의에 기초하고있는 자본주의사회와는 달리 전체 인민이 공통된 목적과 리해관계를 가지고 함께 투쟁해나가는 집단주의사회”³⁷이다. 따라서 “인간의 자유와 권리는 그 본성에 있어서 집단적인 것이며 사회적인 것이다. 반대로 사회와 집단을 떠난 개인은 무력하며 그러한 개인의 삶은 본질에서 짐승의 삶과 같다”는 논리를 주장하고 있다.³⁸

그런데 집단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인권을 인식하더라도 ‘개인의 이익’의 문제는 여전히 존속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불가피한 현실이다. 이에 대해 북한에서는 집단의 이익과 개인의 이익의 상호관계라는 관점에서 논리를 전개하고 있다. 사회적 집단을 이루고 사는 사람의 이익에는 집단의 이익과 개인의 이익이 있는데, 이 양자의 결합방식이 사회제도의 진보성을 규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것이다. 사회제도의 진보성이라는 기준에서 볼 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집단의 이익과 개인의 이익이 대립되는 것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러한 대립적 관점에서 집단의 이익보다 개인의 이익을 상위에 설정하는 ‘개인주의’가 지배하는 사회이다. 그런데 개인주의는 필연적으로 사회적 불평등과 ‘부익부, 빈익빈’을 낳고 사람들 사이에 대립관계를 가져오기 때문에 사회적 존재로서의 사람의 본성적 요구와 양립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반면, 집단

37. 김정일, “사회주의건설의 력사적교훈과 우리 당의 총로선,” 『김정일선집 12』, p. 283.

38. 김창렬, “제국주의자들이 떠벌이고있는 <인권옹호>와 그 반동적본질,” 『근로자』, p. 96.

I
II
III
IV
V
VI

주의는 집단의 이익을 상위에 설정하고 집단의 이익과 개인의 이익을 일치시키며 집단의 이익 속에서 개인의 이익을 실현해나가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즉, 온 사회가 하나의 이해관계에 의하여 결합된 대가정을 형성하고 있는 ‘사회주의적 집단주의’에서는 양자를 대립관계로 보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사회주의적 집단주의가 반대하는 것은 개인의 이익 자체가 아니라 국가와 사회의 이익을 침해하면서 개인의 이익만 추구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³⁹

이상에서 보듯이 북한의 경우 계급적 원칙으로 인해 인권의 보편성이 부정되는 결과가 초래되고 있다. 집단주의 원칙은 사회주의 대가정론이라는 가부장적 사고와 결부된다는 점에서 사회주의 일반의 인식과 차별화되는 특징이 발견된다. 이로 인해 북한에 사회주의적 평등관조차 정착시키는데 제약요인으로 작용하여 왔다. 가부장적 사고방식이 수령·당·인민대중이라는 위계적 사회질서와 결합되어 권리의식을 억압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집단주의는 수령·당·인민대중이 일심동체가 되는 사회정치적 생명론으로 연결되는데, 의무는 적극적·1차적 개념이라고 한다면 권리는 의무에 파생되는 소극적·2차적 개념으로 전락하게 된다. 이로 인해 인권·권리라는 개념에 익숙하지 않은 것은 당연한 귀결이라고 할 수 있다.⁴⁰

라. 사회권 중심의 인권 인식

북한은 사회주의 일반과 마찬가지로 사회권을 중심으로 인권을 이해

³⁹ 김정일,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는 필승불패이다,” 『김일성선집 11』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7), pp. 46~47; 김정일, “사회주의에 대한 휘방은 허용될 수 없다,” 『김정일선집 13』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8), p. 365.

⁴⁰ 서보희, 『북한인권』, p. 147.



하고 있다. 북한에서는 사회권을 강조하면서 우월성을 주장하고 있다. 북한이 우월성을 주장하는 사회권에는 능력과 소질에 따라 안정된 일자리를 보장받을 권리, 문화·위생적인 노동조건에 대한 권리, 치료받을 권리, 배움에 대한 권리, 풍부한 문화정서 생활에 대한 권리 등을 포괄하고 있다. 북한을 포함한 사회주의 국가에서 사회권을 강조하는 이유는 국가가 의식주, 보건, 교육 등 인민생활의 기본적 필요를 제공하는 것에 1차적 관심을 두는 체제 특성 때문이다.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하 B규약) 상의 권리가 천부적 권리로서 국가로부터의 개인의 인권침해를 다루고 있는 반면,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하 A규약) 상의 권리는 주로 무엇을 할 수 있는 권리, 즉 획득해야 할 권리에 해당된다. 전자는 정치체제라는 체제안보와 관련된 미묘한 정치적인 사안이라고 한다면 후자는 국가가 집단적으로 보장해 주어야 하는 측면이 강하다. 북한은 체제의 안보에 관계된 B규약 상의 권리보다는 A규약에 대해 최소한 법률상, 제도상으로는 자신감을 가지고 대하는 분야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은 노동의 권리, 무상치료, 무료교육 등을 중심으로 우월성을 선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사회주의헌법의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서 사회권과 관련하여 노동권(제70조), 휴식권(제71조), 무상치료권(제72조), 교육을 받을 권리(제73조)가 규정되어 있다. 특히 사회제도의 진보성이라는 기준을 들어 노동의 권리를 강조하고 있다. 노동의 권리는 사회의 주인으로서 사람이 지녀야 할 기본권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북한의 인민대중은 국가로부터 먹고 입고 쓰고 사는데 필요한 모든 조건과 무료교육, 무상치료의 혜택을 받고 있을 뿐 아니라 온갖 세금제도가 완전히 철폐되어 세금이라는 말조차 모르는 권리를 향유하고 있다고

I
II
III
IV
V
VI

사회권 보장의 우월성을 주장하고 있다.⁴¹ 이와 같이 사회권의 보장을 중심으로 인권에 접근하고 있지만 1990년대 후반 이후 경제난으로 인해 국가가 사회권을 물질적으로 보장하여 주지 못하고 있다. 특히 북한은 식량난의 영향으로 기본권 중에서도 생존권을 강조하고 있다.

마. 자유권에 대한 인식

북한은 1981년 B규약에 가입하였다. 이에 따라 구체적으로 B규약에 규정되어 있는 권리들이 헌법상으로 명문화되어 있다. 사회주의헌법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서 언론, 출판, 집회·결사의 자유(제67조), 신앙의 자유(제68조), 신소와 청원권(제69조), 과학과 문화예술 활동의 자유(제74조), 거주·여행의 자유(제75조)가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통일연구원의 『북한인권백서』에서 보듯이 실제로 북한에서 자유권은 심각하게 유린되고 있다.⁴² 자유권은 국가의 정치체제, 권력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일당독재라는 사회주의 일반적인 정치체제 이외에 북한의 유일지도체제라는 독특한 체제적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 이와 같이 자유권에 대한 북한의 인식은 북한체제의 속성, 사회주의 체제 전환에 따른 체제 유지 관점에서 정립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사회주의 헌법에서 “국민은 인민의 정치사상적 통일과 단결을 견결히 수호하여야 한다”(제81조)고 규정하고 있다.

국제인권규약에 따라 헌법상으로 자유권의 보장을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제 요인으로 인해 국제적 기준에서 볼 때 자유권이 유린되고 있다. 그렇다면 B규약의 당사자로서 B규약에 규정된 각각의 자유

⁴¹ 김정일,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는 필승불패이다,” 『김일성선집 11』, p. 63.

⁴² 김수암 외, 『북한인권백서 2007』 (서울: 통일연구원, 2007) 참조.

권에 대한 실질적인 현실에 대해 어떻게 규명하고 있을까? 이는 국제인권규약 이행을 위한 유엔인권레짐을 시스템을 통하여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국제인권규약 B규약에 따르면 규약 당사자는 5년마다 이행보고서를 시민적·정치적 권리위원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다. 북한은 1984년 제1차 국가보고서를 제출한 이후 16년 만인 2000년 제2차 국가보고서를 규약위원회에 제출하고 대표를 파견하여 심의를 받았다. 북한의 보고서와 심의 과정에서의 답변을 통해 구체적으로 ‘결사의 자유’에 대한 북한의 현실과 인식을 살펴볼 수 있다.

먼저 정당의 결성이라는 측면에서 결사의 자유에 대한 북한의 설명을 살펴보기로 한다. 제2차 국가보고서 심의 과정에서 규약위원회에서 다당제와 관련하여 정당설립의 요건과 절차에 대하여 질문하였다. 이에 대해 북한대표는 “새로운 정당을 허용하는 절차는 없다. 앞으로 있을 경우 등록절차가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답변하고 있다. 그런데 정당설립을 위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지 않은 이유에 대해 북한대표는 “새로운 정당을 조직하려는 세력이 현실적으로 없어 필요성이 제기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당조직에 관한 법적 규정은 없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그런데 후술하듯이 북한은 ‘다당제’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다. 현실적으로 국제인권규약 차원에서 접근할 때 다당제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서 답변하지 않고 현실적 수요라는 관점에서 답변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유엔인권레짐에서 국제인권규약을 기준으로 접근할 때 우리식 인권론으로 접근하기 어렵기 때문에 현실적인 대응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북한당국은 보고서 심의 과정에서 결사의 자유와 관련하여 첫째, 조선인권연구협회, 장애인지원협회, 법률가협회, 민주변호사회 등 인권단체의 존재를 부각시키고 있다. 둘째, 조선민주여성동맹, 농근맹,

I
II
III
IV
V
VI

문예총 등 조선노동당의 외곽 조직으로서 사회단체들을 근거로 결사의 자유가 보장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셋째, 결사의 자유가 보장되는 근거로서 조선그리스도교연맹, 조선불교도연맹, 조선카톨릭협회 등의 종교 단체를 내세우고 있다. 넷째, 구체적 조직 이외에 정당, 사회단체와 같은 혁명적 조직을 떠난 사회정치생활 활동은 생각할 수 없으며 조직생활을 떠나 사회정치적 생명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결사의 자유가 자주적인 인간이 가지는 기본 권리의 하나라고 주장하고 있다. 노동자, 기술자, 사무원들과 청년학생, 근로여성, 농민들이 모두 정치조직에 참여하여 생활하고 있는 사실을 결사의 자유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결사의 자유와 관련하여 노동조합의 결성이 핵심 쟁점이었다. 북한대표는 노동조합에 대해 국가기관, 공장, 기업소 또는 사회협동 조직의 노동조합과 외국기업과 같은 사기업의 노동조합의 두 가지 형태로 구분하여 대응하고 있다. 전자는 고용된 사람들이 아니라 소속조직이나 기관의 주인이기 때문에 단체협약이나 자신들의 권리를 기업주로부터 보호받기 위해 시위를 할 필요도 없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반면 외국기업 등 사기업의 피고용인들은 노동조건에 관한 단체협약을 체결하며 권리와 이해를 보호하기 위해 단체행동이 가능하다고 국내와 외국 기업을 구분하여 대응하고 있다(B규약 2차 국가보고서 및 회의록).

구체적으로 조선직업총동맹의 목적과 기능에 대해 노동계급의 대규모 정치조직으로 노동계급과 노동당을 연결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동맹의 구성원들을 위대한 지도자 김일성의 혁명적 이념으로 무장시키고 이데올로기 교육의 작업을 강화시키는 것이 주목적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사회권규약 위원회에서 북한이 제출한 A규약 이행에 관한 제1차 국가보고서 심의 과정에서 북한대표는 북한에서의 노동조합은 서구의 노동조합과는 달리 자신의 이익, 공장의 이익, 국가의 이익을

위해 올바르게 일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일차적인 목적을 두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다만, 기술교육을 개선하고 안전규칙과 기준을 준수하도록 가르치는 역할을 수행한다고 조합의 결성권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답변을 회피하고 있다(A규약 1차 국가보고서 및 회의록). 이외에도 집회도 기관, 기업소, 단체 등 공공기관들이 필요와 자체 계획에 따라 동원하는 군중집회를 ‘집회’의 자유로 인식하고 있다(B규약 2차 국가보고서 회의록). 집회 및 시위의 자유와 관련하여 내외의 적, 침략과 전쟁을 규탄하는 시위에 적극 참가하는 등 집회와 시위의 자유도 향유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⁴³

2. 자유민주주의 인권개념에 대한 인식

자유민주주의 인권개념에 대해서는 북한체제를 정당화하고 인권개선 요구에 대한 체제 유지 차원에서의 대응이라는 관점에서 인식이 정립되고 있다. 첫째, 자본주의 국가 내부에서 인권은 자본가계급의 무제한적인 특권적 권리를 옹호하는 개념이다. 둘째, 대외적 측면에서 다른 국가의 내정에 간섭하고 자주권을 유린하는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 ‘인권옹호’가 활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가. 계급적 시각과 유산계급 인권론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북한은 계급적 시각에서 인권을 인식하고 있다. 자본주의 사회의 인권에 대해서도 계급적 시각의 연장선상에서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또한 계급적 시각에서 자본주의 인권에 대해 ‘자본’의 관점에서 비판하고 있다.

⁴³ 리기섭, 『사회주의적 민주주의』, pp. 60~61.

“제국주의자들이 말하는 <인권>이란 돈만 있으면 별의별 짓을 다할 수 있는 부자들의 특권이다.”⁴⁴

사회주의의 계급론적 시각에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말하는 ‘초계급적 권리’가 허구라고 주장하고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개인의 ‘자유권’과 ‘평등권’, ‘재산권’을 구성요소로 설정하면서 추상적이며 초계급적인 권리를 ‘인권’으로 정의하고 있다.⁴⁵ 이와 같이 인권의 주체로서 초계급적 개인을 설정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자본가 계급에 대한 복종의 의무만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본주의사회에서 근로자들은 국가주권에 참가할 수 있는 권리가 없는 것은 물론, 자기의 정치적 의사를 발표할 수 있는 가장 초보적인 자유와 권리마저 가지고 있지 못하며 그들에게는 오직 착취계급에게 순종할 의무만이 차례지고 있습니다.”⁴⁶

계급을 초월하여 모든 개인들이 누구나 인권을 향유할 있다고 주장하지만 계급적 모순과 대립이 사회관계의 기본으로 되어 있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계급을 떠난 어떤 개인적 인간이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다. 북한도 엄밀한 의미에서 인권이 민족이나 계급 등 집단의 권리가 아니라 개인의 권리라는 점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지만 개인은 사회와 집단을 떠난 ‘초계급적’인 개인적 존재가 아니라 사회와 집단의 한 성원으로서의 개인이다. 개별적인 사회적 존재들이 모여 성립되는 사회적 집단이 인민대중으로 진정한 인권의 주체는

44. 김정일, “사회주의는 과학이다,” 『김정일선집 13』, p. 477.

45. “공정한 인권기준이 보장되어야 한다,” 『로동신문』, 2007년 3월 25일.

46. 김일성, 『김일성저작집 27』, p. 598.

오직 인민대중만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자본주의 인권에서 주장하는 ‘개인’은 인민대중의 구성원으로서의 ‘개인’이 아니라 탐욕과 이윤 추구, 극단적인 이기주의에 물든 자본주의적 개인, 소수 특권계급의 개인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⁴⁷

이상에서 보듯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말하는 인권의 주체인 ‘인간’이란 착취와 약탈을 기본으로 하는 유산계급을 정형화하는데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현실적으로 사회와 집단과는 전혀 무관한 사람들로써 자본가 계급만이 권리를 향유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인권이 자본가들의 특권적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초계급적’인 개인이 인권을 향유하는 주체라고 설정하는 것은 인민대중의 인권에 대한 관심을 초계급적인 개인의 권리로 미화하려는 목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첫째, 인권의 주체는 개인이며 다른 사람들의 인권에 대해서는 무관심해도 된다는 극단적인 개인주의 관념을 조장함으로써 인민대중이 조직적으로 인권투쟁을 위해 단합하지 못하게 하려는데 있다. 둘째, 초계급적 개인이 인권의 주체라고 설정함으로써 사회주의 국가에서 반혁명분자에 대한 진압을 ‘인권유린’이라고 비판하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극단적인 이분법과 배제의 논리에 입각한 인권에 대한 비판은 주체사상과 결합된 북한식 인권론을 정당화하기 위한 대응논리의 성격이 강하다. 따라서 계급적 시각에서 유산계급의 인권으로 지나치게 단순화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 아래 개인들이 실질적으로 권리를 향유하고 있는 현실을 왜곡하고 있다.

47- 정성국, “부르조야인권리론의 반동적본질,” 『철학연구』, 2호 (1995), pp. 41~42.

나. 자유권·평등권에 대한 비판

집단주의 원칙을 토대로 전체주의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북한으로서는 개인을 주체로 하는 자유권에 대해 지극히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다. 자본주의 체제 비판이라는 시각에서 접근하고 있다. 그렇지만 북한에서도 신흥자본주의 사상가들에 의하여 인권이념이 제창될 때 봉건적인 질곡과 구속, 중세기적 신의 절대적 우위성에 의하여 손상된 ‘개성’의 해방과 자유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인민대중의 반봉건적 요구와 이해관계를 반영한 진보적인 측면이 있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자본주의 사회에서 개인들의 무제한적인 ‘자유권’과 ‘평등권’은 계급과 계층을 초월하여 누구나 다 지닐 수 있는 ‘기본적 인권’이라는 주장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자본이 지배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권리’는 자본의 축적, 이윤추구를 위한 자본가들의 무제한적인 특권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본가계급이 국가주권과 생산수단, 사상·문화적 수단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자유권이 인민대중에게 현실적으로 보장되지 않고 소수 자본가계급만이 향유하는 특권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것이다.⁴⁸

첫째, 사상의 자유에 대해서도 계급적 시각에서 비판하고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상의 자유’는 진보적인 사상을 억누르고 자본주의 사상을 유포하기 위한 자유라고 규정하고 있다. 자본주의사회에서 ‘사상의 자유’, ‘개성의 절대적 자유’는 자본주의사상을 강요하는 ‘자유’라는 것이다. 이해관계가 서로 대립된 계급과 계층으로 분열되어 있는 자본주의사회에서는 하나의 사상이 사회를 완전히 지배할 수 없기 때문에 상이한 사상과 사조가 존재하는 것은 불가피한 현상이다. 자본주의사회

48- 정성국, “부르조아인권리론의 반동적본질,” 『철학연구』, pp. 42~43.

에서 이러한 현상을 사상의 ‘자유’라고 규정하면서 언론, 출판의 자유가 ‘자유’의 상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지만 자본주의 국가에서 언론 및 출판기관, 극장과 영화관, 집회장소를 비롯한 선전수단들은 자본가들에게 장악되어 있다. 이와 같이 금권을 이용해 출판물, 텔레비전 등 언론매체를 장악하여 자신들의 사상을 강요하고 있기 때문에 자본주의 사회에서 진정한 사상의 자유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⁴⁹ 이와 같이 결사, 집회, 언론의 자유 등이 보장된다고 법에 규정되어 있지만 자본가계급의 이익을 옹호하기 위한 것이지 근로인민대중을 위한 인권과 자유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둘째, 미국을 비롯한 서구에서 사회를 ‘만민평등의 사회’, ‘만민복지사회’, ‘문명세계의 모델’이라고 묘사하고 있지만 근로인민대중은 정치에 참여하지 못하고 어떠한 사회·정치적 권리도 행사하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근로인민대중은 정치의 주인, 사회의 주인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정치의 대상으로, 특권계층들의 이익을 위한 희생물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재산의 유무에 따라 인간의 사회적 지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인권의 불모지라고 비판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만민평등의 사회라고 선전하고 있지만 미국에서 흑인들은 백인들이 출입하는 상점과 식당, 공원과 주거 지역에 들어갈 수 없게 되어 있다고 인종차별의 관점에서 만민평등 사회가 허구라고 비판하고 있다.⁵⁰

49. 한하련, “자본주의에 대한 환상의 반동성과 그 해독성,” 『철학연구』, p. 44; 리기섭, 『사회주의적 민주주의』, p. 115; “자본주의사회의 자유광고는 파렴치한 기만이다,” 『로동신문』, 2007년 8월 23일.

50. “미국식 《인권》론은 자주권 유란을 합리화하기 위한 궤변,” 『로동신문』, 2005년 12월 2일.

I
II
III
IV
V
VI

3. 인권과 민주주의의 상관성에 대한 인식

인권과 민주주의에 대한 북한의 인식 못지않게 인권과 민주주의의 상관성에 북한의 대한 인식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상관성에 대한 북한의 인식은 향후 인권정책 수립시 고려할 요소라고 할 수 있다.

가. 상관성에 대한 일반 논쟁

민주주의와 인권의 상호 효과에 대해 다양한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 미국 등 서구에서는 기본적으로 민주주의가 인권을 보호한다는 긍정적 견해가 지배적이다. 민주주의는 선거민주주의 또는 절차적 민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로 대별할 수 있다. 선거민주주의(electoral democracy)와 시장경제(market economy)가 진정한 권리보호체제의 일부분이라는 견해가 있다. 민주주의는 서로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 사회구성원들이 복합적인 사회문제를 결정하는데 자유롭고 평등하게 참여하는 것을 도모하는 제도이다. 민주주의는 집단적인 구속력을 갖는 규칙과 정책에 관해 인민이 통제를 행사하는 의사결정의 양식이다. 권력의 원천은 인민에게 있으며 인민의 의사에 따라 사회규칙과 정책이 결정된다. 이런 점에서 민주주의는 사회구성원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절차의 문제를 강조하고 절차의 정당성에 대한 구성원들의 동의문제를 중시한다. 이와 같이 민주주의제도는 사회구성원의 의사결정 참여를 강조하는 정치질서이기 때문에 구성원의 주체적인 민주적 참여와 권리를 보장하는 절차가 중요하다. 사상의 자유, 언론의 자유, 집회의 자유 등 시민적 권리의 기본적인 내용은 민주주의 실행의 기본조건이며, 대표자를 선출하는 투표권이나 피선거권은 민주주의 실현과 직결된 권리이다. 이러한 인권

실천은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바탕인 것이다.⁵¹

그런데 선거민주주의가 인권을 보장하는 필요충분조건은 아니라는 견해들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은 공정하고 개방된 정기적 선거를 통하여 공직자를 선출하는 ‘절차적 민주주의’를 중요시하고 있다. 즉 절차적 민주주의에서 공정하고 개방적인 선거가 인민의 의지와 이익을 추구하는 정부를 산출한다고 가정한다. 이러한 점은 미국의 연례각국인권보고서에서 ‘정부를 교체할 권리’를 가장 중요한 권리의 하나로 설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해 도널리는 절차적 민주주의가 실질적으로 인권을 보장하는 지에 대해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도널리는 선거민주주의가 국제적으로 공인된 인권의 요구에 불충분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냉전 이후 선거민주주의가 세계에서 계속 확장, 심화되고 있으나 선거민주주의의 인권성과를 과대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대다수 중앙아메리카의 선거로 집권한 정부에 대한 일반적인 불만은 정부가 실제로는 소수의 이익만을 대변해왔다는 것이다. 절차적으로 민주적인 정부도 여전히 조직적으로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1960년대의 아프리카에서처럼 벨라루스, 우즈베키스탄, 슬로바키아, 불가리아와 같은 국가들의 민주화로부터 얻게 되는 가장 혼란스러운 교훈은 사람들이 선거를 인권보호를 위한 수단이 아니라 부의 획득을 위한 도구나 통제력을 느끼게 하는 도구로 인식한다는 것이다. 또한 소수에 대한 다수의 억압도 여전히 자행되고 있다. 예를 들어 크로아티아에서는 2차 대전 중 50만 명의 세르비아인을 학살한 나치 괴뢰정권의 상징물을 부활시켰고 부모가 모두 크로아티아인이 아닌 경우 시민권을 인정하지 않기로 하였다는 것이다.

⁵¹ 김중섭, “21세기의 민주주의와 인권 사상,” 『민주주의와 인권』, 제1권 2호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2001), p. 72.

선거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한 필요조건일 것이다. 선거민주주의는 인권주창자들에게 정치공간과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를 촉진시킬 수 있다. 그런데 선거민주주의 정부도 얼마든지 국제적으로 공인된 인권을 침해하고 위협하는 방식으로 권력을 사용할 수 있다. 선거는 권리·보호적 정치태도와 정치제도에 의해 뒷받침될 때에만 진정으로 자유민주주의적인 정부를 산출하게 된다는 것이다.⁵²

민주정부가 과거 인권탄압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하는 점은 민주화의 정도를 파악하는 중요한 척도가 된다는 것이다. 구 권위주의 세력들은 청산 대상이면서도 민주정부 하에서 여전히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자신들과 결부된 인권문제 해결에 소극적이거나 반대했다. 인권 문제는 기존 권위주의 정권에서 물려받은 유산이고 민주정부, 인권단체를 중심으로 한 시민사회, 군부 등의 중요행위자들의 세력관계가 인권문제 해결 과정에서 중요한 함의를 지닌다고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민주정부가 인권문제 해결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높은 지도력과 사회적 지지에 기초하여 권위주의 세력들의 영향력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⁵³

인권과 민주주의가 일방향의 상관성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견해들이 있다. 민주주의가 억압을 정당화하는 명분으로 활용되는 상황이 발생할 때 인권개념은 민주주의 개념이 갖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된다. 민주주의와 인권은 상호보완적이며 그 심층에서는 동일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단순히 민주주의라는 형식적 틀을 확보하는 투쟁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민주주의의 실질적 내용을

52. 잭 도널리 지음, 박정원 옮김, 『인권과 국제정치』 (서울: 오름, 2002), pp. 275~276, 282~283.

53. 박병수, “민주주의 이행과 인권: 아르헨티나와 칠레,” 『라틴아메리카연구』, 15권 2호 (2002), pp. 73~75.

채워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 방안의 하나로 인류의 보편이상인 인권개념을 받아들이는 것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는 것이다.⁵⁴

민주주의와 인권의 근본적 성격의 차이에서 상관성을 파악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민주주의는 누가 통치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답하는 집단주의적인 정치이론이다. 민주주의는 인민의 힘을 인정하고 그들이 집단적 선의 실현을 추구한다. 반면 인권은 정부가 어떻게 통치해야 하는가를 다루는 개인주의적 정치이론이다. 인권은 자율성을 갖는 개인의 힘을 존중하며 모든 개인에게 최소한의 재화, 용역, 기회를 보장하는 범위 내에서 개인적·사회적 목적을 추구해야 한다고 본다. 개인의 이익은 다수의 요구와 자주 충돌한다. 많은 사람들이, 개인적이든 집단적이든 자신들의 정치적 영향력을 적에게 해를 가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얻기 위해 사용한다는 것이다. 소수의 권리 즉, 개별적 시민의 개인적 인권은 다수의 민주적 권리보다 우선적이며 우월하다. 인권은 그 속에서 민주적 의사결정이 작동할 수 있는 범위를 규정한다. 인권은 기본적으로 다수결적인 것은 아니다. 인권은 모두(all)가 아니라 각자(each)에 관련된다. 인권은 다수로부터만이 아니라 소수로부터도 각 개인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다수가 자신들의 권리나 이익을 지키기에 비교적 유리한 절차적 민주주의사회에서는 인권의 중요한 기능이 민주적 의사결정을 제한하는 것이기도 하다.

인권과 민주주의 사이의 잠재적 갈등은 비교정치학자들이 자유주의적 민주주의(자유민주적 복지국가)라고 부르는 정치체제를 통하여 해결하여 왔다. 이 정치체제는 시민의 권리를 실현하는 조건을 만드는 제

⁵⁴ 이상수, “민주주의와 인권의 상생적 발전을 위하여,” 『민주법학』, 제30호 (2006), pp. 7~8.

I
II
III
IV
V
VI

도로 국가를 인식한다는 점에서 자유주의적이다. 정치적 권위가 인민의 주권으로부터 나온다고 본다는 점에서 민주적이고, 경제적·사회적 권리가 소유권 이상으로 확대된다고 본다는 점에서는 복지국가이다. 이 세 가지 모두 인간의 도덕적 평등, 정치적 평등, 그리고 모든 시민의 자율성에 뿌리를 두고 있다. 자유민주주의만이 본질적으로 인권을 보장할 수 있다. 그것은 자유민주주의가 (인민의 뜻에 기초한) ‘민주적’ 이어서가 아니라 (권리에 기초한) ‘자유적’ 이기 때문이다. 오늘날 서방의 자유민주주의는 일차적으로 자유주의적이다. 시민의 권리는 정부에 권위를 제공하고 정부의 업적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 인민주권은 각자의 개인적 권리로부터 도출된다. 그리고 민주정치 범위는 각 개인의 인권에 의해 제한을 받는다는 것이다.⁵⁵

끝으로 민주주의와 인권의 분리를 주장하는 견해들이 있다. 민주주의와 인권의 세계화에 대해 세계 한쪽의 이념, 문화, 관행, 종교 전통 등이 세계의 다른 쪽에 강요하는 신제국주의라고 저항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신제국주의(문화제국주의)와 문명충돌 논쟁을 회피하기 위해 민주주의의 추구하고 인권의 추구를 분리해야 한다는 견해가 제기되고 있다. Andrew Nathan은 민주화와 서구가치로부터 인권을 분리함으로써 반동적 민족주의를 자극하는 것을 피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분리론자들은 유엔 차원에서 보편적인 제도화 기준에서 인권과 민주주의에 차이점이 있다는 점을 거론하고 있다. 민주주의와 비교하여 인권은 국제영역에서 아주 강력한 제도적 위치를 점하고 있다. 이러한 위치는 유엔 기관에서 중요한 일익으로서 인권이 진전되어 왔기 때문이다. 반면 민주주의는 유엔에서 동등한 이념적 지위를 점하고 있

⁵⁵ 잭 도널리, 『인권과 국제정치』, pp. 277~278.

지 못하다는 것이다.

첫째, 국제규범의 선언으로서 인권에 부여된 국제적 승인이다. 둘째, 세계적 수준에서의 인권의 제도화이다. 셋째, 많은 국가들은 권리의 존중과 승인을 보장하도록 고안된 국내입법을 갖고 있다. 인간행위의 기본규범체로서 인권의 국제적 승인, 다양한 타입의 인권제도의 국제화, 국제인권법의 발달은 국제규범으로서 민주주의가 갖고 있는 위치와 인권을 다르도록 만들고 있다. 민주적이지 않고 민주적이 될 의향도 없는 국가라고 하더라도 인권의 제도적 기틀을 발전하고 서명하는데 참여하여 왔다. 특별한 인권규범과 인권프로젝트의 승인하는 데 민주적 국내 정치레짐을 갖고 있는 것과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다는 것이다. 인권을 모니터하고 보호하는 작용들이 자유주의적 의회 민주주의에 의해서뿐만 아니라 많은 다른 종류의 레짐에 의해서도 수행될 수 있다. 모든 국가가 국제인권법의 일원이 되기 위하여 민주적 국내 레짐을 향유할 필요는 없다. 명백히 많은 비민주적 국가들이 이러한 방식으로 인권에 개방적이라는 것이다.⁵⁶

둘째, 인권과 민주주의를 분리해야 한다는 두 번째 논거로서 많은 국가가 민주주의가 아닌 상황에서 인권과 민주주의 사이의 본질적 연계를 강력하게 유지하자고 주장할 경우 많은 국가에서 인권규범의 이행을 지연시키는 효과를 낳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세계의 많은 국가들이 민주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인권의 준수 이전에 민주주의가 와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이것이 인권의 성취를 지연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 성립될 수 있다는 것이다.⁵⁷

⁵⁶- Anthony J. Langlois, "Human Rights without Democracy? A Critique of the Separationist Thesis," *Human Rights Quarterly*, Vol. 25 (2003), pp. 994~998.

⁵⁷- *Ibid.*, pp. 1000~1001.

I
II
III
IV
V
VI

셋째, 경제성장과 민주주의와 인권의 연관성에 대한 상호 관계에 대한 논쟁이 전개되고 있다. 경제성장이 중산층을 발달시키고 중산층은 정치에 대한 관심을 발달시킬 여가시간을 갖게 될 것이고 그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공간을 확대해 나가도록 할 것이다. 자유와 개인 자율성을 위한 그러한 공간을 발달시키는 것이 민주주의를 위한 건전한 자극제가 된다는 것이다. 반면, 경제번영이 안정에 의존적 이므로 정치문화 내에서 민주주의의 급격한 촉진은 불안정을 낳을 것이다. 이론상으로 민주주의가 고무되더라도 균형을 무너뜨리는 어떤 것도 행해질 수 없다. 인권의 준수는 이러한 시나리오의 마지막 단계, 즉 궁극적인 민주화에 가능할 것이다. 진정한 인권의 준수는 장기적으로 가능하게 된다는 것이다. 경제적 번영에 따라 민주주의보다는 차라리 안정에 대한 선호를 기반으로 인권에서는 변화가 느리게 진행된다는 것이다.

넷째, 권위주의적이지만 시혜적인 레짐 아래 있는 국가에서 인권이 준수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통치자가 권력을 포기할 의향이 없고 자신들의 국민에 선행을 하기를 원하는 레짐에서 세계인권선언의 권리, 특히 경제적·사회적 권리가 민주적 거버넌스의 선결조건 없이 제공될 수 있다. 또한, 원칙적으로 인권에 적대적인 권위주의적인 국가이지만 현실 정치적 이득을 얻기 위하여 다양한 인권의 제도적 표출에 전략적으로 관여할 준비가 되어 있는 레짐도 존재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수하르트 통치 아래 인도네시아가 학술적, 정부적 수준에서 인권대화를 개최하고, 버마에 의한 인권교육의 수용 등을 들 수 있다는 것이다.⁵⁸

이러한 분리론에 대해 Langlois는 다음과 같이 반론을 제기하고 있

⁵⁸ Langlois, "Human Rights without Democracy? A Critique of the Separationist Thesis," p. 1001.

다. 첫째, 인권과 민주주의의 이념 및 관행의 역사적 출현과 발전은 상호 의존적이고 본질적으로 연계되어 있다. 인권과 민주주의 발전에서 인과론적 시도는 서로 긴밀하게 작동하면서 발전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인권의 발달에 대한 이야기는 민주주의의 발달에 대한 이야기 없이 말해질 수 없다. 반대도 마찬가지이다. 이들의 동시발생이 역사적 우연의 문제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장래에는 어느 하나가 다른 하나 없이 존재할 수 없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둘째, 민주주의를 위한 기반을 제공하는 철학적 토대와 인권을 위한 기반을 제공하는 철학적 토대가 같다. 인권과 민주주의 모두 정치적 자유주의에서 태동되었다. 민주주의와 인권의 동시 발생이 단순히 역사적 우연히 아니라 둘 다 정치적 자유주의의 표현이므로 철학적으로 결정되었다. 현대의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은 자유주의로부터 유래하고 자유주의의 가정을 표현하는 점에서 공통의 자유주의적 존재론을 갖고 있다. 자유주의는 개인주의, 평등주의, 보편주의, 개량주의의 4가지 주의에 호소하고 있다. 자유주의와 인권의 관계가 유래의 관계, 일체성이라고 한다면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관계는 구성 혹은 혼합주의적 관계이다. 민주주의는 인민에 의한 지배로서 정의될 수 있다. 민주주의는 성공하기 위해서는 인권을 요한다. 인권은 민주주의의 필요한 부분이며 자유주의적 민주주의를 위해 필요하다. 인권이 자유주의적 민주주의에 필요하다는 주장은 명료하게 밝히기 어렵지 않다. 2개의 국제인권규약 중 B규약(언론의 자유, 결사의 자유, 이동의 자유, 종교의 자유 등)은 민주주의의 올바른 작동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이해되는 시민적·정치적 권리의 리스트이다. A규약도 적절하게 민주주의가 기능하는데 중요하다. 이러한 권리들은 민주주의가 비틀거릴 수도 있는 선결조건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필수적이다. 평등이나 접근에 대한 존중에서 균점이 없다는 정치적·

I
II
III
IV
V
VI

시민적 권리가 무용지물이기 때문에 중요하다. 시민들은 정치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소극적인 자유를 보장받을 필요뿐만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그렇게 참여할 수 있도록 기본재의 공급을 필요로 한다.

셋째, 인권이 민주적 틀에서 기능하지 않는다면 단지 자선에 불과하다. 인간행위를 위한 기준이나 규범이지 권리는 아니게 된다. 권리와 기준 사이의 차이는 사람들이 하나의 인권에서 갖고 있는 것을 적절하게 개념화하는 방식에서 존재한다. 이것은 인권이 내재화되는 정부의 형태에 의존한다. 권위주의정부 체계 내에서 소위 인권은 권리가 아니라 겸손, 특권이다. 그것은 권위를 가진 개인이나 집단의 변덕에 철회될 수도 있는 자비의 형태이다. 비민주적 사회에서 부딪치는 요구는 권위가 궁극적 힘을 갖는 요구이다. 그러한 환경에서의 인권의 준수는 인민에게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다. 어떤 호의적 기준, 당분간 자신들에게 이익이 되는 것으로 간주되는 것의 준수를 위해 자신들의 권리를 그리도록 준비되는 권위에 관한 것이다. 인권기준이나 규범을 준수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한 규범이나 기준은 변덕에 의존하여 주어질 수도, 제거될 수도 있다. 문제되는 국가의 국제적 혹은 국내적인 전략적 이해에 따라 주어질 수도 제거될 수도 있다. 따라서 민주주의에서 살 때만이 이러한 기준이나 규범이 완전히 공약된 권리로서 보유한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다. 민주화가 권리로서 인권의 실현을 위한 필요조건이다.

넷째, 자유민주주의는 시혜적인 독재보다 바람직하다. 국제 인권레짐은 개인의 자유를 요하지만 어떤 특정 종류의 정치·경제시스템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주장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인권레짐은 가장 명백히 특별한 유형의 정치·경제시스템을 필요로 한다. 즉 권리가 진정한 권리인 시스템, 자의적 제거의 두려움 없이 그러한 권리들이 자유롭게 실행될 수 있는 시스템, 권리를 가진 사람들이 그러한 권리의 경계병인 시스템



이 필요하다. 이것은 민주적 정부와 자유시장이 요구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권리기준이 권위자의 변덕이나 편의에 종속되는 레짐은 진정한 권리레짐이 아니다. 권리레짐의 작동과 이행에 관한 관할권을 갖는 권위자가 인민에게 책무적이어야만 한다. 잘 기능하는 민주주의는 각 개인이 자신의 권리 이행을 보장하는 수단에 접근하는 것을 보장한다. 민주주의가 잘 작동하는 한 시민들은 권리레짐(right regime)을 경멸하는 사람들에 도전할 의지를 갖게 될 것이다. 비민주적 사회에서 통치자의 정책에 도전하고 변화시킬 능력, 통치자를 제거함으로써 정책을 변화시킬 능력은 부재하다.⁵⁹

나. 상관성에 대한 북한의 인식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제관계이론에서 논의되고 있는 인권과 민주주의 상관성 논리는 북한이 자유민주주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적용하여 북한의 인식을 평가하기는 어렵다. 다만, 권위주의적이지만 시혜적인 레짐이라는 기준에서 인권과 민주주의 관계에 접근하는 견해는 북한에 일부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북한에서는 본질적으로 계급적 시각에서 민주주의와 인권의 상관성을 인식하고 있다. 또한 민주주의 유형에 따른 인권의 보장 여부로 상관성을 평가하고 있다. 즉, 정치방식으로서 어떤 민주주의가 실질적으로 인권을 보장하는 체제인가라는 관점에서 상관성을 규정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자유민주주의는 인권을 보장하지 못하는 정치체제라고 인식하고 있다. 반면, 사회주의적 민주주의는 인권을 보장하는 정치라고 선전하고 있다. 비록 민주주의에 대한 정의가 다르기는 하지만 민주주의와 인권

⁵⁹- Langlois, "Human Rights without Democracy? A Critique of the Separationist Thesis," pp. 1005~1016.

I
II
III
IV
V
VI

이 강한 상관성을 갖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사회주의적 민주주의의 인민적 성격과 부르쵸아민주주의의 반인민적 성격은 인권문제에서 뚜렷이 나타납니다. 사람을 가장 귀중한 존재로 여기는 우리의 사회주의사회에서는 인권을 법적으로 철저히 보장하고 있으며 그것을 침해하는 자그마한 현상도 허용하지 않습니다...지금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이 《인권옹호자》로 자처하면서 사회주의를 헐뜯고 있지만 진짜 인권 유린자는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입니다.”⁶⁰

특정 정치체제가 인권을 보장하는 유무는 국가주권과 생산수단을 어떤 계급이 장악하고 있는지에 달려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인민대중이 정치적 자유와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정치의 주인으로 국가주권을 갖고 국가 관리에 적극적으로 참여가 보장되는 민주주의가 정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계급적 관점에서 ‘국가주권’을 기준으로 민주주의와 인권의 상관관계에 대한 논리를 제시하고 있다. 계급적 시각에서 인권의 주체를 기준으로 인민대중이 주체인 사회주의적 민주주의는 인권을 전적으로 보장하는 정치체제라고 선전하고 있다. 반면, 자유민주주의는 소수 유산계급과 그 추종자들의 인권만을 보장하고 다수의 인민대중은 인권을 향유할 수 없는 체제라고 비판하고 있다.

북한에서 민주주의는 본질적으로 인민대중의 의사를 집대성한 인민대중 자신의 정치라고 정의하고 있다. 민주주의는 기본적으로 인민대중의 의사와 이익을 모든 국가정치활동에 철저히 구현하는 것이다. 인민대중의 의사와 이익을 국가정치활동에 구현하기 위해 국가가 인민대중에게 자유와 평등, 인권을 보장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⁶⁰ 김정일, “인민대중중심의 우리식사회주의는 필승불패이다,” 『김정일선집 11』, p. 55.



따라서 민주주의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의사의 표현 등 인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상관관계를 설정하고 있다. 그런데 사회주의적 민주주의에서 국제인권규약에 보장된 자유권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장할 수 있는지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계급적 시각을 확고하게 견지함으로써 차별정책이 정당화되고 있다.

인권은 정치의 반영으로 어떤 정치가 실시되는가에 따라 인권 보장 유무가 결정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사회주의 정치는 인덕 정치인 반면, 자본주의 정치는 금권정치라고 비판하고 있다. 그런데 인권문제를 올바르게 해결되기 위해서는 인덕정치가 실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인덕정치 관점에서 인권과의 상관성을 인식하는 북한의 태도는 민주주의와 인권이 연계되어 있지 않다는 주장으로 볼 수 있다. 권위주의적이지만 시혜적인 레짐에서 인권이 보장될 수 있다는 분리론자들의 인식과 일맥상통하는 논리이다. 동지적 단결과 협조, 사랑과 믿음이라는 집단주의인식이 기반이 되는 인덕정치를 구현하자면 사랑이라는 덕성을 지닌 정치지도자가 전제조건이라고 주장한다. 인권이라는 차원에서 인덕정치를 살펴본다면 다당제와 의회제를 비판하는 대응으로 정치지도자의 덕성에 기반한 인덕정치 대 약탈정치의 구도 속에서 인권문제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논리이다. 이와 같이 민주주의와 인권의 상관성에 대한 북한의 인식은 이러한 시혜적인 시각이 가장 극단적인 형태로 표출된다고 할 수 있다.⁶¹

이상에서 보듯이 북한에서는 인덕정치가 “이 세상에서 인권을 가장 높은 수준에서 보장해주는 정치”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지만 사회주의권의 붕괴와 경제난, 대외적 고립의 상황 속에서 1990년대 등장한

⁶¹ 김정일, “사회주의는 과학이다,” 『김정일선집 13』, pp. 481~483.

I
II
III
IV
V
VI

인덕정치는 북한이 체제위협에 직면하여 대중통합 혹은 동원을 위해 강제적 방법이 한계에 이르러 동의를 기제를 개발할 필요에 따른 것이었다. 기존의 계급차별정책이 일부 완화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완전히 폐지되지는 않고 있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최고지도자의 시혜적 관점에서 인권을 바라보게 될 경우 유일지도체제인 북한에서 최고지도자인 김정일이 판단해 추진하게 된다. 그 과정에서 백성들은 자신들의 의사와 참여는 배제된 채 여전히 주체가 아닌 시혜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⁶² 최고지도자인 김정일의 판단에 따라 인권이 좌우될 위험성이 높으며 법적·제도적으로 보장되지 못하는 근본적인 한계를 안고 있다.

다음으로 절차적 민주주의와 인권과의 상관관계에 대한 인식이다. 미국에서는 공정한 선거절차에 따라 '정부를 교체할 권리'가 가장 핵심적인 인권의 하나로 설정하고 있다. 즉 '정부를 교체할 권리'라는 기준에서 절차적 민주주의가 인권의 보장과 아주 밀접하게 상관성을 갖고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북한은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절차적 민주주의를 다른 시각에서 인식하고 있다. 북한은 다당제를 기반으로 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선거는 유산계급 사이의 정권교체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절차적 민주주의와 인권의 상관성을 부인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북한에서 절차적 민주주의는 정부를 교체할 권리가 아니라 대의원을 중심으로 하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의미한다. 따라서 엄밀히 평가할 때 인권과 연결되는 것이라기보다는 주권의 실현에 국한되는 의미를 지니게 된다. 북한은 1960년대 후반 들어 주체사상을 유일사상으로 격상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김일성 중심의 유일지도체

⁶² 서보혁, 『북한인권』, pp. 147~148.

제를 확립하였다. 그 결과 김정일이 후계자로 지명되고 1974년 ‘유일사상 10대원칙’이 발표되었다. 이에 따라 북한에서는 절차적 민주주의는 사문화되고 획일적 집단주의가 만연하기 시작하였다. 북한주민들은 자신들의 사상은 물론 생활의 전 분야에서 김일성의 교시에 따라야 하고 그 결과 수령과 당이 주는 시혜의 대상으로 전락하게 되었다. 앞에서 설명하였듯이 북한의 민주주의론이 유일사상체계의 정립에 따라 ‘우리식 사회주의적 민주주의’로 변하게 됨으로써 북한의 인권관에 부정적 영향을 주게 되었다. 유일사상·유일지도체계와 더불어 전체사회가 하나의 대 가정을 이루고 있다는 가부장적 사고가 추가되면서 인권이 북한 민중의 자각과 힘에 의해 획득되는 것이 아닐 수령과 당에 의해 주어지는 것으로 왜곡되고 있다.⁶³

I
II
III
IV
V
VI

⁶³ 서보혁, 『북한인권』, pp. 146~147, 151.

IV

인권과 민주주의 확산에 대한 인식



탈냉전 이후 인권은 실질적인 국제정치 이슈로 부각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가 확산되고 있다. 대부분의 사회주의 국가에서 체제전환이 이루어지고 심각한 경제난으로 내외적으로 위기에 처한 북한은 인권과 민주주의가 확산되는 세계적 현상에 대해 체제위협으로 인식하고 대응논리를 정립하여 오고 있다. 인권과 민주주의 확산 현상에 대한 북한의 인식은 향후 대북인권정책 수립시 고려해야 할 요소라고 할 수 있다.

1. 국제사회의 인권 공론화에 대한 인식

가. ‘인권공세’로 비판

북한은 국제사회의 인권 개선 정책에 대해 체제 위협으로 규정하고 인권을 개선하는 데 주력하기보다 정치적으로 대응논리를 정립하여 반발하고 있다. 북한도 “원래 인권문제는 인간의 존엄과 자유, 복리를 보장하기 위한 숭고한 인도주의적 문제”라고 보편성을 인정하고 있다. 그렇지만 북한은 기본적으로 세계질서에 대해 제국주의 세력과 자주지향 세력 사이의 투쟁관계로 규정하면서 이분법적 논리에 따라 인권문제의 공론화에 접근하고 있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인권개선 요구에 대해 인권의 보편성을 명분으로 국가의 자주적 발전을 저해하려는 제국주의 세력들의 ‘인권공세’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와 같이 북한에서는 탈냉전 이후 인권이 국제정의 주요 이슈로 부상하는 현상 속에서 국제사회의 인권 개선 요구에 대해 제국주의가 세계를 제패하려는 ‘인권공세’로 규정하면서 전면 거부하고 있다. 세계를 지배하고 통치하려는 것은 제국주의자들의 변함없는 야망인데, 세계를 제패하려는 수단 중의 하나로 인권을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반

I
II
III
IV
V
VI

제자주적인 국가, 혁명적인 국가가 제국주의의 인권확산의 주된 대상이 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반제자주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국가에 대해서는 인권문제를 제기하는 반면, 자신들에게 순종하는 국가들에 대해서는 인권문제가 없다고 이중기준으로 접근하는 것이 ‘인권공세’의 본질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예를 들어 북한을 대상으로 ‘인권법’을 채택하고 ‘인권담당특사’까지 임명한 것이 인권공세의 구체적 증거라고 주장하고 있다.⁶⁴

특히 인권을 명분으로 사회주의 국가에 대한 인권확산정책이 가장 강력하다고 경계감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국제사회의 인권공문화에 대해 ‘사회주의사상전선’을 허물기 위한 내부 와해 공세라고 규정하고 있다. 대부분의 사회주의 국가에서 ‘인권공세’라는 독약을 냉철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내부 와해 전략에 적실성 있게 대처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회주의가 붕괴되었다는 것이 역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교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사상전선이 와해되면 사회주의가 변질되고 궁극적으로 사회주의가 망하는 데 인권의 확산이 가장 치열한 사상전선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미국의 고위 관료들을 중심으로 ‘인권싸움은 민심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이라고 공언하는 것이 인권공세를 통한 사회주의사상 전선 와해 전략을 반증하는 사례라고 주장하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인권확산으로 인해 사회주의의 고유한 속성인 집단주의가 와해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집단주의에 기초한 사회주의 사회에서 인권의 확산으로 인해 집단주의가 사라지면 사회주의가 뿌리부터 허물어지게 된다는 것이다. 사회주의 사회의 정치사상적 단결과 집단주의적 생활을 말살하기 위해 인권확산을 통해 반정부 세력을 지원

⁶⁴ “제국주의의 <인권>공세를 단호히 짓부시자,” 『로동신문』 편집국논설, 2007년 8월 17일.

하고 조장하는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의 학자 중에서 “미국의 인권외교의 목표는 사회주의나라 이단자들을 고무하자는 데 있다”고 주장한 사실이 인권공세의 본질적인 목적을 드러내주는 반증이라는 것이다.⁶⁵ 이와 같이 기본적으로 인권문제를 공세라고 규정하면서 체제 안보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인권적 관점에서 성찰할 수 있는 여지는 거의 없게 되는 것이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나. 주권원칙 및 국권으로서 인권

보편적 가치인 인권개선 요구에 대해 북한은 근대국제정치의 핵심원리로 작동하고 있는 주권의 원칙을 근거로 대응하고 있다. 유엔헌장 제1장 제2조 7항에는 “현 헌장에 포함된 어떠한 것도 근본적으로 어떤 국가의 국내적 관할권 내에 있는 문제에 대해 유엔이 개입할 수 있는 권위를 부여하지 못한다”고 주권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유엔헌장을 비롯하여 인권관련 국제규범에서는 인권의 보호와 실행을 개별국가에게 맡기고 있다. 그런데 냉전 종식 후 소수민족이나 인종의 자결권이라는 입장에서 주권은 절대적일 수 없다는 견해가 제기되는 등 인권의 보편성과 주권의 원칙 사이에 논쟁이 전개되고 있다. 세계화라는 국제정치 현실의 변화에 따라 전통적인 주권개념에 입각한 국가의 관할권도 점차 약화되는 추세에 있다. 국경을 가로지르는 엄청난 교류의 증가로 재정, 경제, 정보, 인민에 대한 통제가 약화되고 있다. 특히 인터넷을 매개체로 한 사이버공간 등 정보통신혁명이 급격히 진행되면서 국가주권은 신성불가침의 강도가 점차 약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주권의 원칙을 강력하게 고수하려는 인권유린국과 보편적 가치로서 인권을 보호하

⁶⁵ “제국주의의 <인권>공세를 단호히 짓부시자,” 『로동신문』 편집국논설, 2007년 8월 17일.

I
II
III
IV
V
VI

고 실행하는 문제는 주권의 원칙을 넘어서는 주장이 맞서면서 세계적으로 논쟁이 전개되고 있다.

주권의 원칙에 입각하여 인권문제에 접근하는 대표적인 국가가 중국이다. 중국에서는 인권은 본질적으로 국내관할에 속하는 사안이며, 국제법의 가장 중요한 원칙인 주권원칙에 종속될 뿐이며 인권이 국가주권에 우선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어느 한 국가에 있어서의 국민의 권리와 의무, 소수민족의 보호, 여성과 아동의 보호에 대하여 법에 따라 범죄인을 처벌하는 행위는 국내관할에 속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에 따라 ‘인권에 국경이 없다’는 주장을 반박하면서 주권은 인권의 전제이며 인권은 주권에 의지하여 그 실현이 보장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권이 없다면 국제사회의 평등한 일원이 될 수 없으므로 근본적으로 인권을 향유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⁶⁶

북한은 중국과 마찬가지로 인권문제도 주권의 소관사항이라는 입장을 확고하게 견지하여 오고 있다. 인권은 천부적인 것이 아니라 국가가 관할권 내에 있는 인민들이 권리를 향유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물질적 조건을 구비해줄 때 인권이 보장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인권의 보편성, 주권과의 상관관계에 대한 북한의 기본인식은 2000년 3월 29일 제56차 인권위원회에서 북한대표가 한 연설에서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일부 세력들이 인권의 보편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국경을 넘어서는 개입이 허용되어야 한다고 주권존중 원칙의 재 정의를 주장하고 있다. 그렇지만 ‘인권보호’라는 명분 아래 무력에 의해 약소 독립 국가를 복속시키려는 불순한 정치적 목적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권은 모든 국가와 민족의 생명선으로 인민은 국가의 관할 영토 내에서 삶을 영위하고

⁶⁶ 박종귀, 『중미인권분쟁』 (서울: 새로운 사람들, 2001), pp. 275~276, 291.

국가의 법적·실제적 조치에 의해 보장된 인권을 향유할 수 있기 때문 주권이 없는 인권은 상상조차 할 수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그러므로 주권존중의 원칙이 재 정의되거나 약화되기보다는 오히려 재 강화되고 공고해져야 된다는 것이 북한의 시각이라는 점을 강력하게 천명하고 있다.⁶⁷

중국 등 사회주의 국가에서 일반적으로 인식하고 있듯이 인권개선 요구에 대해 북한은 내정간섭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인권의 첫째가는 원수는 인민들의 자주권을 유린하며 <인권옹호>의 간판밑에 다른 나라의 내정에 간섭하는 제국주의자들이다.”⁶⁸

인구와 영토에서 국가의 대소는 있다고 하더라도 지위의 고하와 지시·복종의 관계는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내정불간섭은 그 어떤 경우에도 준수되어야 할 국제관계의 근본원칙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런데 인권의 보편성을 명분으로 다른 국가의 내정에 간섭하려는 전략이라고 인권 개선 요구를 전면 거부하고 있다. 냉전이 종식된 이후 식민지시대와 같이 직접적으로 침탈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인권과 자유를 명분으로 내정에 간섭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침탈을 지속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상에서 보듯이 사회주의 일반과 마찬가지로 주권의 원칙, 내정불간섭 원칙에 따라 인권 개선요구에 대해 전면적으로 반박하고 있다. 그런데, 북한의 경우 국제사회의 인권정책에 대해 국권의 관점에서 접근한

⁶⁷- Statement by The Delegation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to the Fifty-Sixth Session of the Commission on Human Rights, 29 March 2000.

⁶⁸- 김정일, “사회주의는 과학이다,” 『김정일선집 13권』, p. 477.

다는 점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존재한다. 북한은 인권을 통해 내정에 간섭하고 북한의 체제를 전복하고 정권을 교체하려 한다는 인식을 강하게 표출하고 있다. 특히 미국이 인권의 보편성을 명분으로 내정에 간섭하여 정권을 교체하려는 것을 정당화하려 하고 있는데, 북한인권법이 대표적인 증거라고 강조하고 있다. 미 행정부 고위관리가 북한인권법이 ‘북한정권을 핵과 인권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압박하는 기틀’, ‘북한체제 붕괴를 꾀하는 전략’이라고 규정한 사실에서 정권교체 전략을 알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미 국무부는 북한지도부가 대부분의 인권 규범, 특히 개인의 권리를 정당하지 못하고 외래적이며 국가와 당의 목적을 전복하려는 기도로 인식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⁶⁹

북한의 경우 미국의 인권정책에 대해 체제붕괴, 정권교체 전략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체제안보, 즉 국권의 관점에서 인권문제에 접근하는 논리로 연결되고 있다. 미국은 인권상황을 과장하여 공론화하다가 기회가 조성되면 인권상황 개선을 명분으로 전쟁까지 일으킨다고 극단적인 체제 안보 관점에서 인권문제를 인식하고 있다. 이라크 전쟁에서 보듯이 테러에 대한 전쟁과 ‘비민주주의적인 억압정권’의 지배에서 인민들을 ‘해방’한다는 명분에 따라 침략전쟁을 정당화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라크 전쟁의 교훈에서 보듯이 침략전쟁으로 국권을 상실하면 인권과 생존권 자체가 상실된다는 교훈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국가의 제도적, 법률적 보장이 있어야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실질적으로 향유할 수 있는데, 자주권을 상실당하면 인권 자체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 인권은 곧 국권이라는 북한의 논리이다. 따라서 인권문제를 올바르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이 철저히 고수되어

69. “인권유린자의 부당한 이중기준적용행위,” 『로동신문』, 2006년 12월 13일; U.S. Department of State, Country Reports on Human Rights 2003.

야 한다는 것이다. 국가자주권을 떠나 인권에 대하여 논하는 것은 탁상 공론에 불과하기 때문에 인권은 국권이라는 논리로 비약하고 있다. 자주권의 상실 여부의 시각에서 국제사회의 인권문제 제기를 인식함으로써 체제안보의 관점에서 국권과 연결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⁷⁰

김정일이 정권을 장악한 이후 선군정치를 내세우고 있다. 그런데 최근 북한의 문헌에서는 인권은 곧 국권이라는 논리가 선군정치의 연장선 상에서 설명하려는 논지가 새롭게 정립되고 있다. 북한에 대한 적대세력의 인권개선 요구가 보다 집요해지고 장기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추세 속에서 사상과 제도를 굳건하게 보위하며 인권을 향유하기 위해서는 국력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인권은 강력한 국력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총대가 든든해야 인민들이 인권을 실질적으로 향유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선군은 참다운 인권을 옹호하기 위한 정치로서 미국의 ‘인권공세’에 대응할 수 있는 최상의 정치방식이라고 선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선군은 인권옹호의 선결이며 믿음직한 담보”, “선군정치는 곧 인권옹호정치”라고 대내홍보논리를 정립하고 있다.⁷¹

다. 문화상대주의, 세계화 및 ‘우리식’ 인권기준

북한에서는 인권개선 요구에 대해 인권의 보편성과 상대주의 논쟁의 연장선상에서 대응논리를 정립하고 있다. 개인을 주체로 하는 자유권을 중심으로 접근하는 서구 중심 시각에 대해 아시아적 가치논쟁에서 보듯

70. “참다운 인권을 옹호하여,” 『로동신문』, 1995년 6월 24일; “조선인권연구협회 대변인 담화,” 『로동신문』, 2006년 8월 19일; “제국주의의 <인권>공세를 단호히 짓부시자,” 『로동신문』 편집국논설, 2007년 8월 17일.
71. “공정한 인권기준이 보장되어야 한다,” 『로동신문』, 2007년 3월 25일; “제국주의의 <인권>공세를 단호히 짓부시자,” 『로동신문』 편집국 논설, 2007년 8월 17일; “반역사적인 지배주의외교정책-미국 인권공세,” 『로동신문』, 2007년 9월 13일.

이 동아시아 일부 국가를 중심으로 문화상대주의 시각에서 반론이 제기되고 있다. 문화상대주의는 현대인권이론이 내포하고 있는 서구중심주의를 비판하고 문화와 가치의 다양성에 기반을 둔 인권의 다원주의를 주장하는 이론이다. 즉, 사회형태나 발전단계의 다양성에 따라 인권의 다양성 또한 인정되어야 한다는 인식이다. 문화상대주의에 따르면 서로 다른 문화권에 속한 민족들과 개인들은 인간의 기본적 권리에 대해서도 다르게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다.⁷²

아시아적 가치라는 문화상대주의 시각에서 인권을 규정하는 인식론은 단순히 논쟁 차원을 넘어 유엔 회의에서 공식적으로 표명되고 있다. 비엔나 세계인권회의에 앞서 1993년 3월 29일부터 4월 2일까지 방콕에서 개최된 아시아지역 회의에서 대다수 국가의 찬성 아래 『방콕선언』(Bangkok Declaration on Human Rights)이 채택되었다. 중국이 이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였는데, 동 선언에서 인권은 ‘본질적으로 보편적’이지만 국가와 지역적 특성, 다양한 문화적, 역사적, 종교적 배경의 맥락 속에서 고려되어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문화상대주의적 시각이 강하게 표출되고 있다.⁷³

도널리는 인권의 보편성에 접근하는 시각을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첫째, 급진적 상대주의(radical relativism) 시각으로 문화만이 모든 가치의 궁극적 기원이라고 보는 극단적인 입장이다. 단순히 사람이라는 사실만으로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자격을 부여받은 권리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에 인권이라는 개념 자체를 부인하는 시각이다. 둘째, 급진적 보편주의(radical universalism) 시각으로 인권을 포함한

⁷² 이원웅, “동아시아의 민주화와 인권,” 이상우 편저, 『21세기 동아시아와 한국 1: 부상하는 새 지역질서』 (서울: 오름, 1998), p. 185.

⁷³ A/CONF.157/ASRM/8; A/CONF.157/PC/59, <<http://www.unhchr.ch/html/menu5/wcbangk.htm>> (검색일: 2007.8.14); 앤드류 네이탄, “중국의 인권문제, 어떻게 볼 것인가,” 한상진 편, 『현대사회와 인권』 (서울: 나남출판, 1998), p. 41.

모든 가치들은 전적으로 보편적이며 문화나 역사적 차이에 비추어서도 어떤 방식으로든 수정될 수 없다는 시각이다. 셋째, 강한 상대주의(strong relativism) 시각으로 인권은 전적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원칙적으로 문화와 다른 환경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주장한다. ‘보편적’ 인 권은 단지 문화적으로 특정한 가치들을 점검해 보는 의미를 가질 뿐이 라고 보며, 가치들의 변화와 상대성에 강조점을 둔다. 넷째, 약한 상대 주의(weak relativism) 시각으로 보편적 인권을 제1차적인 것으로 보 고 문화에 따른 수정은 일정 정도 허용된다는 시각이다. 즉, 권리를 실 현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역사적,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입 장이다.

이러한 시각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도널리는 세 가지 측면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최상위의 수준으로 ‘인권개념’(concept)을 들 수 있을 것이 다. 정치참여의 권리, 노동할 권리와 같은 매우 일반적인 내용으로 문화 적 다양성이 정당화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 수준으로 ‘해석’(interpretation)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직업보장이나 실 업보장과 같은 것이 노동의 권리에 대한 해석의 예라고 할 수 있는데, 국제적으로 공인된 인권의 대부분은 어느 정도의 해석적 다양성을 허용 한다. 세 번째 수준으로 해석의 ‘구체적 실천방도’를 들 수 있는데, 상당 한 정도의 다양성이 허용될 여지가 있다.⁷⁴

⁷⁴ 잭 도널리, 『인권과 국제정치』, pp. 73~76. 전부 아니면 전무(all-or-nothing view of the relevance of culture)라는 양 극단을 피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논의라고 할 것이다. Richard. Falk, “Cultural Foundations for the International Protection of Human Rights,” Abdullahi Ahmed An-Naim, ed., *Human Rights in Cross-Cultural Perspectives: A Quest for Consensus* (Philadelphia: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1991). 이외에도 문화상대주의 에 대해서는 Michael J. Perry, “Are Human Rights Universal? The Relativist Challenge and Related Matters,” *Human Rights Quarterly*, Vol. 19, No. 3 (August 1997); John J. Tilly, “Cultural Relativism,” *Human Rights Quarterly*, Vol. 22, No. 2 (May 2000) 등을 참조할 것.

I
II
III
IV
V
VI

위에서 언급한 도널리의 논지를 북한에 적용할 때 북한은 강한 상대주의 시각을 견지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북한은 문화상대주의 시각에 입각하여 문화·역사적 차이로 인해 모든 국가에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인권기준은 없다는 논리에 따라 ‘우리식 인권론’을 정립하여 인권개선 요구에 대응하고 있다. 북한은 1990년대 중반 사회주의권 붕괴라는 체제안보에 부정적인 국제환경이 조성되면서 강한 상대주의적 시각에서 ‘서방식’과 대비되는 우리식 사회주의, 주체사상을 반영한 ‘우리식 인권’이라는 독특한 인권개념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식 인권’이라는 용어는 1995년 6월 24일자 『로동신문』 “참다운 인권을 옹호하여”에서 구체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인민대중 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가 기반’이 되고 있다. 김일성이 워싱턴 타임즈와의 회견에서 “인민이 좋아하면 그것이 공정한 인권기준으로 된다”고 강조하였다. 그리고 “인민이 좋아하고 그들의 요구와 리익에 부합되는것”이 북한의 실정에 부합하는 ‘우리식 인권기준’이 된다는 논리이다. 인권이 보편적 가치라는 것을 부인하지는 않지만 ‘인권기준’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국제사회에서 보편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인권기준은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우리 식의 올바른 인권기준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⁷⁵

“지구상의 모든 나라들은 각이한 전통과 민족성, 서로 다른 문화와 사회발전력사를 가지고 있으며 매개 나라의 인권기준과 보장형태도 해당 나라의 구체적실정에 따라 서로 다르다.”⁷⁶

⁷⁵ 김일성, “미국 《워싱턴타임스》 기자단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김일성저작집 44』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6), p. 371; 『로동신문』, 2001년 3월 2일; 『로동신문』, 2001년 3월 16일.

⁷⁶ 『로동신문』, 2001년 3월 2일.

우리식 인권론은 인권기준은 인민대중의 지향과 요구를 반영하여 설정되어야 하는데, 나라와 민족마다 역사, 풍습, 경제, 문화발전수준과 생활방식 등 조건이 다른 상황에서 그러한 조건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인민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인권기준이 다르게 설정될 수밖에 없다는 논리이다. 따라서 특정 국가와 집단의 ‘문명’과 ‘기준’이 세계의 유일한 기준으로 될 수 없다는 점에서 서방국가들이 수용을 강요한 인권기준은 북한의 실정에 맞지 않는 ‘서방식’ 인권기준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즉,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가들이 자신들의 인권기준을 수용하라고 강요하고 있지만 ‘서방식’ 인권 기준이 보편성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거부한다는 것이다. ‘서방식’이란 정치적으로 다당제, 경제적으로는 시장경제체제, 서방식 인권기준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북한은 인권기준을 중심으로 ‘우리식’과 ‘서방식’(미국식)으로 이분법적으로 대응하고 있다.⁷⁷

이러한 인권기준이라는 문화상대주의 시각에서 미국 및 서방국가들이 자신의 인권기준을 수용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세계화 전략의 일환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중국은 미국이 자신의 국가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인권문제를 국제관계의 영역으로 끌어들여 세계적으로 미국의 인권관념과 인권기준으로 양자관계와 국제문제를 처리하려는 세계화를 수단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에서는 세계화에 대해 세계의 ‘일체화’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세계의 ‘일체화’는 전 세계를 서방식 ‘자유세계’로 만들고 모든 민족을 예속시키고 동화시키려는 전략이라는 것이다.⁷⁸

77- “제국주의의 <인권>공세를 단호히 짓부시자,” 『로동신문』 편집국 논설, 2007년 8월 17일; “<서방식>은 망국 자기식이 제일,” 『천리마』, 9호 (2000), p. 61.

78- 박종귀, 『중미인권분쟁』, pp. 278~281; 김정일,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할데 대하여: 1997년 6월 19일,” 『김정일선집 14』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00), pp. 329~333.

모든 국가에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인권기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서방식 인권기준이 보편적 기준이라고 강압적으로 수용하라고 강요하고 있다. 이와 같이 서방식 인권기준을 전 세계에 전파하려는 것은 자신들의 ‘가치관’과 생활방식이 지배하는 세계를 만들어 세계를 지배하려는데 목적이 있다는 것이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가들은 ‘인권’과 ‘자유화’ 문제는 ‘세계화’의 한 부분이라고 주장하면서 개발도상국들이 세계화의 흐름에 합류하기 위해서는 인권을 증진하고 민주주의를 받아들여야도록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특히 미국이 자신들의 인권 기준을 ‘인권표준’으로 규정하면서 다른 국가들에게 수용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세계를 미국화하려는 행위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2007년 9월 이란의 수도 테헤란에서 ‘인권과 문화 다양성에 관한 비동맹운동회의’가 개최되었다. 동 회의에서 참가국들이 인권과 민주주의를 명분으로 전 세계를 미국화하여 지배하려는 미국의 부당한 외교정책을 비판하였다는 점을 소개하고 있다.⁷⁹

이상에서 보듯이 북한은 우리식 인권론에 입각하여 체제안보적 관점에서 우리식과 서방식 인권기준으로 이분화하고 배제의 논리로 접근함으로써 상대주의적 시각을 표출하고 있다. ‘인권기준’을 중심으로 정립되는 우리 식 인권기준은 도널리의 인권개념 수준과 해석 수준을 포괄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계급적 속성, 집단주의, 정치에 참여할 권리, 사상의 자유, 종교의 자유 등에 대한 북한의 주장을 살펴보면 인권의 개념과 해석이라는 2가지 상위의 수준에서 강한 상대주의라는 입장에 가깝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개념적 유연성이 사라짐으로써 국제사회, 특히

79- “제국주의의 <인권>공세를 단호히 짓부시자,” 『로동신문』 편집국논설, 2007년 8월 17일; “반역사적인 지배주의외교정책-미국 인권공세,” 『로동신문』, 2007년 9월 13일.

미국과의 대화와 타협의 여지는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다. 중국도 주권의 원칙, 집단주의, 경제적·사회적 권리 우선 등 상대주의적 시각에서 미국의 인권개입정책에 대응하고 있다. 그렇지만 중국은 이분법적 사고를 벗어나 인권대화를 수용하고 시민적·정치적 자유를 상당부분 수용하는 등 유연성을 보여주고 있다. 여전히 이분법적 사고를 중심으로 인권에 접근하고 있는 북한의 인식은 평등과 상호존중의 관계를 바탕으로 양자 간 대화를 통해 인권문제에 접근하려는 중국의 입장보다 더욱 경색된 수준의 상대주의 논리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북한은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아동권리협약, 여성차별철폐협약의 당사자라는 점에서 ‘국제적으로 공인된 인권기준’을 전면 부정하고 있지는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인권규약에 따라 구체적으로 인권을 어떻게 실행에 옮길 것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국제인권기준의 국내적 실천이라는 차원에서는 강한 상대주의적 태도를 보이는 이중적인 모습을 볼 수 있다.

라. 유엔의 공정성 비판

북한은 유엔인권기구에서 북한인권 문제가 다루어지고 있는 사실에 대해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가들이 인권을 정치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유엔의 공정성이 훼손되고 있다는 논리로 대응하고 있다. 이러한 시각은 중국에서 먼저 표출되고 있다. 중국은 미국이 인권을 정치화하기 위해 유엔인권위원회를 활용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미국이 서방국가들과 제휴하여 인권을 명분으로 다른 국가의 내정에 간섭하는 방편으로 유엔 인권위원회를 활용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미국이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중국 인권결의안을 지속적으로 상정하자 중국은 유엔

I
II
III
IV
V
VI

인권위원회가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가들이 다른 국가의 내정간섭을 위한 일방적 포럼으로 전락하였다고 비판하고 있다.⁸⁰

북한의 경우 대국인 중국처럼 불상정동의안으로 대응할 수 없기 때문에 유엔인권기구가 정치적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인식이 보다 강하게 표출되고 있다. 1997년 8월 21일 유엔인권소위원회에서 여행의 자유 보장 등 B규약 관련 시안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북인권결의안을 채택하였다. 북한은 유엔인권소위원회가 국제인권규약 본연의 사명으로부터 이탈하여 자주성을 견지하려는 나라들에 정치적 압력을 가하는 불순 세력들의 어용도구로 전락했기 때문에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을 탈퇴하겠다고 선언하였다. 유엔 인권위원회가 서방국가의 정치적 도구로 활용되지 않고 객관성, 공정성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⁸¹

국가를 대표하는 유엔인권위원회의 북한 인권결의안에 대해서는 체제안보적 관점에서 결의안 자체를 거부하여 오고 있다. 2003년부터 2005년까지 3차례에 걸쳐 유엔인권위원회에서 채택된 북한 인권결의안, 2005년, 2006년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북한 인권결의안에 대해 북한은 ‘대조선 고립압살책동의 일환’이기 때문에 결의안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다시 말해 영국과 일본 등 서방국가들이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에 편승하여 북한의 ‘제도전복’을 목적으로 결의안을 채택하였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거부한다는 것이다.

북한은 중국과 마찬가지로 결의안을 배격하는 논거로 유엔인권위원회의 행태를 들고 있다. 냉전 종식 이후 인권을 정치적으로 활용하려는

⁸⁰- Human Rights Watch, “Chinese Diplomacy, Western Hypocrisy and the U.N. Human Rights Commission,” March 1997 <<http://www.hrw.org/summaries/s.china973.html>> (검색일: 2006.5.2).

⁸¹- 『조선중앙통신』, 1997년 8월 28일, 1998년 4월 24일.

기도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유엔인권위원회 조차 주권국가의 제도변경을 목표로 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기구로 전락하였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특별절차에 따른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결의안 채택 제도의 이행에 대해 유엔인권위원회가 ‘정치화’되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유엔인권위원회가 서방국가들의 이해를 반영하여 ‘선택성’과 ‘이중기준’으로 활동함으로써 ‘객관성’과 ‘공정성’이 상실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서방국가를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나라들의 인권 유린현상, 미국 국내의 인권유린, 불법적인 이라크 침략으로 인한 무고한 민간인 대량학살, 전쟁포로 학대 등 미국의 인권유린 현상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 반면, 서방과 다른 사회정치제도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에 대해서는 ‘결의’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러한 불순한 정치적 목적을 추구하는 세력들에 의한 이중기준과 선택성으로 인해 유엔인권위원회의 신뢰성이 훼손되고 있다는 것이다.⁸²

이러한 북한의 태도는 새로 설립된 유엔인권이사회에서 보다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국제사회에서는 그동안 기존의 유엔인권위원회 체제가 인권보호에 미흡하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2005년 제60차 유엔총회에서 인권위원회를 개편하는 결의안(A/RES/60/251)을 채택하였다. 동 결의안에 따라 2006년 6월 19일 유엔인권위원회(Commission on Human Rights: 경제사회이사회 산하)를 대체하는 유엔인권이사회(Human Rights Council: 총회 산하)가 공식 출범하였다. 인권이사회는 인권침해로 논란을 빚은 국가들의 이사회 진출을 어렵게 하기 위해 심각한 인권침해가 드러난 이사국에 대해 이사국 3분의

⁸²- E/CN/4/2005/G/13, Letter from the Permanent Representative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2005.3.2; 『평양방송』, 2005년 4월 20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 담화.

I
II
III
IV
V
VI

2의 찬성으로 자격을 박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006년 6월 19일부터 30일까지 개최된 제1차 유엔인권이사회 회의에서 최명남 주제네바 북한 대표부 참사관은 발언을 통해 유엔인권이사회가 개별국가를 대상으로 삼는 인권결의와 특별보고관 제도의 폐지를 적극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개별국가 대상 인권결의나 특별보고관 제도는 예외 없이 정치적 동기에 의해 비롯된 것으로, 당사국의 의사를 완전히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강행됐다고 주장하면서 “주권 유린이며 적대행위의 산물”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들 제도를 지금 바로잡지 않으면 궁극적으로 인권이사회는 과거의 정치적 대결 시대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면서 실무그룹 단계에서 이를 우선적 의제로 검토하고 폐지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미국은 유엔 인권이사회 창설을 위한 논의 과정에서 인권이사회가 인권유린국들에 의해 본래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되지 못하게 될 우려가 있다고 불만을 표시하면서 이사국 선출에 입후보 하지 않다. 그런데 북한은 미국이 ‘인권재판관’으로 행세하면서 인권이사회 창설과정에서 부당한 주장들을 제기하다가 입후보조차 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많은 비동맹 및 개발도상국들이 미국과 서방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유엔인권이사회의 이사국에 당선되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선거 결과에 대해 북한은 인권옹호를 명분으로 하는 내정간섭을 자행하던 미국과 서방세계의 인권외교 실패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제적인 인권문제를 다루게 될 유엔 인권이사회가 제대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인권의 ‘정치화’와 ‘이중기준’의 적용을 배제하고 ‘공정성’을 원칙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⁸³

⁸³ “실패한 <인권외교>,” 『로동신문』, 2006년 5월 24일.

2. 민주주의 확산에 대한 인식

부시 행정부 출범 이후 자유와 민주주의 확산 전략이라는 외교정책과 관련하여 북한 문헌에서 미국식 민주주의 확산에 대한 부정적 결과를 경고하는 글들이 상당히 빈번하게 게재되고 있다. 북한은 ‘미국식 민주주의’라는 배타적 시각을 정립하면서 ‘전파’전략에 극단적인 부정적 입장을 확고하게 견지하고 있다. 북한이 민주주의 확산전략에 대해 극도로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은 체제붕괴, 정권교체전략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다당제의 전파, 테러에 대한 전쟁, 색깔 혁명 등 구체적인 정책을 중심으로 민주주의 확산전략이 정권교체로 귀결되는 전략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가. 정권교체 전략으로 확산 인식

미국은 ‘정부를 교체할 권리’를 가장 중요한 정치적 권리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듯이 절차적 민주주의를 중요시 하고 있다. 그리고 부시 행정부 취임 이후 자유와 민주주의 확산을 핵심적인 목표 중 하나로 설정하고 외교를 추진하여 오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민주주의 확산전략에 대해 북한은 정치체제와 정권교체 전략으로 규정하고 다음과 같은 대응 논리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 자결권을 유린하여 체제를 전복하려는 전략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모든 국가는 자신에게 맞는 정치체제를 선택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정치체제의 선택은 해당 국가의 인민의 자결권에 속한다는 것이다. 민주주의는 국가주권에 의한 인민들의 자주적 요구를 실현하는 과정을 통하여 완성되기 때문에 민주주의는 특정국가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있는 성격의 사안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자유와 민주주의는 의

I
II
III
IV
V
VI

부에서 이식하거나 외부에서 시혜적으로 보장하여 줄 수는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자신의 체제와 제도를 다른 국가에 강요하고 있기 때문에 자결권을 유린함으로써 국제법과 국제규범이 무시되는 결과가 초래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자신의 정치방식과 생활방식을 수용하도록 강요하게 되면 선택권이 박탈됨으로써 민주주의 그 자체를 부인하는 행위가 된다는 것이다.⁸⁴

둘째, 미국의 민주주의 확산전략이란 반정부 세력을 지원하여 친미적인 정권을 수립하려는 전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전략에 대한 인식은 미국의 변환외교(Transformational Diplomacy)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표출되고 있다. 북한은 미국의 민주주의 확산전략에 대해 ‘전환외교’라는 용어로 번역하고 있다. 미국의 변환외교란 ‘민주주의와 자유를 전파하기 위한 외교’로서 반정부 세력을 지원하여 다른 국가의 체제를 조정하고 친미정권 수립의 확대를 목표로 하는 전략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아프리카를 사례로 들면서 미국이 주창하고 있는 변환외교란 아프리카를 미국식으로 ‘자유화’하고 ‘민주주의화’하려는 의도라고 주장하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미국의 변환외교는 미국식 선거제도의 전파를 통해 아프리카 지역 국가의 정치체제를 미국식으로 변경하려는 전략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독립국가 연합 국가들을 대상으로 민주화를 위한 외교활동을 통해 친미정권을 수립하는데 성공한 미국이 아프리카의 원유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아프리카 국가들의 정권과

84. “미국의 패권주의정책은 파탄을 면할수 없다,” 『로동신문』, 2004년 2월 9일; “미국의 《민주주의전파》는 민주주의말살행위,” 『로동신문』, 2006년 3월 16일; “미국의 《자유, 민주주의확산》 책동은 파산을 면할수 없다,” 『로동신문』, 2006년 8월 24일; “제국주의자들의 민주주의 전파책동을 반대 배격,” 『로동신문』, 2007년 9월 14일; 신본진, “미국식 《민주주의확산》 책동의 반동적 본질,” 『김일성종합대학학보(역사·법학)』, 52권 3호 (2006), p. 59.

제도를 전복하려는 시도를 지속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변환외교를 통해 아프리카 국가들에게 사법제도를 강화하고 헌법을 수정하며 이를 위한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있는데, ‘부정부패 청산’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변환외교 전략을 구체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다른 국가에 주재하는 외교관의 활동방식을 변화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주재국의 수도에 집중하여 활동하지 않고 능동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세계적 차원에서 민주주의국가 수립에 대한 지지를 확산하고 주재국에 충돌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대응체계를 갖추어나간다는 것이다.⁸⁵

셋째, 다당제를 전파하여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와해시킴으로써 체제를 붕괴시키고 정권을 교체하려 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북한은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가들이 다당제가 가장 진보적인 정치방식이라고 규정하면서 전파하려는 전략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다당제는 개인주의와 자유주의에 기초한 생존경쟁이 지배하는 자본주의사회의 정치방식으로서 ‘다원주의’를 끌어들이면 개인주의와 자유주의가 조장되어 사회공동의 이익이 침해당하게 되며 인민대중의 통일과 단결을 파괴하고 사회적 무질서와 혼란을 조성하게 된다. 다당제민주주의를 허용하게 되면 반사회주의책동이 감행되어 노동계급의 당이 정권을 장악하지 못한다는 것이 역사적 경험에서 입증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⁸⁶

구체적으로 경제 원조를 조건으로 ‘다당제’의 도입을 강요하는 방식으로 전파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첫째, 경제 개혁을 하는 국가들에게는 원조를 제공한다. 둘째, 그렇지 않은 국가들에게는 원조를 단절하고

⁸⁵ “《전환외교》 정책-미국식 《민주주의》의 침략적본질,” 『로동신문』, 2006년 2월 21일.

⁸⁶ 김정일, “사회주의건설의 역사적교훈과 우리 당의 총로선,” 『김정일선집 12』, pp. 283~284; 『로동신문』, 2000년 1월 3일.



제재를 가한다. 셋째, 다당제를 반대하는 아프리카국가 지도자들에 대해서는 인권유린을 부각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은 다당제를 수용하도록 한 후 선거를 통하여 친미적인 인물이 당선되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다당제를 수용한 국가에서 자신들의 지배에 유리한 인물을 대통령으로 당선시키기 위하여 막대한 재정을 지원하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다당제를 수용하고 선거를 실시하였더라도 친미적인 인물이 대통령 선거에서 패할 경우 인권문제를 제기하여 반정부세력들을 부추긴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미국은 콩고공화국과 케냐에서 다당제가 실패한 원인에 대해 인권문제라고 규정하면서 반정부세력들이 정부 반대에 나서도록 자극하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은 일당제 정치체제를 채택하고 있던 아프리카 국가에서 다당제 정치체제를 수용함으로써 국내적으로 다양한 부정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아프리카를 사례에 대한 북한의 평가를 통해 다당제 전파 전략에 대한 북한의 인식을 분석할 수 있다. 먼저 아프리카 국가들이 다당제를 수용한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다. 첫째, 자본주의에 대한 환상이 작용하고 있다. 둘째, 새 사회 건설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능숙한 지도능력의 부재에 기인한다는 것이다. 다당제는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서방국가들의 정치·경제적 압력과 강요에 의하여 도입되고 있는데, 수용 여부는 현 집권자들의 지도사상과 정치적 신념이 가장 핵심 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김정일의 리더십에 의해 확고하게 일당체제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을 부각시키려는 것으로 분석된다.

아프리카 국가에서 미국의 전략에 넘어가 다당제를 도입한 부정적 효과에 대해 첫째, 다당제를 도입하면 제국주의나라들의 지배와 예측,

착취와 약탈의 대상으로 전락하게 된다. 둘째, 국내적으로 심각한 정치적 혼란과 민족분쟁, 무질서가 초래된다. 셋째, 아프리카 국가들에 심각한 경제위기가 조성되고 인민생활이 극도로 쇠락하게 된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실업자의 양산, 인민생활의 궁핍, 수많은 피난민 양산을 들 수 있다는 것이다.⁸⁷

나. 테러에 대한 전쟁과 색깔혁명에 대한 인식

북한은 미국이 민주주의를 확산하는 대표적인 방식의 하나가 테러에 대한 전쟁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국주의적 속성을 지닌 미국의 침략적 본성이 민주주의 확산이라는 명분 아래 테러에 대한 전쟁을 통하여 발현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테러에 대한 전쟁은 미국의 일방주의적 군사정책의 산물인 동시에 힘을 통하여 미국식 민주주의를 세계에 전파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9·11테러 사건을 계기로 미국은 테러와의 전쟁을 개시하였는데, 주권국가에 대한 침략임에도 불구하고 테러에 대한 전쟁을 정당화하기 위해 민주주의 확산으로 포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의 국가이익을 위해 침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 확산으로 명분을 포장한 대표적인 사례로 이라크 전쟁을 들고 있다. 미국이 중동에서 민주주의를 확산한다고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풍부한 원유자원을 확보하는 전쟁의 목적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이라크에서 미국은 미국식 민주주의를 확산시킨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이라크에 대한 영구강점을 실현하며 이라크를 발판으로 중동지역에 대한 군사적 통제권을 확보하는 것이 실질적 목적이었다고 비판하고 있다. 미국이 주도하는 테러에 대한 전쟁은 민주주의를 보장한다는 명

⁸⁷ 량봉선, “아프리카나들에서의 《다당자》의 도입과 그 후과,” 『김일성종합대학학보 (역사·법학)』, pp. 35~39.

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미국식 정치체제와 생활방식을 강요함으로써 역설적으로 진정한 자유와 민주주의를 말살하는 정책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⁸⁸

민주주의 확산을 명분으로 하는 테러에 대한 전쟁을 뒷받침하기 위해 미국이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2005년 3월 미 행정부는 전 세계에 민주주의와 자유를 확대하고 폭정을 종식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 ‘민주주의 증진법안’을 상하 양원에 상정하였다. 이 법안은 세계의 모든 국가들을 민주주적인 국가와 비민주적인 국가로 분류하고 비민주적인 국가들에 대해서는 국가별로 행동계획을 작성하고 민주화 실현을 추진시킬 것을 제안하고 있다. 북한은 비민주주의적인 국가들에 대한 행동계획이란 바로 테러에 대한 전쟁으로 합리화되는 침략과 전쟁이라고 규정하고 있다.⁸⁹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북한은 체제와 정권교체를 위해 서방식 민주주의가 활용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미국은 다른 국가에서 ‘민주주의의 후퇴’를 명분으로 ‘서방식 민주주의’를 강요하며 자신들에 순종하는 정권을 수립하려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테러에 대한 전쟁과 더불어 ‘색깔혁명’은 미국이 세계지배를 위해 구사하는 민주주의 확산을 위한 방식의 하나라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은 테러에 대한 전쟁의 대상으로 삼지 않은 국가에 대해서는 ‘색깔혁명’의 방식으로 안으로부터 와해시켜 친미정권을 수립하려는 전략이라는 것이다. 민주주의 전파를 통해 사람들을 무정부적인 자유주의자로 만들어 국가의 법질서를 파괴하고

⁸⁸ “미국식<민주주의>를 단호히 반대배격하자,” 『로동신문』 편집국 논설, 2006년 12월 13일; “미국의 《민주주의전파》는 민주주의말살행위,” 『로동신문』, 2006년 3월 16일.

⁸⁹ 신본진, “미국식 《민주주의확산》 책동의 반동적 본질,” 『김일성종합대학학보(역사·법학)』, p. 60.

사회적 혼란을 조성하게 한 후 내정간섭의 구실로 삼아 정권교체를 기도하는 대표적인 사례가 최근 여러 국가에서 발생한 색깔혁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은 이러한 색깔혁명을 통해 실제로 여러 국가에서 친미, 친서방적인 정부가 수립된 사실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특히 색깔혁명을 통한 미국식 민주주의 공세는 중앙아시아에서 가장 분명하게 표출되고 있다고 소개하고 있다. 구소련 국가들에 미국식 민주주의를 수출하여 ‘오렌지혁명’, ‘장미혁명’과 같은 색깔혁명을 일으켜 정권교체를 기도하였다는 것이다. 미국이 ‘장미혁명’, ‘오렌지 혁명’ 등 색깔혁명을 주창하면서 미국식 민주주의 수용하도록 조장하였는데, 이로 인해 미국의 선동을 받은 반정부 세력에 의해 정권이 교체되고 폭력 사태가 발생하였으며, 친미정권이 출현하는 부정적 결과가 초래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성공을 토대로 미국에 유리한 세계질서를 형성하기 위해 ‘자유, 민주주의 확산론’을 만들어내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은 매년 다른 국가의 정부전복 활동을 10억 달러를 지출하고 있다고 통계를 제시하고 있다.⁹⁰

다. 세계화 전략으로 확산 인식

미국의 자유와 민주주의 확산 전략이 추구하는 궁극적 목적에 대해 체제전복, 제도변경을 통해 전 세계를 ‘미국식 자유세계’로 만들려는 전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미국은 자유의 확산, 민주주의 확산을 통하여 다른 국가 내에서 자유화 바람을 일으켜 자국의 제도에 대한 의혹과 불신감, 반항심을 고취시킴으로써 제도를 전복하는 전략을 추진하여 오

⁹⁰ “제국주의의 <인권>공세를 단호히 거부하자,” 『로동신문』 편집국 논설, 2007년 8월 17일; “《전환외교》 정책-미국식 《민주주의》의 침략적본질,” 『로동신문』, 2006년 2월 21일.

I
II
III
IV
V
VI

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신의 패권주의정책을 합리화하려는 명분에 불과하다고 패권정책의 차원에서 민주주의 확산전략을 인식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북한은 “미국식 《민주주의》는 온 세계를 미국화하기 위한 초대국식 《민주주의》”라고 미국의 ‘민주주의 확산’ 전략에 대해 세계화하려는 세계제패전략으로 규정하고 있다. 미국의 ‘자유’와 ‘민주주의 확산’이라는 외교 전략은 세계를 미국이 지배하는 단극세계로 만들려는 것이 근본목적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냉전의 종식으로 직접적인 침략 전략을 구사하기 어렵게 질서가 질적으로 변화하자 세계 제패를 실현하기 위한 새로운 수법으로 등장하는 것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미국식 ‘자유와 민주주의전파’ 전략이라는 것이다. 민주주의 확산은 미국이 추구하는 ‘세계화’를 실현하는 전략의 하나로서 반미자주적인 국가를 대상으로 정치체제, 경제, 문화 등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를 미국식으로 변화시키려는 전략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제국주의자들이 세계의 <일체화> 흐름이라는것을 꾸며낸것은 전 세계를 서방식<자유세계>로 만들며 모든 민족을 저들에게 예속시키고 동화시키자는데 목적이 있다.”⁹¹

북한은 세계화를 우선 경제적인 측면에서 인식하고 있다. ‘세계화’는 모든 국가들의 정치, 경제, 문화, 금융, 정보 등 모든 분야들을 ‘일체화’하는 것으로 개념을 규정하고 있다. 즉, 발전된 국가의 모든 것을 기준으로 하여 세계를 하나로 통합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발전된 국가란 미

⁹¹ 김정일,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할데 대하여,” 『김정일선집 14』, p. 330.

국을 비롯한 서방국가들을 지칭하고 있다. 우선적으로 미국 등 서방국가들은 세계화를 실현하기 위해 경제를 우선시 하였는데, 세계경제를 상품, 봉사, 자본, 노동력의 단일시장으로 전환하는 과정과 병행하여 다른 국가의 정치, 문화 등 분야들을 일체화하려고 시도하였다.

미국 달러의 가치가 하락하면서 불안을 느낀 미국을 비롯한 서방세력은 경제의 일체화를 통한 세계화가 아니라 미국식 가치관의 일체화를 통한 세계화를 주장하게 되었다. 최근 미국은 세계를 서방식 ‘자유세계’로 만들기 위하여 미국식 가치관을 세계에 전파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여 세계의 일체화를 실현한다는 새로운 세계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변화하고 있다. 여기서 미국식 가치관이란 바로 미국식 민주주의와 인권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또한 경제를 중심으로 하는 이전의 세계화와 비교하여 가치관 중심의 세계화는 보다 노골적으로 세계를 서방식 자유세계로 전환시키려고 획책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세계경제의 ‘일체화’를 통하여 개발도상국의 정치도 ‘서방식’으로 변화시키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 세계화를 주창하는 전략가들은 시장의 힘과 경제적 자유가 정치적 변화를 일으킨다고 주장하면서 다른 국가들을 경제 개방과 정치 자유화로 유도하려고 시도하고 있다는 것이다.⁹²

미국은 소련과 동유럽에서의 사회주의 좌절에 대해 냉전에서의 승리로 과신하면서 민주주의와 안정을 보장하고 세계의 ‘일체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세계질서’를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민주주의란 서방식민주주의를 의미하며 ‘새로운 세계질서’란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질서를 의미한다고 주장한다. 다시 말해 새로운 세계질서는 사회주의를 완전히 없애고 자본주의만이 지배하는 미국

⁹² “《세계화》 책동은 파산을 면할수 없다.” 『로동신문』, 2007년 1월 28일; “《세계화》의 반동적본질과 그 후과.” 『로동신문』, 2007년 2월 25일.

중심의 ‘단극세계’로 재편하여 모든 지역문제를 미국의 지휘하에 해결되는 세계질서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라는 것이다.⁹³

유일초대국의 지위를 자처하면서 새로운 세계질서를 기도하려는 미국에 대해 문명관이라는 관점에서 인식하고 있다. 미국은 미국식 ‘문명’을 다른 나라들에 수출하여 주체성과 민족성을 말살하고 미국의 문명이 인류문명을 지배하게 만들므로써 미국식 문명의 세계화를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본질에 있어서 전세계를 미국식 ‘문명’으로 ‘일체화’하여 미국의 독점적 지배질서를 확립하자는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다.⁹⁴ 미국의 가치관, 도덕관, 생활양식이 유일한 기준이므로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를 건설하기 위해 원거리 정보통신기술과 교류·협력의 확대를 통하여 미국식 가치관, 도덕관, 생활양식을 전파하려 한다는 것이다. 미국은 세계적으로 운영되는 국제 통신망과 정보망, 방송국과 수백개의 최신통신위성, 수십만 종의 출판물의 수출입을 장악·통제하는 과정을 통하여 미국식 문화와 생활양식을 대대적으로 유포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신문 잡지 등, 언론과 방송 매체, 인터넷, 경제교류 등이 미국식 민주주의의 우월성을 선전하는 주된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⁹⁵

북한은 ‘신보수주의’가 부시 행정부 정책의 사상적 기초를 형성하고 있다고 규정하면서 신보수주의에 입각한 미국의 자유와 민주주의 확산 전략을 비판하고 있다. 냉전이 종식되면서 ‘공산주의 위협’이라는 침략

93. 『로동신문』, 1998년 3월 22일; 1998년 10월 27일; 2001년 4월 19일.

94. 『로동신문』, 1998년 12월 23일.

95. 신분진, “미국식 《민주주의확산》 책동의 반동적 본질,” 『김일성종합대학학보(역사·법학)』, pp. 59~60; “미국식<민주주의>를 단호히 반대배격하자,” 『로동신문』 편집국 논설, 2006년 12월 13일; “미국의 《민주주의확산》 책동의 악랄성,” 『로동신문』, 2006년 1월 30일.



을 위한 명분이 소멸되면서 신보수주의는 미국 주도의 단극세계 수립을 주창하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의 ‘신보수주의’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전 세계를 미국이 지배하는 미국식 ‘자유세계’로 만들 것을 주장하는 반동적인 정치사조라고 비판하고 있다. 신보수주의는 미국식 생활양식이 세계에서 가장 ‘우월’하므로 ‘세계합중국’의 위상을 부여받아야 한다는 ‘세계주의’ 관념이 바탕에 깔려 있다는 것이다. 신보수주의자들은 미국식 가치관에 부합하는 것은 선이고 그렇지 않은 것은 악으로 규정하고 있다. 신보수주의자들은 ‘우리의 벗이 아니면 너는 우리의 적’이라는 부시 독트린을 주창하고 ‘악의 축’으로 규정하고 있다. 21세기에 들어 수행되고 있는 테러에 대한 전쟁은 미국식 ‘세계화’를 실현할 것을 주장하는 ‘신보수주의’의 정책의 연장이라는 것이다.⁹⁶

라. 북한 대상 확산전략에 대한 인식

북한은 부시 행정부 출범 이후 추진되고 있는 자유와 민주주의 확산 전략의 핵심 대상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부시 대통령은 북한체제에 대하여 ‘악의 축’, ‘폭정의 전초기지’라고 규정하면서 확산의 최우선적인 대상으로 설정하고 있다. 북한에서도 미국이 자유와 민주주의라는 명분 아래 간섭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가 북한 자신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첫째, 미국이 자신들의 이익에 반하는 국가들에 대해 ‘악의 축’, ‘폭정의 전초기지’로 규정하면서 외교적 고립, 원조 등을 활용하여 자신들의 정치방식과 정치체제로 변화시키려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미국이 민주주의 확산을 명분으로 북한의 체제전복, 제도변경을 목적으로 북한인권법을 채택하고 북한인권 담당특사까지 임명하였

I
II
III
IV
V
VI

⁹⁶ “미국의 <신보수주의>는 파시즘이다.” 『로동신문』, 2004년 3월 23일.

다는 것이다. 이러한 입법화를 통해 인권공세와 병행하여 내부를 와해시키려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⁹⁷

북한은 미국이 민주주의를 확산하는 구체적 방식으로 재정을 지원하여 반정부세력을 선동하는 것에 가장 경계를 하고 있다. 구체적인 사례로 미국이 발트해 연안 국가들과 중앙아시아국가들을 비롯하여 세계 여러 지역의 반정부 세력에게 막대한 자금을 지원하면서 폭동, 내부교란, 정부전복을 조장하여 왔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이러한 전략을 실행에 옮기기 위하여 미국이 구체적으로 법률을 제정하려는 시도에 대하여 극도로 경계하고 있다.

2005년 3월 3일 상원 외교위원회(S. 516)와 하원 국제관계위원회(H.R. 1133)에 민주주의증진법이 동시에 상정되었다. 법안 제정의 토대가 되는 ‘조사결과’(Findings) 부분에서 민주주의, 자유 기본적 인권이 결여된 국가는 미국의 안보에 위협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리고 비민주적 국가와 국제평화와 안보 간에 강력한 상관관계가 존재한다는 점을 적시하고 있다. 법안은 원래 ‘독재종식(End Dictatorship) 및 민주주의 증진법’으로 추진되었으나 최종 검토 과정에서 ‘독재종식’은 삭제되었다. 특히 동 초안에는 북한을 포함하여 “미국이 2025년까지 20년 내에 전 세계의 45개 독재국가를 민주국가로 바꾸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민주주의 증진법에서 구체적인 대상 국가는 삭제되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전문에서 미국대외정책의 기본요소로서 외국에서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증진하는 것, 외국에서 기본적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천명하고 있다. 이러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관련기구를 설립하는 등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전

⁹⁷ 신분진, “미국식 《민주주의확산》 책동의 반동적 본질,” 『김일성종합대학학보(력사·법학)』, p. 60.

세계 국가들을 완전 민주적, 부분 민주적, 비민주적 국가 등 3개 군으로 구분하도록 명시했다. 부분 민주국가, 비민주국가군으로 구분된 국가에 대해 ‘특별행동계획’(specific action plan)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북한은 민주주의증진법이 상정되자 “법안은 비민주주의적인 국가들에 대해 수출금지와 당국자들의 미국 입국 금지 등의 제재조치를 취하며 동시에 미 행정부가 이 나라들의 반대파 세력들을 적극 지원할 것을 명기함으로써 다른 나라들에 대한 비열한 내정간섭과 정권전복 책동을 공공연히 합리화하고 있다”고 강력하게 비판하였다.⁹⁸ 이와 같이 북한은 2005년 3월 상하 양원에 ‘민주주의 증진법’에 상정되자 북한 내 반대 세력의 지원과 육성을 통한 민주주의 확산전략을 가장 경계하고 있다. 이상에서 보듯이 미국은 비민주적인 국가가 자신의 안보에 위협적인 요소로 설정하고 민주주의를 확산하려는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반면, 북한은 이러한 민주주의 확산 전략을 통해 제도를 전복시키려 한다고 안보적 관점에서 인식하고 있다. ‘안보의 위협’이라는 점에서는 공통적이나 그 위협의 요인에 대해서는 정반대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⁹⁸ 『중앙방송』, 2005년 3월 7일.

V

북한의 대응과
대북인권정책 추진방향



1. 북한의 대응

민주주의에 대한 북한의 대응은 두 가지 차원에서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민주주의의 개념과 구체적 구성요소에 대한 인식의 문제이다. 북한은 기본적으로 계급적 시각과 집단주의 원칙을 기초로 프롤레타리아 일당 독재 체제를 유지하여 오고 있다. 나아가 다른 사회주의 국가와 달리 유일사상을 토대로 유일지도체제라는 강력한 일인지배체제를 형성하여 오고 있다. 따라서 다당제와 선거제도 등 절차적 민주주의를 핵심요소를 하는 자유민주주의를 본질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구조를 지니고 있다.

둘째, ‘문제’로서 미국의 민주주의 확산 전략에 대해 북한은 체제전복, 정권교체로 인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체제안보의 관점에서 미국을 비롯한 서구국가들의 다당제와 절차적 민주주의 수용 요구에 대해 북한은 배타적 정책을 확고하게 견지하여 오고 있다. 색깔혁명, 재정지원을 통한 반체제세력 지원 방식으로 정권을 교체하려 한다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자유권을 제약하지 않을 수 없는 구조를 지니고 있다. 특히 극단적인 폐쇄체제를 통해 정권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보의 유통과 언론·출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국제적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어렵다.

이상에서 보듯이 민주주의에 대해서는 도널리의 기준에 따르면 ‘급진적 상대주의’를 확고하게 견지하고 있기 때문에 거부로 일관하고 있다. 이러한 입장은 북한이 전체주의적 일인지배체제를 유지하는 한 앞으로도 지속될 것은 분명하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민주주의는 인권과 달리 유엔을 중심으로 국제적 규범과 제도화가 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북한의 경우 민주주의와 인권의 상관관계에 대해 사회주의적 민주주의

I
II
III
IV
V
VI

론에 따라 인권을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두 가지 점을 고려하여 인권문제를 중심으로 북한의 대응을 살펴보고자 한다.

민주주의와 마찬가지로 인권에 대한 북한의 대응은 두 가지 차원에서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인권의 개념과 내용의 차원으로 북한은 계급적 시각과 집단주의 원칙을 중심으로 인권을 인식하고 있다. 세계적인 차원에서 인권의 보편성과 상대주의 논쟁이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대응은 문화상대주의 시각의 연장선상에서 정립되고 있다. 그런데 인권은 다당제, 선거에 의한 정권의 교체 등 본질적으로 체제의 변화와 직결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인권은 보편적 가치라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있다. 이러한 보편성은 국제규범과 유엔의 제도화를 통하여 발현되어 오고 있다. 이로 인해 북한이 민주주의처럼 전면적으로 인권을 배격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북한은 양대 국제인권규약인 A, B규약과 아동권리협약, 여성차별철폐협약에 가입하고 있다. 인권의 보편성을 유엔이 중심이 되어 법 규화된 국제인권규약에 국제적으로 공인된 인권기준을 수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강한 상대주의 시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국제사회의 인권 개선요구에 따라 발생하는 인권 '문제'의 차원으로 북한에서는 체제안보 차원에서 '인권공세'로 규정하여 반발하고 있다. 인권공세의 핵심은 자유민주주의와의 연계 속에서 '자유권'에 집중되어 있다. 이러한 자유권의 실질적 보장을 수용할 경우 체제(정권) 자체가 와해될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권을 보장하는 것이 국가의 관할권이라고 규정하고 가장 중요한 국제정치 원칙인 주권의 원칙과 내정불간섭의 원칙에 따라 대응하고 있다. 그런데 이라크 침략 등을 근거로 자유, 민주주의, 인권을 명분으로 미국이 침략전쟁을 감행한다고 규정하면서 국권은 곧 인권이라는 극단적인 안보논리로

연결되고 있다.

북한의 인권정책은 인권적 관점이라기보다는 외부에 문제제기에 대한 ‘대응’의 측면이 강하다. 기본적으로 체제안보 관점과 직결된 인권개념과 인권공세 인식으로 인권 해결의 관점이 아닌 ‘인권공세’ 대응의 관점에서 정책이 결정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인권에 대한 대응은 인권에 대한 인식, 북한체제, 외부위협, 현실적 필요성이 구조적으로 결합되어 결정되고 있다. 1990년대 사회주의 국가들의 잇따른 체제전환 현상에 대응하는 체제유지, 2000년대 테러에 대한 전쟁, 색깔혁명 등에 의한 친미적인 정권교체 등에 따른 체제 위기감으로 인해 기본적으로 체제 유지 차원에서 정책 조정 수위가 결정되고 있다. 그렇지만 경제회생과 국제적 고립 탈피라는 현실적 필요성도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인권정책은 체제안보적 관점과 현실적 필요의 2가지 기준에 대한 비중에 따라 내용과 조정의 폭이 결정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체제유지 관점에서 인식되는 ‘인권공세’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거부하는 정책적 입장을 확고하게 견지하고 있다. 그 예로 유엔인권소위원회, 유엔인권위원회,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북한인권 결의안에 대해서는 북한체제를 압박하려는 불순한 정치적 동기라고 규정하여 전면적으로 거부하고 있다. 1997년 유엔인권소위원회에서 최초로 북한인권 결의안이 채택되었을 때 B규약 탈퇴 선언이라는 극단적인 정책을 취하였다. 그리고 2004년 유엔인권위원회에서 채택된 북한인권 결의안에 따라 임명된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방북 요구를 지속적으로 거부하여 오고 있다. 뿐만 아니라 북한인권 결의안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과의 인권분야에서의 대화와 기술협력(technical cooperation)마저 수용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새롭게 창설된 유엔인권이사회의 운영규정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북한

I
II
III
IV
V
VI

은 개별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결의안 채택 제도와 특별보고관 임명 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또한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북한의 체제를 악의 축, 폭정의 전초기지로 규정하면서 북한인권법을 채택하는 미국의 인권제기에 대해 체제전복 의도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권 분야에서 북한과 미국 사이의 협력관계는 전혀 형성되지 않고 있다. 그런데 국제적 고립이 심화되는 것을 우려하여 유럽연합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과정에서 인권을 중시하는 외교정책을 추진하는 유럽연합의 요구를 수용하여 인권대화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인권대화를 수용하는 정책을 추진하였던 것은 체제안보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수교라는 현실적 필요를 충족할 수 있었기 때문에 조정의 폭이 결정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런데 유럽연합이 유엔인권위원회에서 북한인권 결의안 상정을 주도하자 체제안보적 관점에서 인권대화를 거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재조정하고 있다.

인권결의안과 달리 북한은 유엔 인권레짐에서 현실적으로 체제안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국제적 고립을 탈피하는데 유리한 정책은 추진하여 오고 있다. 첫째, 북한이 당사자로 있는 국제인권규약에 규정된 조항에 따라 규약의 이행결과를 담은 국가보고서를 제출하여 왔다. 국가보고서를 통하여 인권 보장을 홍보하는 선전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국제사회의 인권압박을 완화시킬 수 있다는 현실적 판단에서 정책을 조정한 것이다.

<표 V-1> 국제인권규약에 따른 국가보고서 제출 및 심의 현황

구분	가입일자	국가보고서	위원회 심의	최종검토의견서 (concluding observations)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1981.9.14(비준)	최초보고서: 1984.4.2 2차 보고서: 2000.3.20	21차 회의: 1984.4.9. 12 72차 회의: 2001.7.19, 20, 26	A/39/40 CCPR/CO/72/PRK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1981.9.14(비준)	최초보고서: 1984.12.18, 1989.1.14 2차 보고서: 2002.4.12	1차회의: 1987.3.9 6차 회의: 1991.11.25 31차 회의: 2003.11.19, 20	E/C.12/1987/5 E/C.12/1991/4 E/C.12/1/Add.95
아동권리협약	1990.8.23(서명) 1990.9.21(비준)	최초보고서: 1996.2.13 2차 보고서: 2002.5.16	18차 회의: 1998.5.19, 5.6 36차 회의: 2004.5.1	CRC/C/15/Add.88 CRC/C/15/Add.239
여성차별철폐협약	2001.2.27(비준)	최초보고서: 2002.9.11	33차 회의: 2005.7.18	CEDAW/C/PRK/CO/1

둘째, 체제안보에 직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률을 정비하여 오고 있다. 특히 2004년과 2005년 연속으로 형법과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는 등 인권을 개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 관련 법률을 제정·개정하고, 2003년 장애자보호법을 새로 제정한 바 있다. 이러한 법률 개정은 체제안보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도 국제적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다는 현실적 필요성에 따라 정책을 조정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 I
- II
- III
- IV
- V
- VI

<표 V-2> 북한 인권관련 법제 제·개정 현황

구분	제정·개정 현황
형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50년 3월 3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으로 채택 - 1974년 12월 19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 1987년 2월 5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2호로 채택 - 1990년 12월 15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6호로 채택 - 1995년 3월 15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54호로 수정 보충 - 1999년 8월 11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953호로 수정 - 2004년 4월 29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432호로 수정 보충 - 2005년 4월 19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084호로 수정 보충
형사소송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50년 3월 3일 최고인민회의 제1기 제5차 회의에서 채택 - 1954년 6월 15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 1976년 1월 10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 1992년 1월 15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12호로 채택 - 1995년 4월 12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59호로 수정 보충 - 1996년 1월 19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67호로 수정 보충 - 1997년 9월 17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95호로 수정 보충 - 1999년 9월 2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996호로 수정 보충 - 2004년 5월 6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436호로 수정 보충 - 2005년 7월 26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225호로 수정 보충
재판소구성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76년 1월 10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19호로 채택 - 1998년 7월 1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122호로 수정 보충 - 1998년 11월 19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60호로 수정 보충
변호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3년 12월 23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43호로 채택
판결판정 집행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7년 1월 23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80호로 채택 - 1997년 9월 5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93호로 수정 - 1998년 11월 19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60호로 수정 보충
검찰감시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85년 9월 19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15호로 채택 - 1997년 1월 15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78호로 수정 보충 - 1998년 11월 19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60호로 수정 보충
형민사감정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8년 11월 26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84호로 채택
사회안전 단속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2년 12월 28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22호로 채택 - 1999년 3월 2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540호로 수정 보충
신소청원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8년 6월 17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120호로 채택 - 1999년 2월 26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483호로 수정 보충 - 2000년 7월 2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676호로 수정
사회주의 노동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78년 4월 18일 최고인민회의 법령 제2호로 채택 - 1986년 2월 20일 중앙인민위원회 정령 제2494호로 채택 - 1999년 6월 16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803-1호로 수정
장애자보호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3년 6월 18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835호로 채택

그런데 사회주의헌법에 규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체제안보에 직결되는 집회·결사의 자유를 구체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하위법률을 정비하고 있지는 않다. 체제안보와 직결된 정치적 권리에 대해서는 ‘개념의 수준’, ‘해석의 수준’에서 강한 상대주의적 시각을 견지하면서 정책으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체제안보에 직결되지 않는 형법상의 권리에 대해서는 ‘구체적 실천방도’의 수준에서 법률을 정비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2. 대북인권정책 추진방향

카르데나스는 국가가 인권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저지르는 요인으로 안보위협, 규범위반 친화 기제(pro-violation constituencies), 배제의 법칙(적대 혹은 위협세력의 배제·차별, rules of expection) 등의 세 가지를 들고 있다. 이러한 세 가지 요소의 상호 작용 하에서 위반에 따른 비용(costs of violation), 순응에 따른 인센티브(incentives for compliance)간의 전략적 계산이 국가행위, 즉 대응전략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⁹⁹ 이러한 카르데나스의 이론을 북한에 적용할 경우 3가지 차원의 인권유린 요소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북한의 인권 유린과 외부위협은 상관성이 있다는 점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북한주민의 인권을 유리하는 1차적 책임은 당연히 북한당국에 있다. 또한 유일지배체제라는 전체주의적 속성이 근본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렇지만 북한당국이 정전체제가 평화체제로 전환되지 않고 있는

⁹⁹- Sonia Cardenas, “Norm Collision: Explaining the Effects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Pressure on State Behavior,” *International Studies Review*, Vol. 6, No. 2 (June 2004), pp. 221~224.

상황에서 대내결속을 위한 명분으로 외부위협을 활용하여 통제기제를 통해 인권을 유린하여 왔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인권 개선 요구를 체제 전복을 위한 ‘인권공세’로 규정하면서 체제안보적 관점에서 대응하고 있다. 유일지배체제를 유지하면서 인권유린을 정당화하는 명분으로 활용하고 있는 외부위협은 핵심 구성요소의 하나로 인권개선 요구를 설정한다는 데 문제가 있다. 따라서 북한주민의 인권 개선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인권유린을 정당화하는 명분으로 삼고 있는 ‘외부의 위협’ 문제를 해소해 나갈 필요가 있다. 물론 북한의 핵개발로 촉발되었지만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형성을 통하여 북한이 안보위협을 활용하여 인권유린을 정당화하는 여지 자체를 해소해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이 활용하는 안보위협은 분단에 따른 군사적 위협과 인권 수용시 초래될 정권안보의 위협과 같은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인권유린을 위한 명분으로 활용되고 있는 정치·군사적 위협은 북·미관계 정상화, 평화협정의 체결 등 평화체제의 구축을 통해서 해소될 수 있다. 따라서 평화체제 형성이 북한주민의 인권을 개선하는 긍정적 여건을 조성한다는 점에서 인권적 관점에서 평화체제 형성에 접근해야 한다. 그런데 북·미관계가 정상화되면 인권을 명분으로 하는 외부위협 주장은 일부 약화되겠지만 여전히 본질적으로 소멸되지는 않을 것이다. 북한은 극단적으로 폐쇄적 속성을 가진 유일지배체제라는 전체주의적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체제 유지는 두 번째 요소인 규범위반 친화기제 유지, 세 번째 요소인 배제의 법칙과 연관되어 있다. 그런데 북한은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수준의 인권기준을 수용하게 될 경우 체제 자체가 유지되기 어렵다고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강한 상대주의 시각을 견지하면서 통제기제를 강화하고 계급

적 시각에 따른 차별정책을 지속해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계급적 시각과 집단주의 원칙을 확고하게 견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념의 수준’과 ‘해석의 수준’에서 북한의 인식과 정책 변화를 단시일 내에 끌어내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북한의 정책이 변화하기 위해서는 인식의 변화가 전제되어야 하므로 단계의 관점에서 인식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전략이 추진되어야 한다. 먼저, 단기적으로 ‘구체적 실천 방도의 수준’에서 북한의 정책변화는 강력하게 유도해나가야 한다. 둘째, 중기적으로 평화체제가 형성되면 집회·결사의 자유, 종교의 자유 등 ‘해석의 수준’에서 인식과 정책변화를 강력하게 요구해 나가야 한다. 셋째, 중장기적으로 북한의 개혁과 개방을 통해 시민사회를 형성함으로써 아래로부터 ‘개념 수준’에서 인식의 변화가 형성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야 한다. 헬싱키 프로세스에서 보듯이 헬싱키 협약의 인권부문이 구소련 및 동구 사회주의 내부의 인권여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고르바초프와 같은 지도자의 인식과 정책 변화가 수반되어야 실질적인 인권개선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북한 내 시민사회와 국제적 연대를 강화하고 개념의 수준에서 북한지도부의 인식 변화를 강력하게 설득하고 요구해나가야 한다.

물론 이러한 세 가지 차원의 접근은 단계별로 단절된 상태로 추진되어서는 안되며 병행해 나가야 한다. 본 보고서에서는 우선 ‘구체적 실천 방도 수준’에서 북한주민의 인권을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중단기적으로 북한주민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효과를 거두면서 북한이 체제위협을 명분으로 거부할 수 없는 방향으로 인권개선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일부 NGO의 주장대로 북한인권문제의 안보리 회부, 국제형사재판소 회부 등 북한체제와 최고지도자를 직접 겨

I
II
III
IV
V
VI

냥하는 것은 적절한 전략이라고 할 수 없다. 북한당국이 개방으로 나오는 것을 주저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북한주민의 인권개선에도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북한의 폐쇄적 성격과 시민사회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외부의 문제 제기 없이 북한당국과 주민 스스로 인권을 개선해나가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북한이 유엔회원국이고 4개 국제인권협약의 당사자라는 점에서 유엔인권기구를 통한 북한의 권력 감시와 자유권 감시활동은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첫째, 체제적 차원이 아닌 시급한 인권개선이 필요한 구체적 사안을 중심으로 접근함으로써 개선효과를 거두도록 해야 한다. 특히 정치범수용소, 공개처형 등 심각한 인권유린 행위를 중단하도록 촉구해야 한다. 북한당국은 정치범수용소와 공개처형에 대해서도 북한의 국제적 이미지를 손상시키려는 정치적 의도라고 반발하고 있다. 구체적인 증거를 수집하여 개선을 촉구하되, 북한 국내법에 따라 처벌이 되도록 개선을 요구해야 한다. 이와 같이 사안 중심으로 한 인권개선 정책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실태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그동안 국내적으로 지속적으로 필요성이 제기되어 온 북한인권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그리고 사안별 전문보고서 발간을 확대함으로써 구체적 사안 중심으로 개선을 요구하는 국제적 여론이 형성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나가야 한다.

둘째, 북한이 가입한 국제인권규약과 북한국내법을 기준으로 인권문제에 접근함으로써 북한의 반발을 최소화해야 한다. 형법 등 북한 국내법률을 위반하여 인권을 유린하는 구체적 사례를 중심으로 시정을 촉구할 경우 북한도 체제위협으로 반박하지 못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법률과 실천 사이의 괴리를 줄여나가기 위해 법률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촉구하고 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북한이 가입한 국제 인권규약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법률을 정비하도록 지속적으로 요구해야 한다. 끝으로 북한이 가입하지 않은 인종차별철폐협약과 고문방지협약에 가입하도록 촉구해야 한다.

셋째, 북한이 유엔회원국이고, 4대 국제인권규약에 가입한 당사자라는 점에서 유엔 인권레짐의 틀 속에서 북한인권문제는 적극적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 우리 정부는 2006년 유엔 총회에 북한인권 결의안이 상정되었을 때 최초로 찬성하였다. 앞으로 유엔 인권레짐 내에서 북한주민의 자유권 감시 활동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임해야 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NGO 차원에서도 북한 권력 감시 활동을 강화해나가야 한다.

넷째, 유엔과의 인권대화, 개별국가 양자 차원의 인권대화가 활성화 되도록 해야 한다. 앞으로 정부는 북한과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과의 인권분야 대화와 기술협력이 개시될 수 있도록 주도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또한 유럽연합과의 인권대화가 재개되도록 하고 북·미관계정상화 과정에서 북·미간 인권대화가 성사되도록 함으로써 개별국가 차원에서도 다양한 양자 인권대화의 틀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대북지원을 통한 북한의 생존권 보장이 실질적으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인도주의 원칙을 강화해나가야 한다. 앞으로 긴급구호에서 개발협력으로 대북지원의 전환이 본격화될 것이다. 북한과 개발협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제적인 원칙을 북한의 상황에 맞게 적용해나가야 한다. 국제사회에서는 빈곤감소를 중심으로 논의가 전개되는 가운데, ‘사회정치적 능력의 향상’, ‘인권을 누릴 권리론에 기반한 빈곤축소전략’ 등을 핵심 전략으로 삼고 있다. 이러한 전략에 입각하여 북한주민의 참여 확대 및 역량 형성, 평양중심을 벗어난 중소도시와 지방의

I
II
III
IV
V
VI

개방, good governance 형성 등이 구체적 목표로 설정되어야 한다. 특히 대규모 경제개발협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소홀하기 쉬운 사회개발 분야에 대해서도 관심을 확대해야 한다.

VI

결론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북한의 인식은 자유민주주의와의 비교 속에 대응이라는 형태로 정립되고 있다. 그리고 세계적 차원의 논쟁에 북한의 특수성이 결합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북한은 자본주의 사회의 부정적 측면과 비교하여 자신의 인권과 민주주의의 우월성을 부각시키는 방향으로 인식을 표출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북한은 사회주의 일반과 마찬가지로 계급적 시각과 집단주의 원칙을 기초로 민주주의와 인권을 인식하고 있다. 그렇지만 유일지배체제, 가부장적 요소가 결합되면서 ‘우리식 인권’, ‘우리식 사회주의적 민주주의’로 보다 배타적인 인식론으로 연결되고 있다.

우리식과 서방식이라는 배타적인 이분법적 사고는 국제사회의 인권 개선 요구와 민주주의 수용에 대한 북한의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북한도 사회주의 일반과 마찬가지로 주권 및 내정불간섭의 원칙, 문화상대주의 시각에서 대응하고 있다. 그런데 북한의 경우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국제사회의 인권문제 제기에 대하여 ‘인권공세’로 규정하고 체제안보적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 세계적 차원에서 전개되는 문화상대주의, 주권 대 인권 논쟁의 연장선상에서 대응하고 있지만 체제안보 논리로 더욱 강화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특히 체제안보적 관점에서 인권에 대한 북한의 인식은 주권의 원칙, 내정불간섭의 원칙을 넘어 국권의 수호논리로 연결되고 있다. 국제사회의 인권개선 요구에 대해 ‘인권공세’로 개념화하면서 ‘체제 조정’, ‘제도 전복’을 위한 수단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권이 수호되어야 인권이 보장되며 국권은 힘이 뒷받침되어야 수호되는데, 충대를 중시하는 선군정치가 인권을 보장하는 올바른 정치방식이라는 논리로 비약되고 있다.

이상의 북한의 논리는 첫째, 외부세계의 대응차원에서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인권 유린 현상을 은폐하고 정당화하는 명분으로 활용되

I
II
III
IV
V
VI

고 있다. 유일사상과 유일지도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내부통제, 즉 인권 유린을 정당화하는 명분으로 활용하고 있다. 둘째, 구체적으로 어떠한 정책을 통하여 인권이 보장될 수 있는 지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셋째, 문화상대주의 시각에서 우리식 ‘인권기준’이 최상이 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국제인권규약에 규정된 국제적으로 공인된 기준 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반영되고 정책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미국식, 서방식 인권기준이 절대적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국제인권규약에 부합하는 요소들조차 부인하는 오류를 범하게 된다.

이러한 북한의 부정적 인식은 민주주의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표출되고 있다. 테러에 대한 전쟁, 색깔혁명 등에서 보듯이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민주주의 확산 전략은 북한의 체제를 이완시키고 정권을 교체하려는 명분에 불과하다고 체제안보적 관점에서 인식하고 있다. 특히 다당제와 선거제도 등 절차적 민주주의의 전파가 정권을 교체하는 핵심전략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입법을 바탕으로 재정을 지원하여 반정부 세력에 대한 지원을 통해 정권을 교체하려는 전략에 대해 경계심을 갖고 있다. 민주주의와 인권의 상관성에서는 인덕정치가 인권을 보장하는 최상의 정치방식이라고 시혜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북한의 인권정책은 인권에 대한 인식, 북한체제, 외부위협, 현실적 필요성이 구조적으로 결합되어 결정되고 있다. 기본적으로 체제안보 관점과 직결된 인권개념과 인권공세 인식으로 인권 해결의 관점이 아닌 ‘인권공세’ 대응의 관점에서 정책이 결정되고 있다. 그렇지만 경제회생과 국제적 고립 탈피라는 현실적 필요성도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인권정책은 체제안보적 관점과 현실적 필요의 두가지 기준에 대한 비중 에 따라 내용과 조정의 폭이 결정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인권유린을

정당화하는 명분으로 삼고 있는 ‘외부의 위협’ 문제를 해소해나갈 필요가 있다. 북한이 안보위협을 활용하여 인권유린을 정당화하는 여지 자체를 해소해나가야 한다. 중단기적으로 북한주민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효과를 거두면서 북한이 체제위협을 명분으로 거부할 수 없는 방향으로 인권개선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I

II

III

IV

V

VI

참고문헌

1. 단행본

- 국가인권위원회 편. 『북한인권법제연구』.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2006.
- 김수암 외. 『북한인권백서 2007』. 서울: 통일연구원, 2007.
- 김일성. 『김일성저작집 1』.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79.
- _____. 『김일성저작집 2』.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79.
- _____. 『김일성저작집 27』.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4.
- _____. 『김일성저작집 32』.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6.
- 『대중정치용어사전』.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59.
- 리기섭. 『사회주의적 민주주의』.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7.
- 박종귀. 『중미인권분쟁』. 서울: 새로운 사람들, 2001.
- 서보혁. 『북한인권: 이론·실제·정책』. 서울: 한울아카데미, 2007.
- 잭 도널리 지음, 박정원 옮김. 『인권과 국제정치』. 서울: 오름, 2002.
- 정경섭. 『제국주의자들이 떠벌이는 <인권옹호>의 반동성』.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 『정치사전』.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3.
- 『조선말대사전 2』.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2.
- 『정치용어사전』.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0.
- 최성철 편. 『북한인권의 이해』. 서울: 북한인권개선운동본부, 1996.

2. 논문

- 김수암.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공론화와 북한의 대응전략.” 『통일정책 연구』. 서울: 통일연구원, 2005.
- _____. “문화상대주의, 주권원칙과 북한인권.” 서울대 국제문제연구소 엮음. 『세계정치 5』. 서울: 인간사랑, 2006.
- 김영수. “자본주의에 대한 환상은 사회주의를 좌절시키는 요인.” 『철학 연구』. 제1호, 1992.
- 김일성. “진보적민주주의에 대하여.” 『김일성저작집 1』.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79.
- _____. “미국 《워싱턴타임스》 기자단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김일성저작집 44』.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6.
- 김정일. “인민대중중심의 우리식사회주의는 필승불패이다.” 『김정일선집 11』.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7.
- _____. “사회주의건설의 역사적교훈과 우리 당의 총로선.” 『김정일선집 12』.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7.
- _____. “사회주의는 과학이다.” 『김정일선집 13』.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8.
- _____. “사회주의에 대한 훼방은 허용될 수 없다.” 『김정일선집 13』.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8.
- _____.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할데 대하여: 1997년 6월 19일.” 『김정일선집 14』.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00.
- 김중섭. “21세기의 민주주의와 인권 사상.” 『민주주의와 인권』. 제1권 2호, 2001.
- 김창렬. “제국주의자들이 떠벌이고 있는 <인권옹호>와 그 반동적본

- 질.” 『근로자』. 2월호, 1990.
- 김희성. “공화국선거제도의 혁명적 본질.” 『김일성종합대학학보』. 제47권 1호, 2001.
- 량봉선. “아프리카나들에서의 《다당자》의 도입과 그 후과.” 『김일성종합대학학보(역사·법학)』. 제50권 제1호, 2004.
- 로승일. “미국식 《민주주의》는 반인민적 《민주주의》.” 『김일성종합대학학보(철학·경제학)』. 제52권 2호, 2006.
- 리기순. “제국주의자들이 부르짖는 <자유>, <인권>의 반인민성.” 『국제생활』. 제10호, 1990.
- 박병수. “민주주의 이행과 인권: 아르헨티나와 칠레.” 『라틴아메리카연구』. 제15권 2호, 2002.
- 박인혁. “<인권옹호>의 간판밑에 인권을 유린하는 미제.” 『국제생활』. 제3호, 1990.
- 박희철. “현대부르조이국가법의 반동적 특질.” 『김일성종합대학학보(역사·법학)』. 제50권 제1호, 2004.
- 송지영. “북한의 ‘우리식 인권’ 외교연구.”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 신분진. “미국식 《민주주의확산》 책동의 반동적 본질.” 『김일성종합대학학보(역사·법학)』. 제52권 3호, 2006.
- 앤드류 네이탄. “중국의 인권문제, 어떻게 볼 것인가.” 한상진 편. 『현대사회와 인권』. 서울: 나남출판, 1998.
- 이상수. “민주주의와 인권의 상생적 발전을 위하여.” 『민주법학』. 제30호, 2006.
- 이원웅. “동아시아의 민주화와 인권.” 이상우 편저. 『21세기 동아시아와 한국 1: 부상하는 새 지역질서』. 서울: 오름, 1998.

- 정성국. “부르쥬아인권리론의 반동적본질.” 『철학연구』. 제2호, 1995.
- 조성근. “인권의 본질.” 『철학연구』. 제3호, 1998.
- 한하런. “자본주의에 대한 환상의 반동성과 그 해독성.” 『철학연구』. 제 1호, 2001.
- Falk, Richard. “Cultural Foundations for the International Protection of Human Rights.” Abdullahi Ahmed An-Naim ed., *Human Rights in Cross-Cultural Perspectives: A Quest for Consensus*. Philadelphia: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1991.
- Langlois, Anthony J. “Human Rights without Democracy? A Critique of the Separationist Thesis.” *Human Rights Quarterly*. Vol. 25, No. 4, November 2003.
- Perry, Michael J. “Are Human Rights Universal? The Relativist Challenge and Related Matters.” *Human Rights Quarterly*. Vol. 19, No. 3, August 1997.
- Tilly, John J. “Cultural Relativism.” *Human Rights Quarterly*. Vol. 22, No. 2, May 2000.
- Cardenas, Sonia. “Norm Collision: Explaining the Effects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Pressure on State Behavior.” *International Studies Review*. Vol. 6, No. 2, June 2004.

3. 기타자료

『로동신문』.

『조선중앙통신』.

『중앙방송』.

Statement by The Delegation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to the Fifty-Sixth Session of the
Commission on Human Rights. 29 March 2000.

U.S. Department of State. Country Reports on Human Rights 2003.

<www.ohchr.org>.

<www.hrw.org>.

연구총서

2005-01	Toward Greater Transparency in Non-Nuclear Policy : A Case of South Korea	전성훈	저	7,000원
2005-02	유럽연합(EU)의 대북 인권정책과 북한의 대응	최의철	저	8,000원
2005-03	북한의 노동인력 개발체계: 형성과 변화	조정아	저	7,000원
2005-04	Energy Cooperation with North Korea : Issues and Suggestions	김규륜	저	4,500원
2005-05	일본의 보수우경화와 국가안보전략	김영춘	저	5,000원
2005-06	북한주민의 국경이동 실태: 변화와 전망	이금순	저	6,500원
2005-07	북한 청소년의 교육권 실태: 지속과 변화	임순희	저	5,500원
2005-08	미·중 패권경쟁과 우리의 대응전략	황병덕	저	9,000원
2005-09	북한 광물자원 개발을 위한 남북 협력 방안 연구	김영운	저	7,000원
2005-10	청소년의 통일문제 관심 제고 방안	손기용	저	5,500원
2005-11	러시아 탈 사회주의의 체제전환과 사회갈등	조한범	저	6,000원
2005-12	동북아협력의 인프라 실태: 국가 및 지역차원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5-13	북한의 형사법제상 형사처리절차와 적용실태	김수암	저	7,000원
2005-14	6·15 공동선언 이후 북한의 대남협상 행태: 지속과 변화	허문영	저	7,500원
2005-15	북한체제의 분야별 실태평가와 변화전망 : 중국의 초기 개혁개방과정과의 비교분석	이교덕 외	공저	10,000원
2005-16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통일전망	조민	저	6,000원
2005-17	북한의 경제개혁과 이행	이석	저	7,000원
2005-18	북한의 산업구조 연구	최수영	저	5,500원
2005-19	탈냉전시대 전환기의 일본의 국내정치와 대외전략	배정호	저	6,500원
2005-20	부시행정부의 대북 정책 추진 현황과 전망	김국신	저	5,000원
2005-21	미국 외교정책에서의 정책연구기관(Think Tanks)의 역할과 한반도 문제	박영호	저	8,500원
2005-22	2005년도 통일문제 국민여론조사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5-23	미국과 중국의 대북 정책 및 한반도 구상과 한국의 정책공간	박형중	저	5,000원
2006-01	Cooperative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전성훈	저	10,000원
2006-02	한반도 경제통합 모형의 이론적 모색	임강택	저	7,000원
2006-03	7·1조치 이후 북한의 농업개혁과 과제	최수영	저	5,000원
2006-04	북한경제의 대외의존성과 한국경제의 영향력	이석	저	8,000원
2006-05	동북아 경제·안보 협력의 연계: 4대 분야 협력체 형성 중심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6-06	북한체제의 내구력 평가	전현준 외	공저	10,000원
2006-07	북한 경제개혁의 실태와 전망에 관한 연구 -개혁의 부작용을 통해 본 북한 체제전환의 성공과제-	김영운	저	10,000원
2006-08	남북한 공유하천 교류협력 방안	손기웅	저	6,000원
2006-09	북한의 당·군·민 관계와 체제 안정성 평가	정영태	저	7,500원
2006-10	동북아 정세변화와 한국의 동북아 균형자 역할 연구	황병덕	저	8,500원
2006-11	김일성 항일무장투쟁의 신화화 연구	서재진	저	10,000원
2006-12	평화통일의 기본방향과 추진전략	조민	저	6,500원
2006-13	중국의 대북한 정책: 지속과 변화	최춘흠	저	5,000원
2006-14	한·미 안보관계의 변화와 북·미관계의 전망	박영호	저	7,000원
2006-15	동북아지역의 갈등·협력과 한반도 평화구축을 위한 대외전략	배정호 외	공저	10,000원
2006-16	북한 새 세대의 가치관 변화와 전망	임순희	저	8,000원
2006-17	개혁·개방과정에서 인권의제: 이론과 실제	이금순, 김수암	저	10,000원
2006-18	경제난 이후 북한 문학에 나타난 주민생활 변화	조정아	저	6,000원
2006-19	남남갈등해소방안 연구	조한범	저	5,000원
2007-01	남북한 재외동포정책과 통일과정에서 재외동포의 역할	최진욱	저	6,500원
2007-02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북한의 인식과 대응	김수암	저	6,000원

학술회의총서

2005-01	북한 경제의 변화와 국제협력			8,000원
2005-02	6·15남북공동선언과 한반도 평화·번영: 평가와 전망			10,000원
2005-03	Infrastructure of Regional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 Current Status and Tasks			10,000원
2005-04	Implementing the Six-Party Joint Statement and the Korean Peninsula			10,000원
2005-05	북한 광물자원 개발 전망과 정책방안			10,000원
2006-01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전략			10,000원
2006-02	한반도 평화포럼: 구상과 이행			9,500원
2006-03	동북아구상과 남북관계 발전전략			10,000원
2006-04	Political Economy of the Northeast Asian Regionalism : Linkages between Economic and Security Cooperation			9,500원
2006-05	The North Korean Nuclear Test and The Future of Northeast As			7,000원
2007-01	2·13 합의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8,500원
2007-02	6·15 정상회담과 한반도 평화체제			10,000원

협동연구총서

2005-01-01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유럽연합의 정책 사례	김명섭 외	공저	9,500원
2005-01-02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한·중·일 대중문화 교류의 현황 및 증진 방안 연구	문옥표 외	공저	10,000원

2005-01-03 동북아 문화공동체의 동아시아 지역 확대를 위한 동남아시아 정치 사회 문화 인프라 연구	서중석 외	공저	9,000원
2005-01-04 동북아 평화문화 형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방안	전성훈 외	공저	10,000원
2005-01-05 동북아 한민족 공동체 형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방안	배정호 외	공저	10,000원
2005-01-06 동북아 지역인권체제(포럼) 구성 추진	최의철 외	공저	10,000원
2005-01-07 동북아공동체의 정책결정기구 구축에 관한 연구	윤종설 외	공저	10,000원
2005-01-08 동북아 국가의 인적자원개발 제도 및 인프라 분석과 공동체 형성 방향 연구	강일규 외	공저	10,000원
2005-01-09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법적지원방안 연구(II)	전재경 외	공저	10,000원
2005-01-10 변화하는 동북아 시대의 체계적인 국경관리시스템 구축에 관한 연구	장준오 외	공저	8,000원
2005-01-11 동북아 여성문화유산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연구	김이선 외	공저	10,000원
2005-01-12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청소년교류 인프라 구축 연구	오해섭 외	공저	9,000원
2005-01-13 동북아시아 3국 학생 및 교원의 상호이해에 관한 의식조사 연구	한만길 외	공저	10,000원
2005-08-01 남북한 통합과 통일인프라 확장방안			10,000원
2005-08-02 남북한 통합을 위한 바람직한 통일정책 거버넌스 구축방안	김국신 외	공저	10,000원
2005-08-03 통일관련 국민적 합의를 위한 종합적 시스템 구축방안 : 제도혁신과 가치합의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5-08-04 남북한 통합을 위한 법제도 인프라 확충방안	이철수 외	공저	10,000원
2005-08-05 신패러다임 통일교육 구현방안	박광기 외	공저	10,000원
2005-08-06 남북한 경제통합의 인프라 확장방안	양문수 외	공저	10,000원
2005-08-07 북한이탈주민 사회적응 프로그램 연구	이금순 외	공저	10,000원
2005-08-08 종합결과보고서: 남북한 통합과 통일인프라 확장방안	김영춘 외	공저	10,000원
2005-09-01 동북아 NGO 백서	전봉근 외	공저	10,000원
2005-09-02 동북아 NGO 연구총서	조한범 외	공저	10,000원
2006-04-01 2020 선진 한국의 국가전략 총괄편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6-04-02 2020 선진 한국의 국가전략(Ⅰ): 안보전략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6-04-03 2020 선진 한국의 국가전략(Ⅱ): 경제전략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6-11-01 한반도 평화·변영 거버넌스의 실태조사	황병덕 외	공저	10,000원
2006-11-02 한반도 평화·변영 거버넌스의 분야별 현황과 과제 원			10,000
2006-11-03 한반도 평화·변영 거버넌스의 실태조사(상)	황병덕 외	공저	10,000원
2006-11-04 한반도 평화·변영 거버넌스의 실태조사(중)	황병덕 외	공저	10,000원
2006-11-05 한반도 평화·변영 거버넌스의 실태조사(하)	황병덕 외	공저	10,000원
2006-12-01 동북아 지역내 NGO 교류협력 활성화 및 인프라 구축방안(총괄편)	황병덕 외	공저	10,000원
2006-12-02 동북아 지역내 NGO 교류협력 활성화 및 인프라 구축방안	황병덕 외	공저	10,000원

논총

통일정책연구, 제14권 1호 (2005)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4권 2호 (2005)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5권 1호 (2006)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5권 2호 (2006)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6권 1호 (2007)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4, No. 1 (2005)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4, No. 2 (2005)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5, No. 1 (2006)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5, No. 2 (2006)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6, No. 1 (2007)	10,000원

북한인권백서

북한인권백서 2005	이금순 외 공저	10,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5</i>	이금순 외 공저	10,000원
북한인권백서 2006	임순희 외 공저	10,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6</i>	임순희 외 공저	10,000원
북한인권백서 2007	김수암 외 공저	10,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7</i>	김수암 외 공저	10,000원

독일통일백서

독일통일백서 2005	8,500원
-------------	--------

연례정세보고서

2005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05~2006	6,000원
2006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06~2007	6,000원

통일정세분석

비매품

2005-01 2005년 북한의 신년 「공동사설」 분석 및 정책 전망	
	이교덕, 서재진, 정영태, 최진욱, 박형중

2005-02	북한의 경제개혁 동향	김영윤, 최수영
2005-03	북한의 『핵보유』 선언 배경과 향후 입장 전망	정영태
2005-04	북한의 ‘핵무기 보유’ 선언 이후 주변 4국의 반응과 향후 정책 전망	박영호, 김영춘, 여인곤, 전병곤
2005-05	북한인권 관련 미 국무부 보고서 분석 및 정책전망	최의철, 김수암
2005-06	중국 10기전인대 제3차회의 결과 분석	전병곤
2005-07	일본의 보수우경화 동향분석	김영춘
2005-08	농업분야 대북 협력 방안	김영윤, 최수영
2005-09	2004년 북한 영양실태조사결과 보고서 분석	이금순, 임순희
2005-10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1기 제3차 회의 결과 분석	박형중, 최진욱
2005-11	북한 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동향 : 제61차 유엔인권위원회의 결의안 채택을 중심으로	최의철, 임순희
2005-12	최근 중·일관계와 갈등요인 분석	배정호
2005-13	북한인권국제대회 동향과 향후 전망	김수암
2005-14	북한 주권국가 인정문제의 국제법적 조망: 동·서독 사례와 향후 통일정책 과제	황병덕
2005-15	동서독간 정치범 석방거래(Freikauf)	손기웅
2005-16	일본 총선 결과 분석	김영춘
2005-17	평화비용의 의미와 실익	김영윤, 이 석, 손기웅, 조 민, 서재진, 최수영
2005-18	미·일동맹의 강화와 주일미군의 재편	배정호
2005-19	주변4국과의 연례 정상회담 결과분석	여인곤, 박영호, 배정호, 최춘흠
2005-20	APEC 정상회의의 의의와 한국의 역할	김규륜
2006-01	2006년 북한 신년 공동사실 분석	허문영, 서재진, 임강택, 전현준, 정영태, 최진욱
2006-02	김정일 국방위원장 방중 결산과 향후 한반도 정세 전망	전현준, 김영윤
2006-03	2005 국무부 연례각국인권보고서(북한부분) 분석	김수암, 이금순
2006-04	북·중관계 강화의 영향과 우리의 대응책	박종철, 김국신, 최수영, 허문영, 전병곤
2006-05	중·러 정상회담 결과분석	여인곤
2006-06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1기 4차 회의 결과분석	서재진, 김영윤
2006-07	주일미군 재편의 의미와 시사점	김국신, 배정호
2006-08	북한 『7·1경제관리개선조치』 4년의 평가와 전망	김영윤
2006-09	한·미 정상회담 결과분석	김국신, 박영호
2006-10	아베 정권의 출범과 대한민국도 정책 전망	배정호
2006-11	북한의 핵실험과 국제사회의 대응	김국신, 박영호, 배정호, 여인곤, 최춘흠
2006-12	미국 중간선거 결과분석	김국신, 박영호
2006-13	APEC 정상회의 결과분석	김규륜
2007-01	2007년 북한 신년 공동사실 분석	허문영, 김영윤, 박영호, 서재진, 전현준, 정영태
2007-02	2·13 북핵 합의이후 북한정세와 남북관계 전망	여인곤, 이금순, 정영태, 조한범, 최수영
2007-03	2006 미 국무부 연례각국인권보고서(북한부분) 분석	김수암, 이금순
2007-04	‘2·13합의’ 전후의 북한동향	이교덕, 임순희, 정영태, 최수영
2007-05	부시 행정부의 북핵정책 변화 분석	전성훈
2007-06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1기 제5차 회의 평가	최수영
2007-07	7·1조치 이후 5년, 북한경제의 변화와 과제	최수영
2007-08	상반기(07년 1월~6월) 북한의 대내외 정세 분석	정영태, 이교덕, 임순희, 최수영

2007-09	제6차 6자회담 수석대표회의 결과분석	김국신, 여인곤
2007-10	7·29 일본 참의원 선거 결과 분석	배정호
2007-11	북한의 「전국 당세포비서 대회」 개최 배경과 전망	정영태
2007-12	후쿠다 정권의 특징과 대외 및 대북전략	배정호

KINU정책연구시리즈

비매품

2005-01	북핵보유선언: 향후 정세전망과 우리의 정책방향	허문영
2005-02	북핵문제와 남북대화: 현안과 대책 이기동, 서보혁, 김용현, 이정철, 정영철, 전병곤, 곽진오	
2005-03	6·15 남북공동선언 재조명: 이론과 실제	홍용표, 조한범
2005-04	광복 60년과 한반도: 한미관계, 남북관계 그리고 북핵문제	김근식
2005-05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의 로드맵: 「6자회담 공동성명」 이후의 과제	조성렬
2005-06	제4차 6자회담 합의 이행구도	전현준, 박영호, 최진욱, 이교덕, 조한범, 박종철
2006-01	남북한 관광사업 활성화 방안	김영운
2006-02	2006년 QDR의 특징 분석과 한반도안보에 주는 시사점	박영호
2006-03	북한 개발협력을 위한 주요 쟁점과 정책 과제	임을출
2006-04	아시아 지역협력의 발전추세와 한국의 정책방향	김규륜
2006-05	6·15 남북공동선언 이후 북한의 대남정책과 우리의 정책방향	전현준
2006-06	국내외 북한인권 동향 평가와 인권개선 로드맵	서보혁
2006-07	북한군 최고사령관 위상 연구	고재홍
2006-08	평화를 통한 국가 이미지 제고와 통일과정에서의 활용 방안	이현근
2006-09	김정일 정권의 정세인식: '선군' 담론 분석을 중심으로	전미영
2007-01	북핵 '2·13합의' 와 평화적인 핵폐기 사례 분석	전성훈
2007-02	2차 남북정상회담의 의의와 전망	조한범
2007-03	국군포로·납북자 문제 해결방안	김수암, 이금순, 최진욱, 서은성
2007-04	한미동맹 그리고 북한과 동북아 2001~2007년간의 회고와 한국의 정책 대안	박형중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비매품

-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1권 1호(2006)
-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1권 2호(2006)
-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2권 1호(2007)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비매품

- 제1호 한반도 평화체제: 자료와 해제 허문영, 김수암, 여인곤, 정영태, 조 민, 조정아

- 2005-01 Strategies for Development of a North Korean Special Economic Zone
through Attracting Foreign Investment Kang-Taeg Lim & Sung-Hoon Lim
- 2005-02 The Food Crisis and the Changing Roles and
Attitudes of North Korean Women Lim Soon Hee
- 2005-03 Evaluation of South-North Economic Cooperation and Task for Success Young-Yoon Kim
- 2005-04 North Korea's Market Economy Society from Below Jae Jean Suh
- 2005-05 Continuities and Changes in the Power Structure and the Role of Party
Organizations under the Kim Jong-il's Reign Hyeong-Jung Park and Kyo-Duk Lee
- 2005-06 The DPRK Famine of 1994-2000: Existence and Impact Suk Lee
- 2006-01 The North Korean Penal Code, Criminal Procedures,
and their Actual Applications Kim Soo-Am
- 2006-02 North Korea's Negotiation Behavior toward South Korea
: Continuities and Changes in the Post Inter-Korean Summit Era
Huh, Moon-Young
- 2006-03 The Establishment of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Outlook for Unification Cho, Min
- 2006-04 A Study on the structure of industry in North Korea Choi, soo-young
- 2006-05 The Border-crossing North Koreans: Current Situations and
Future Prospects Keumsoon Lee
- 2006-06 North Korea's Human Resource Development System Cho, Jeong-Ah
- 2007-01 Value Changes of the North Korean New Generation and Prospects Lim, Soon-Hee
- 2007-02 North Korea's Civil-Military-Party Relations and Regime Stability Jeung, Young-Tai
- 2007-03 An Assessment of the North Korean System's Durability
Chon, Hyun-Joon, Huh, Moon-Young, Kim, Philo, Bae, Chin-Soo
- 2007-04 A Study on the Reality and Prospect of Economic Reform in North Korea
: Tasks for Successful Transformation of the North Korean System Kim, Young-Yoon
- 2007-05 North Korea's Agricultural Reforms and Challenges in the wake of the
July 1 Measures Choi, Soo Young
- 2007-06 The Changes of Everyday Life in North Korea in the Aftermath
of their Economic Difficulties Cho, Jeong-Ah

■ ■ 통일연구원 定期會員 가입 안내

통일연구원은 통일문제가 보다 현실적인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그동안 제한적으로 유관기관과 전문가들에게만 배포해오던 각종 연구결과물들을 보다 폭 넓게 개방하여 전국의 대형서점에서 개별구입하거나 본원의 定期會員에 가입하여 구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원의 간행물 분량이 많아 일일이 서점에서 구입하기에는 번거로움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定期會員制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정기회원에게는 본원의 모든 간행물(연구총서, 국문논총, 영문저널, 학술회의 총서, 판매되지 않는 수시 『정세분석보고서』 등)을 직접 우편으로 우송해드리는 것은 물론 학술회의 초청 등 회원의 권리를 부여하오니 많은 이용을 바랍니다.

1. 정기회원의 구분

- 1) 일반회원: 학계나 사회기관에서의 연구종사자
- 2) 학생회원: 대학 및 대학원생
- 3) 기관회원: 학술 및 연구단체 또는 도서관 등의 자료실

2. 회원가입 및 재가입

- 1) 가입방법: ① 회원가입신청서를 기재하여 회비를 납부하신 入金證과 함께 본 연구원으로 Fax 또는 우편으로 보내주심으로써 정기회원 자격이 취득됩니다.
② 본원 홈페이지(<http://www.kinu.or.kr>)에서 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회비를 납부하신 입금증을 Fax 또는 우편으로 보내주심으로써 정기회원 자격을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 2) 연 회 비: 회원자격은 가입한 날로부터 1년간입니다
(기관회원 20만원, 일반회원 10만원, 학생회원 7만원)
- 3) 납부방법: 신한은행 온라인 140-002-389681(예금주: 통일연구원)
- 4) 재 가 입: 회원자격 유효기간 만료 1개월전 회비를 재납부하면 됩니다.(재가입 안내장을 발송)

3. 정기회원의 혜택

- 1) 본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 및 국내학술회의 등 각종 연구행사에 초청됩니다.
- 2) 본 연구원이 발행하는 학술지 『통일정책연구』와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를 포함하여 그 해에 발행되는 단행본 연구총서(연평균 30-35권), 학술회의 총서(연평균 5-6권), 정세분석보고서(연평균 5-10권) 등의 간행물이 무료 우송됩니다.
- 3) 본 연구원에 소장된 도서 및 자료의 열람, 복사이용이 가능합니다.
- 4) 시중서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지난자료를 20% 할인된 가격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단, 비영리에 한함)
- 5) 저작권과 관련하여 DB서비스를 통해 압축한 자료는 제3자 양도 및 판매를 금합니다.

4. 회원가입 신청서 제출 및 문의처

서울시 강북구 수유6동 통일연구원 통일학술정보센터(우편번호: 142-728)
(전화: 901-2559, 901-2529 FAX: 901-2547)

이 책은 국제산림경영인증(FSC)마크를 획득한 무염소 펄프 친환경용지 띠도레도지(표지)와 친환경소재로 만들어진 재생용지 이라이트지(본문)를 사용하였으며 환경에 유해한 코팅을 하지 않았습니다.

KINU 연구총서 07-02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북한의 인식과 대응

이 책은 국제산림경영인증(FSC)마크를 획득한 무염소 펄프 친환경용지 및포레뜨지(표지)와 친환경소재로 만들어진 재생용지 이라이트지(본문)를 사용하였으며 환경에 유해한 코팅을 하지 않았습니다.

KINU 연구총서 07-02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북한의 인식과 대응